

2011 경기도교육청
정책 연구

참여협육에 기초한 민주적 학교공동체 구현 방안 연구

(사)함께여는교육연구소

2011 경기도교육청
정책 연구

참여협육에 기초한 민주적 학교공동체 구현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이세용(함께여는교육연구소)

공동연구자 : 유봉인(이우중학교)

정민승(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조원 : 설민욱(함께여는교육연구소)

2011
경기
도교
육청
정책
연구
과제

참여협육에
기초한
민주적
학교공동체
구현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이 연구는 2011년도 경기도교육청 정책 과제 연구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경기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를 밝혀 둡니다.

Contents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4
- 3. 연구 방법 6
- 4. 연구 기대 효과 9

II. 참여협육의 이론적 배경

- 1. 사회변화와 참여협육의 필요성 11
- 2. 해외 참여협육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9

III. 참여협육의 조건 및 정책 방향

- 1. 참여협육 관련한 실태 분석 51
- 2. 참여협육 실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정책 방향 77

IV. 참여협육 실현을 위한 실행 전략

- 1. 조례 제·개정을 통한 참여협육의 제도 개선 92
- 2. (가칭)경기도학부모협의회 구성과 운영 122
- 3. (가칭)경기도학부모참여지원센터 구성과 운영 126
- 4. 학부모 관련 정책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138

V. 요약 및 결론

1. 미래 경기교육 혁신을 위한 참여협육	155
2. 참여협육 실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정책 방향	159
3. 참여협육 실현을 위한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	166
참고문헌	231



표 차례

<표 1> 학부모 학교 참여 모델	54	●
<표 2> 2011년 각급별 학부모총회 개최 현황	59	●
<표 3> 2010년도 각급별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60	
<표 4> 경사단, 정책모니터단, 학부모지원센터의 역할 비교	71	●
<표 5> 학부모 학교 참여에 대한 인식의 전환	77	
<표 6> 개정안의 신규 조문 대비표	82	
<표 7> 지역 교육 거버넌스 구축 효과	86	
<표 8>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학부모지원팀 구성 현황	89	
<표 9> 경기도학부모지원센터 구성과 운영	89	
<표 10> '경사단'과 '학부모협의회'의 차이점	123	
<표 11> 전국 및 시·도학부모지원센터의 주요 기능	127	
<표 12>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128	
<표 13> 안양시평생학습센터 2011년 강좌	129	
<표 14> 학부모지원센터 설립 형태별 특성	132	
<표 15> 학부모지원센터 설립 형태별 장단점 비교	133	
<표 16> 학부모지원센터와 학부모참여지원센터의 구분	134	
<표 17>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	142	
<표 18> 학부모 대상 기초과정 연수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	142	
<표 19> 학부모 대상 리더과정 연수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	143	
<표 20> 학부모 대상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방안	144	
<표 21> Opportunities for parents to exercise voice at the school level within the public school sector (2008)	167	
<표 22> Requirement for schools to have a governing board in which parents can take part (2008)	168	
<표 23> Existence and role of parent associations (2008)	169	
<표 24> Regulations that provide a formal process which parents can use to file complaints regarding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2008)	171	

그림 차례

[그림 1] 각 시도교육청 학부모 콜센터 운영 현황	73	●
[그림 2] 학부모 교육 참여 및 성장 과정	85	●
[그림 3] 서울학부모지원센터 구성	90	
[그림 4] (가칭)경기도학부모참여지원센터 조직 구성(안)	135	●
[그림 5] 지역교육지원청 경기도학부모참여지원센터 조직 구성(안)	137	

부록 차례

[부록 1] OECD 학부모 정책 비교	167	●
[부록 2] 미국의 초중등교육법 학부모 참여 해설	172	●
[부록 3] 미국 학부모 정보자원 센터	181	
[부록 4] 학부모 정보자원센터에 대한 평가	185	●
[부록 5] 위스콘신주의 학부모 참여 정책	187	
[부록 6] 캘리포니아주 가정-학교 파트너십법 (주요 내용)	189	
[부록 7] 뉴욕시 학부모 권리와 의무 (Parent's Bill of Rights)	190	
[부록 8] 보스턴시 학부모 협약	197	
[부록 9] 메릴랜드주 학부모 참여 목표(지표) 수립 및 평가	199	
[부록 10] 학부모 참여 연수 자료 (위스콘신주 사례)	201	
[부록 11] 미국의 학부모 전문가 제도 사례	205	
[부록 12] National PTA 파트너십 표준안	211	
[부록 13] National Network of Partnership Schools 모범 사례	217	
[부록 14] 영국의 학부모 전문가 제도	222	
[부록 15] 프랑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224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연구방법
4. 연구 기대효과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지난 2010년 제 2대 민선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학교 문턱 없애기 참여협육” 등 6대 공약을 제시하였다.¹⁾ ‘참여협육(參與協育)’은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담은 신조어(新造語)로써, 기존의 학부모 참여와 학교 거버넌스(governance, 협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학교(교사)와 가정(학부모), 지역 사회의 공통의 역할과 책임을 천명하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참여협육’에 대한 경기도 교육 생태계 내부의 이해 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다. 우선 신조어가 가지는 ‘생경함’을 쉽게 극복하기 어렵고,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학부모 학교 참여·지원 정책’²⁾과 혼동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단위 학교와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참여’와 ‘협육’의 모델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 ‘소통’, ‘협력’ 등 당위적인 언어의 나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제 ‘참여협육’의 명확한 개념과 실현 방안,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실행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협육의 이

1) 경기도 교육청, ‘경기교육 100년의 약속(제2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2010년 6월 발간

2)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학부모 교육 지원’, ‘학부모 지원 서비스 강화’ 등 세 가지 분야의 학부모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문희,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필요성과 향후 정책 방향’, 교육정책포럼, 2010년 11월 25일) 학교정보 공시제, 단위 학교 학부모회 지원, 학부모 정책 모니터링 운영, 학부모 지원센터 설립, 학부모 상담사 도입 등이 그것이다.

론적 근거와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내외의 사례를 분석하여 경기도 현실에 적합한 참여협육 모델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는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자연법상의 권한을 제시하고 있다.³⁾ 또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 교육력을 제고한다(Epstein, 2009).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제한하는 조건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학부모 학교 참여의 제한성은 단순히 학부모의 권리 제한에 머물지 않는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하고 있는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왜곡시키고(이종각, 2011), 기존 학교의 관료적·획일적 통제 시스템을 극복하고 민주적·개방적 학교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학교를 민주적 공동체로 재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참여협육’의 구체적인 모델과 실행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 학교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방안, 나아가 학부모 학교 참여에 기초한 민주적 학교 공동체의 모델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또한 최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소득 격차의 확대, 위기 가정(저소득 가정, 조손 가정 등) 및 다문화 가정의 증대는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권 보장이라는 측면 외에, 학생의 온전한 배움과 성장을 위한 학부모(가정)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3) 헌법 제3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학부모에게 교육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자연법상의 일차적인 교육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 13조에서는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관한 자연법상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당연히 학교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는 기존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요구하고, 또한 단위 학교를 뛰어넘은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학생·학부모 지원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차원의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학부모 참여와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는 교과부가 추진 중인 학부모지원센터,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교육혁신지구 사업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구안하고자 한다.

○ ‘참여협육’은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이자, 학교혁신운동의 중요한 요소 혹은 과제가 되기도 한다. 기존 Top-down 방식의 관료적·획일적 통제가 아닌 교육 주체(특히 교육권력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민주적 학교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학교 혁신의 핵심과제가 되는 것이다(이광호 외, 2010년). 이를 위해서는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정책적 수단 외에 주체의 역량을 신장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즉, 학교공동체의 주체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자각, 교육 주체(교사와 학부모, 학부모와 학생 등)간의 소통과 협력 능력 등이 배양되어야 한다. 학교의 개혁, 혹은 혁신을 위한 이제까지의 수많은 정책들은 바로 이러한 주체의 형성과 조직화, 훈련의 중요성을 간과한 측면이 강하다.

○ 현대를 흔히 프로츄어(Professional+ Amateur)·프로슈머(Professional+ Consumer) 시대라 부른다. 또한 미래사회는 ‘개별자적 독특성’ 보다는 ‘집단지성, 집합적 창의성’이 중시될 것으로 보인다(이수광, 2010년).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가(교사)와 비전문가(학부모), 공급자(학교·교사)와 수요자(학생·학부모)의 이분법적 인식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인식 하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한 이기적 욕망의 분출로 인식되거나,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왜곡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교사)와 가정(학부모) 간의 기존의 낡은 인식을 전환하고, 상호민주적 소통과 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에 대한 연수 및 훈련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협육에 기초한 학교공동체 실현을 위한 교육 주체(교사, 학부모)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 주체의 인식의 전환 못지않게, 주체간의 일상적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의 발굴과 확산,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협육에 기초한 학교 교육력 제고와 민주적 학교공동체 실현의 국내외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제시할 것이다.

- 경기도 교육청은 세계 최대의 교육자치구로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하나의 정책 과제가 학교 현장에 착근되고, 학교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섬세한 접근과 실행전략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개념의 반복이나 정책의 나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경기도 교육청의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혹은 ‘참여협육’ 관련 정책과 예산은 확대되었다. 이는 교과부의 학부모 참여·지원 정책의 확대에 의한 것이기도, 경기도 교육청의 ‘참여협육’ 과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청의 학부모 학교 참여, 혹은 참여협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 전망에 기초한 단계별 실행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협육을 실현하기 위한 각급 기관(단위 학교, 지역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의 역할과 사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협육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실행전략과 각급 기관의 역할을 제시할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참여협육의 이론적 배경과 필요성

오랫동안 학교는 ‘학교와 교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 지역사회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었다. 1995년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학부모·지역사회의 학교운영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지만, 여전히 학교는 ‘학교와 교사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 원리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사회 전반의 운영시스템의 변화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통한 학교의 투명성과 교육력 제고를 꾀하고 있는 세계적인 움직임에도 뒤쳐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참여협육의 이론적 배경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 참여협육의 실현을 위한 조건 및 정책 방향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성과는 미미할 뿐이다. 그렇다면 학부모 학교 참여를 가로막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게 극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학부모 학교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정교하게 생산할 필요가 있다. 그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방향과도 연계되어 있어야 하며, 나아가 미래 경기교육 혁신의 중장기적 비전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참여협육 실현의 조건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참여협육 실현을 위한 실행 전략

정책 방향이 구안되면, 구체적인 실행 전략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적·조직적 실행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정책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와 공유를 위한 연구와 연수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제도적, 조직적, 정책적 실행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참여협육의 실현을 위한 교육청의 연도별 사업 추진 방향

모든 정책이 한꺼번에 실행될 수는 없다. 정책의 입안부터 내부 구성원의 공유, 조직적 토대의 마련, 예산의 편성 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협육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실행전략을 제시하고, 그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협육 실현을 위한 교육청의 연도별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참여협육의 이론적 배경과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한 국내외 문헌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 참여·지원 정책 관련 문서, 한국교육개발원 및 각 대학 연구소의 정책연구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참여협육 관련한 국가 정책 방향과 경기도 교육청 사이의 접합점을 찾고, 국가 교육 정책의 창조적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참여협육에 기초한 단위 학교 및 지역 차원의 모델을 구안했다. 나아가 타 시도 교육청의 유사한 연구 사례 및 정책 집행 결과를 분석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 및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전문가 세미나 개최

각 연구 주제의 전문가, 학부모, 교사, 교육청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3차에 걸친 전문가 세미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1차 세미나

- 주제 : 참여협육에 기초한 민족 학교공동체 구현 방안
- 발제자 및 주제
 - 이민경(대구대학교 교수), ‘프랑스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 배경과 실제’
 - 이세용(책임연구원), ‘학부모 정책의 법적 근거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유봉인(공동연구원), ‘참여협육에 기초한 학교운영모델’
- 토론자
 - 이광호(함께여는교육연구소 소장)
 - 정민승(방송통신대학 교수, 공동연구원)

□ 2차 세미나

- 주제 : 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교육공동체
- 발제자 및 주제
 - 김장중(전국학부모지원센터장), ‘경기도학부모지원센터 발전 방안 및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구상’
 - 양병찬(공주대학교 교수), ‘학교-지역 연계를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창조’

□ 3차 세미나

- 주제 :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

○ 발제자 및 주제

- 유경선(국회 김춘진 의원실 정책보좌관), ‘학교운영위원회 개선을 위한 경기도 교육청 조례 개정 방향’
- 이정호(변호사, 행복한학부모재단 사무총장),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 토론자

- 이세용(연구책임자, 함께여는교육연구소)
- 이범희(홍덕고등학교 교장)
- 신동희(학부모,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지역위원회 간사)

다. 교사 및 학부모 면담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 각급 학교의 교장 및 부장급 교사(교부부장, 연구부장)를 1인씩 면담했으며(초·중·고 학교 급별 각 2인씩, 총 6명), 학부모와는 개인 면담과 집단 면담을 진행했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풍부한 분들로 현재 경기교육사랑학부모지원단(경사단), 학부모정책모니터단, 학부모 강사단 등에 참여하는 분들이다.

라. 연구 내용 관련 토론회(중간보고회)

연구진은 연구 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교자협), 미래교육포럼 등의 워크숍에 참가하여 참여협육 관련한 발제를 하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지원팀, 참여협육 TFT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4. 연구 기대 효과

- ‘참여협육’의 시대적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하여, 경기도 교육청과 각급 기관(지역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조할 수 있다.
- 교원연수 프로그램(1급 정교사, 교감 자격연수, 교장 자격연수 등)에서 ‘참여협육’ 관련한 연수 내용을 수립하는데 참조할 수 있다.
- ‘참여협육’의 실현을 위한 각급 단위(학급, 학교, 교육청 등)의 실행전략과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기준을 제시한다.
- ‘참여협육’ 정책을 개념화하여, 한국 학교교육의 혁신을 선도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II. 참여협육의 이론적 배경

1. 사회변화와 참여협육의 필요성
2. 해외 참여협육 사례 분석 및 시사점

II. 참여협육의 이론적 배경

1. 사회변화와 참여협육의 필요성

가.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친화적 학교 재구조화의 필요성

(1) 지식정보화·네트워크시대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 미래 사회의 주요 특징으로 거론되는 것은 지식기반사회의 진전, 과학 및 정보 기술 발달의 가속화, 세계화와 개방화의 진전 등⁴⁾이다. 학교 역시 이러한 사회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아니,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미래 사회에 적합한 역할을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학교 교육의 목표이자 존재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학교는 미래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을 미래친화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지식기반사회의 진전은 우선 지식과 정보의 폭증으로 설명된다.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 미디어를 통해 한 해 생산되는 정보는 지난 5000년간 인류가 생산한 정보의 양보다 많다고 한다. 또한 새로운 기술적 정보의 양은 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⁵⁾

4) 이해영, 「미래 학교 모형 탐색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8년

5) 송인혁·이유진 외 “모두가 광장에 모이다”, 2010년, 69쪽

이처럼 지식의 양이 폭증하고 그 주기도 짧아지는 현상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또한 유동성과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래의 직업세계와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창의적, 혁신적인 능력과 역량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바, 종전과 같이 축적된 지식과 문화유산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는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⁶⁾

○ 또한 과학 및 정보기술의 발달은 그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생산되고 소통되는 방식의 변화를 불러왔다. 과거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의해 지식이 창조되고, 그것이 학교와 미디어를 통해 다수 대중에게 전파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다중(多衆)의 참여와 소통에 의해 지식과 정보의 생산되고 소비된다.⁷⁾ 프로슈머(Professional+Amateur)·프로슈머(Professional+Consumer)·크레슈머(Creator+Consumer) 등의 개념이 일반화되고,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등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직접적 소통, 분산협업(distributed collaboration)과 협업생산(collaborative production)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생성이 확대되고 있다. 요컨대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은 ‘개별자적 독특성’이나 ‘개인간 경쟁’이 아닌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혹은 ‘집합적 창의성(Collective Creativity)’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⁸⁾.

6) 이해영, 앞의 논문

7) 이러한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Encyclopaedia Britannica)’을 대신하는 ‘위키피디아(www.wikipidea.org)’의 등장이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모아 거대한 지식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위키피디아에는 지식의 생산자와 소비자(수용자)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생산자가 곧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위키피디아는 이처럼 다중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100여년 동안 인류의 지식 창고 역할을 담당해왔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대체하고 있다. “브리태니커를 비웃는 위키피디아 방식”은 전적으로 ‘분산협업(distributed collaboration)’과 ‘협업생산(collaborative production)’에 기반하고 있다.(칼레이 서키 지음, 송연석 옮김, ‘끌리고 쫓리고 들끓다’, 120~154쪽)

8) “창의성은 다양한 기술과 관점,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개발하는 끊임없는 사회활동이다. 창의성이 항상 개인의 번득이는 통찰력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창의성은 근본적으로 협업과 관련되어 있다.”(찰스 리드버터 지음, 이순희 옮김,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 49쪽)

○ 흔히 산업사회에서는 자본과 노동력이,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양(量)이 한 개인 혹은 집단의 생존 근거이자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하지만 지식정보화와 네트워크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되었다. 요컨대 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생존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근대적 학문의 경계가 파괴되고 학문의 융·복합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한 개인 혹은 집단이 생존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모두 인식할 수는 없다. 결국 타인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집단지성의 장’에 참여함으로써, 미래 사회에서 생존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따라서 미래 사회 변화에 적합한 학교는 경쟁 보다는 협력에 기초하고, 획일적·관료적 통제가 아닌 민주적·개방적 소통과 협력에 의해 운영되고, 학교 구성원간의 배려와 돌봄, 공유와 협력의 문화가 살아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개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자신과 다른 타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를 전문가(교사)와 비전문가(학생, 학부모), 공급자(학교, 교사)와 수요자(학생, 학부모), 혹은 교육 주체(교사)와 대상(학생)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든 구성원이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초하여,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학교로 재구조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의 운영구조로서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가 구축되어야함을 의미한다.

(2) 교육과 돌봄의 결합, 학교와 학교 밖과의 연계의 필요성

- 미래 사회는 또한 탈중심화, 개별화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산업화시대의 핵가족에서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전통적인 공동체의 정체성, 소속감 등이 약화되고, 개인 중심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사회 조직과 관계의 ‘액체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사회적 격차의 확대, 전통적인 가정의 해체, 사회적 경쟁의 격화 등으로 인한 개인의 고립, 정서 불안의 확대 등도 탈중심화, 개별화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가정에서의 돌봄이 부족한 학생들이 늘어나고⁹⁾, 그들은 정서 및 학습 장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중산층 출신 학생들 역시 극심한 학력경쟁과 아동기 돌봄의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정서 장애,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부족 등이 늘어나고 있다. 즉, 전반적인 정서 및 학습장애, 우울증을 가진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¹⁰⁾ 학교가 기존의 지식 전수 뿐 아니라, 돌봄과 치유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이러한 학교 기능의 확대는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정책이다. 영국의 경우, 2005년 9월 ‘Extended School : Access to opportunities and service fir all’이란 백서를 통해 학교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아침식사부터 저녁 방과 후까지 다양한 돌봄과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

9)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2009년 이혼통계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이혼은 12만4천건으로, 이는 2008년 11만6천건보다 8천건(6.8%)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혼 부부 중 55.2%인 6만8천500쌍이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또한 조손(祖孫)가정은 지난 1995년 3만5천194가구에서 2010년에는 6만9천여 가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조손가정은 대부분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혹은 이혼 부부의 증가와 관련된다. 미성년자들이 성장기에 안착해야 할 동지가 가족 해체의 여파로 점차 사라지는 현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연합뉴스, 2010년 12월 23일자 참조)

10) 서울시교육청이 중·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우울증 학생 선별 검사에서 ‘우울증 주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08년 2.4%, 2009년 3.5%, 2010년 4.6%로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신문, 2010년 12월 24일 참조)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아동이 빈곤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까지 제시하고 있다.¹¹⁾

- 이처럼 학교의 돌봄 기능의 확대, 교육과 돌봄의 결합은 매우 중요한 학교혁신의 과제가 되었다. 또한 그러한 돌봄 기능의 확대는 학교와 교사들의 역량만으로 불가능하다. 교사 외에 학부모,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자원의 연계와 협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실현하여, 학생·교사·학부모(지역 주민)이 서로 돌보는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학교와 교육에 대한 관념을 뛰어넘어, 학교와 학교 밖의 연계, 교사와 학부모(지역 주민)의 협력, 교육청과 지자체 등이 결합한 지역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실현해야 한다.

나. 학부모 학교 참여의 정당성과 필요성

(1) 학부모 참여를 통한 학생 학업성취 향상

-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는 학교가 학부모로부터 아동의 교육권을 위임받았다는 논리로부터 출발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지식의 양이 방대해짐에 따라, 부모들이 담당했던 자녀 교육의 역할을 학교에 위임한 것이 학교의 존재 근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국가권력과 조세제도가 개입함으로써, 학교와 학부모 간의 위임 관계가 은폐된다. 학교(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사라지고, 학교와 국가의 관계만이 부각되는 것이다.

11) 최봉섭, 『Extended School, 학교 역할의 개편』, 『교육개발』 제 154호)

- 헌법 제3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학부모에게 교육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자연법상의 일차적인 교육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 13조에서는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관한 자연법상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당연히 학교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는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매우 당연한 것이 되었다. 특히 최근 다양한 사례 연구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Epstein(2009)에 따르면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업동기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결과를 미친다고 한다. 부모의 직업,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학생의 사회적 기술과 학교에서의 적응, 등록률, 졸업률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Walker & Hoover-Dempsey(2008)는 학부모 학교 참여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로 인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격려와 숙제 지원, 수업에 대한 관심 등으로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수업에 대한 강한 내적 동기가 높아지고 학업에 있어 자기조절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¹²⁾

12) 강소연, ‘학부모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2010년, 3~11쪽에서 재인용

(2) 학부모 교육 참여를 통한 미래지향의 교육 거버넌스 구축

-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가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외에, 학교를 미래친화적 학습과 돌봄의 공동체로 재구조화하는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 인근 지역 주민인 학부모는 학교와 지역 사회를 연계시키는 중심적 고리가 될 수 있다.

- 산술적으로 볼 때, 학교에는 교사보다 훨씬 많은 학부모들이 존재한다. 그 학부모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그 중에서 많은 경우는 학생들의 미래 진로 개척은 물론 학습과 체험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즉, 학부모를 ‘또 다른 교사’, 혹은 ‘학습자원’으로 인식하는 순간, 학교의 교육과정은 훨씬 풍요로워지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의 성장가능성이 확대되는 것이다.

- 학부모는 또한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 한국 교사의 순환전보제를 고려하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 발전에 관해 교사보다 더 큰 이해관계를 지니게 된다.¹³⁾ 학부모로서 자녀 재학 기간 중 학교 교육에 참여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실제적인(현실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다.

13) 최근 경기도 일부 혁신학교 주변 지역의 인구 급증,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보면, 학교가 지역사회의 발전 혹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부동산가격(특히 대도시 아파트 가격)의 항상적인 상승 국면에서는, 재산 축적을 위한(혹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잦은 거주지 이전이 한국사회 도시인의 특징이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을 통한 재산 축적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달리 말하면 도시에서도 한 지역에 장기 거주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주의식’은 곧 해당 지역의 교육 문화적 인프라, 혹은 삶의 질에 대한 고민과 실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즉, 학교 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 학교 교육력의 제고와 지역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지역 주민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는 자연스럽게 미래 평생학습사회의 지역교육공동체, 위기 가정의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는 지역교육 거버넌스 구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는 미래 교육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 이종각(2011)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하는 한국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학교 교육의 동력으로 끌어들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가 학부모 학교 참여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 학부모의 교육열이 사교육, 혹은 반교육적인 이기적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국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학부모의 전문성과 열정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학습과 돌봄의 결합(위기 가정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 지역교육공동체 실현에 활용해야 한다. 이종각 교수의 어법으로 표현하면 교육열 배출의 통로, 혹은 수로(水路)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2. 해외 참여협육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가. 참여협육 정책의 강화

○ OECD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선진국들은 학부모들의 교육참여 기회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OECD 1997, OECD 2010). 그러나 OECD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 참여 정책의 초점은 그 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OECD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학부모 참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첫째, 많은 OECD 국가에서는 학부모 교육 참여가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된다(Democracy). 프랑스, 독일, 덴마크와 같은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학부모 교육 참여를 학부모의 권리로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에서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책무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Accountability). 책무성이란 민주주의보다는 시장지향적(market-oriented)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학부모 참여, 특히 학교 거버넌스에의 참여는 학부모의 권리라기보다는 학교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회에 대해 학교로 하여금 책무성을 담보하도록 만드는 수단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학교-학부모 파트너십은 양자(학교와 학부모)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상호보완적 편익을 주고받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으로 보여진다.

셋째, 학부모 교육 참여는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된다(Consumer choice). 이러한 관점은 소비자로서 학부모는 학교를 선택할 권리와 학교가 운영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한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자신을 소비자로서 생각할 때 보다 분명하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고, 자신들이 제공받는 것에 대해 보다 비판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학부

모의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학부모 교육 참여는 국가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Lever for raising standards). 실제로 미국, 호주, 영국 등에서 수행된 많은 대규모 연구들에 따르면 학부모와 학교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학생들은 긍정적인 학습 태도와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다. 보다 시장중심적 교육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사에 대해 보다 높은 기대를 갖고, 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와 행동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 참여가 학교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한 방법으로 보여질 수 있다.

다섯째, 취약계층의 불리함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학부모 교육 참여가 강조된다(Tackling disadvantage and improving equity). 위에 제시된 네 번째 목적과 연계되어 있지만, 이는 개별 학생들의 성취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학생들의 성취를 높이려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강조되는 학부모 교육 참여는 특히 교육체제와 가정간의 문화적 차이가 두드러질 때 중요하다.

여섯째, 학부모 교육 참여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강조된다(Addressing social problems).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에서는 학교를 통해 청소년 약물 및 알코올 남용, 혼전 임신, 아동 학대, 폭력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일곱째, 학부모 교육 참여가 자원 동원의 관점에서 강조된다(Resources). 학부모들은 국가의 교육재정 외에 학교에 추가적인 교육비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학교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한다. 즉 학부모 교육 참여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메울 수 있는 자원 동원의 비용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강조되는 학부모 교육 참여는 교육에 대한 공적예산이 억제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커다란 논란이 될 수 있다.

○ OECD 국가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이유에서 학부모 교육 참여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및 경기도 교육청)의 학부모 참여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선의 정책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국가들의 학부모 참여정책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료 습득의 어려움, 제한된 비용과 시간 등 여러 가지 제약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OECD 국가들의 학부모 참여정책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뒤, 학부모 참여정책에 있어 앞서가고 있는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몇몇 주요 국가들의 학부모 참여정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나. OECD 국가의 참여협육 정책 비교

○ 매년 OECD에서는 회원 국가들의 교육 관련 지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2010년 보고서에는 처음으로 OECD 국가의 학부모들이 국가 또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이나 단위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2008년 기준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학부모의 영향력과 관련된 공식적 구조와 규정”을 보여주는 최초의 국제적 비교연구로서, 세 가지 공식적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①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 ② 거버넌스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
- ③ 공식적인 불만 또는 고충처리 절차의 제공

이 세 가지 지표를 통해 비교한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학부모들이 공립학교의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0%).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가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학부모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미국, 핀란드,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에서는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위원회가 있는 곳도 있지만,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위원회의 설치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둘째, 대부분의 OECD 국가에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자문을 제공하는 조직(학부모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90%). 우리나라 역시 대부분의 학교에 학부모회가 조직되어 있다. 한편 26개 OECD 국가 중 10개 국가에서는 - 벨기에(일부지역),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 정부가 국가 수준에서 조직된 학부모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학부모회가 공식적인 자문 제공의 역할을 한다. 또한 27개 회원국 중 24개 국가에서는 국가 수준의 학부모회가 정부의 정책결정에 자문을 제공하는 비공식적 역할을 수행한다. 단지 우리나라와 영국만이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수준의 학부모회를 갖고 있지 않다.

셋째, 일본, 멕시코,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은 학부모들이 불만이나 고충처리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를 위한 규정을 갖고 있으며(90%), 우리나라를 포함한 60% 가량의 국가들은 불만(고충) 접수를 위한 지정된 기관을 갖고 있다. 그리고 덴마크, 일본,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이나 교육정책 결정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

도(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지위나 영향력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 학부모 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되면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및 각 교육청 단위의 학부모지원센터 설립, 학부모회 지원 사업, 학교상담사 파견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 학부모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다. 미국의 학부모 정책

(1) 법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학부모 참여의 보장

- 미국의 경우 학부모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1년 개정된 미국의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 Secondary Education Act, 약칭 ESEA, 일명 No Child Left Behind Act.)은 학부모 참여(parental involvement)를 “학생의 학습과 기타 학교 활동에 관해 학부모가 정기적이고,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의미있는 소통에 참여하는 것(Section 9101(32), ESEA)”으로 정의한다.
- 미국 초중등교육법에서 학부모 참여와 관련된 조항은 크게 두 부분에 걸쳐 있다. 하나는 전반적인 학부모 참여 정책에 관한 부분으로서, Title I, Part A, Subpart I, Section 1118. Parental Involvement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개요는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미국 초·중등교육법에서 학부모 참여와 관련된 조항

○ 학부모 참여의 법률적 정의 제공

“학부모 참여”가 미국 초중등교육법 역사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법률적 정의를 갖게 되었다. 학부모를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학교의 “온전한 파트너”로서 규정하여 실질적인 학부모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학부모 참여 정책의 공동 개발

주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대해 학부모 참여 정책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교육청은 학부모 참여 관련 조항을 정책에 포함시켜야 하며, 정책 수립을 위해 학부모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교육청 역시 학부모 참여에 관한 지역교육청의 기대를 담은 정책을 학부모와 공동으로 개발해 학부모에게 배포해야 한다. 또한 각 학교도 학부모와 공동으로 문서화된 학부모 참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 조직적으로, 지속적이며, 시의적절하게 학부모를 참여시켜야 한다.

○ 학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소통 의무

각 교육 주체(주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는 관련 당사자들(지역교육청, 학교,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게 그들의 “알 권리” 충족 및 정책 수립이나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모든” 학부모와 효과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공동의 책임을 강조

아동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학교와 학부모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학교-학부모 협약(school-parent compact) 제도를 통해 이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 협약은 각 학교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

○ 학부모의 역량 구축을 위한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책임

학부모들에게 정보나 참여기회를 단순히 제공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부모

들이 실질적으로 자녀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실천활동)을 의무화하였다. 예를 들면, 자녀교육 참여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는 물론, 학부모 참여 촉진을 위한 교직원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금전 및 시간적으로 구체적인 지원(교통/육아/회의 참석비용 지원, 유연한 회의/면담 개최 시간, 가정방문 실시 등)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예산의 뒷받침

실질적인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이 (연방)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부모 참여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 가운데 일정 정도 이상을 반드시 학부모 참여 조항의 이행을 위해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의무화하고 있다.

(2) 학부모 정보자원 센터의 설치(Parental Information and Resource Centers)

○ 개요

초중등교육법 Title V, Part D, 부칙 16(Section 5561-5566. Parental Assistance and Local Family Information Centers)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학부모 정보자원 센터는 학부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예산 공모 지원을 받은 비영리 단체 및 비영리 단체와 지역교육청의 연합체에 의해 학교와 연계되거나 (school-linked), 학교를 기반으로(school-based) 설립된다.

학부모 정보자원 센터는 학부모, 학부모와 함께 일하는 개인, 주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타 조직들에게 포괄적인 훈련,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하는데 있어 교육부는 Title I, Part A에 규정되어 있는 학부모의 권리(예를 들면, 공립학교 선택권과 보충학습 서비스)를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부모가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에 우선권을 준다.

○ 목적

학부모 정보자원 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다.

비영리단체 및 지역 교육기관들에 대해 리더십, 기술지원,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증진을 위한 학부모참여 관련 정책, 프로그램 및 활동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실행하도록 돕는다.

아동의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여 학부모(신생아부터 5세 아동까지의 부모도 포함), 교사, 학교장 및 기타 학교근무자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학부모와 학교간의 관계를 발전 및 강화시킨다.

이 법에 따라 지원받는 아동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NCLB 제11118조 및 기타 조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학부모 참여 사업과, 이 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활동을 조정한다.

연방/주/지역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조정 및 통합을 통하여 학생교육 개선을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을 제공한다.

○ 학부모 정보자원 센터 현황

이 법에 따라 1995년 최초로 25개 PIRC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다. 2011년 현재 62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법에서 규정한 대로 모든 주에 골고루 지원이 이루어져 각 주에 최소 1개의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¹⁴⁾.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콜로라도, 미주리주에만 2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각 지역 센터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위해 2006년에는 전국 학부모 정보자원 센터(National PIRC Coordination Center)가 설치되었다. 이 센터는 교육 관련 전문 민간단체인 SEDL(Southwest Educational Development

14) 현재 운영되고 있는 62개 센터에 대한 정보는 전국 학부모 정보자원 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www.nationalpirc.org/cgi-bin/pirc/directory.cgi?l=list>

Laboratory)가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하버드대학의 학부모 참여 연구팀 (Harvard Family Research Project)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3) 오바마 정부의 학부모 참여 정책의 강화

- 2010년 오바마 정부는 기존 초중등교육법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교육개혁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은 학부모 교육참여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도 출생 첫날부터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는 부모를 대체할 수 없다.¹⁵⁾”
- 오바마 교육개혁 청사진 역시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은 모든 학생들, 특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 학부모 참여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가 보다는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확인하는데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원이 가장 효과적인 실천활동을 위해 항상 투입되고 있지는 않으며, 학부모 참여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통합된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서로 분리된 개별적인 활동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반성한다.¹⁶⁾
-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기조를 재확인한 이 청사진은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참여시키기 위해 계획된 특정 프로그램의 실행과 학부모 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자녀 학교에

15) “There is no program and no policy that can substitute for a parent who is involved in their child's education from day one. — President Barack Obama”

16) 『Beyond Random Acts : Family, School, and Community Engagement as an Integral Part of Education Reform』, Weiss, H., M. Lopez, & H. Rosenberg, 2010.

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학부모들을 교육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교사와 리더(학교장, 교육장 등)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오바마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지속시키고자 한다.

- 학부모 참여를 위한 주(州), 지역, 학교의 노력을 지원한다.

학부모 참여를 위한 지역의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지원

지역(교육청)과 학교가 지속적인 학부모 참여를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낙후지역 교육을 위한 연방정부 지원예산의 적어도 2% 이상을 이러한 계획의 실행을 위해 투자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최소 2억 7천만 달러를 학부모 참여를 위해 사용한다. 교육청과 학교로 하여금 단순 활동 목록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 향상, 학부모 참여를 장려하는 분위기, 개방적 소통 및 학부모-교사-학교-지역(교육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학부모 참여 전략을 활용하도록 한다.

• 학부모 참여 관련 지역(교육청)의 역량 향상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 걸쳐 지역(교육청)의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원한다.

• 학부모 참여 및 책임 강화 기금 조성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상당한 규모의 재원 조성을 위해 주(교육청)로 하여금 연방정부 지원예산의 1%를 확보하도록 한다. 이 기금(Family Engagement and Responsibility Fund)은 학부모 참여 촉진, 학부모 역량 및 책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역(교육청)과 비영리기관(지역사회 조직, 지역 학부모지원센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다.

- 최우수 사례의 발굴 및 지원

주(교육청)은 학부모 참여 및 책임강화 기금의 지원을 받은 실천활동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 지원, 확산시킨다.

-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와 안전하고 지지적인 학교에 투자한다.**

- 성공적인 학생,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Successful, Safe, and Healthy Students Program)을 위해 정부는 4억1천만 달러를 투자한다. 주(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학교의 참여, 학교의 안전, 그리고 전반적인 학교환경에 대한 학부모의 경험과 태도를 평가한다. 여기서 얻어진 학교수준의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하며,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투자의 지침으로 활용한다.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는 학부모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빈곤지역 지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Promise Neighborhoods Program)을 위해 정부는 2억1천만 달러를 투자한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지역 아동들이 출생하면서부터 대학에 입학하고 취업을 하는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효과적인 학교, 포괄적 서비스,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지역 학생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지역사회 민간기관, 공공기관, 가정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기여하는 포괄적 접근방식을 취한다.

-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보다 포괄적 지원을 받도록 지역사회 학습센터(21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 프로그램의 개선과 강화를 위해 1조2천억 달러를 투자한다.

-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한다.

- 학부모에게 자녀 학교에 대한 양질의 정보 제공

주(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자녀 학교에 대한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된 자료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성취수준, 졸업생(학업중단) 비율, 학교 분위기, 학교 재정과 같은 주요 정보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들을 비교하고,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녀교육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교사와 학교장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 제공

주정부 및 지역(교육청)은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학부모들에게 자녀 학교 교원들의 자질에 관한 유용한 종합 정보를 제공한다.

- 학부모에게 공지

학부모들에게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책무성 관련 자료를 공지한다.

- 보다 효과적으로 학부모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교사와 학교장을 지원한다.

- 효과적으로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교사 육성 (교사 지원 및 평가)

교사와 학교장이 학부모들을 응대하고 협력하는데 필요한 기술(기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또한 지역(교육청)이 교사 평가를 위한 여러 지표 가운데 하나로 “학부모 참여 노력”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 **효과적으로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학교 리더 육성**

혁신적 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각 학교는 학교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기법)을 학교의 리더들에게 제공하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학교 혁신 과정에 학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키는 기술(기법)이 포함된다.

- **학부모 문해력 신장**

학부모(가정)들의 문해력 신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효과적인 문해력 교수 및 학습 프로그램>의 기금을 사용한다. 새롭게 조성된 <학부모 참여 및 책임강화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선택가능성을 제공한다.**

-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한 지원**

<효과적인 차터스쿨 지원 및 공립학교 선택 촉진 프로그램>에 4억9천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립학교 체제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시키고자 한다. 여기에는 차터스쿨, 기타 자율형 공립학교, 마그넷스쿨, 지역 간 및 지역 내 선택 프로그램,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녀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4) 주(州) 정부의 학부모 참여 정책

- 주정부 차원에서의 학부모 참여 정책 수립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각 주정부 및 지역 교육청은 별도의 학부모 참여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미 초중등교육법에 학부모 참여 정책의 기본 방향과 의무 조항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주정부 및 지역 교육청별 학부모 참여정책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 법률 및 조례 제정

각 주정부 및 지방 정부는 학부모 참여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연방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이나 조례 제정을 통해 학부모 참여 정책을 강화하기도 한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정-학교 파트너십 법 (캘리포니아주 사례)

캘리포니아주는 가정-학교 파트너십법(Family-School Partnership Act)을 제정하여 학부모들이 직장에서 휴가를 얻어 학교(어린이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학부모회 규정 (뉴욕시 사례)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 또는 지역별 학부모 조직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감 규정 등을 통해 학부모 조직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뉴욕시 교육감은 학부모회 규정(Regulation of the Chancellor, A-660 : Parent Associations and the Schools¹⁷⁾)을 제정하여, 각 학교별 학부모회 조직, 지역별 학부모대표자 협의회, 학부모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 참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학부모 조직의 구성, 권리와 의무, 재정 등에 관한 세부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보스톤시 역시 학교별 학부모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학부모회는 집행부

17)

<http://schools.nyc.gov/NR/rdonlyres/381F4607-7841-4D28-B7D5-0F30DDB77DFA/83522/A660ParentAssociationsandtheSchools520.pdf>

를 선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시 학부모회, 특수교육 학부모 자문위원회, 시 학부모자문위원회에 대표를 보낸다.

- 학부모 참여 표준(Family Engagement Standards) 제정

보스톤시에서는 학부모 참여 표준을 제정해 학교들이 효과적인 학부모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역할을 한다. 이 표준은 전국학부모교사회(National PTA)에서 제정한 학부모-학교 파트너십 표준(Family-School Partnership Standards)을 따른 것이다. 학부모 참여를 6개 영역으로 구분해 각 영역에서의 목표와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 학부모 권리와 의무 규정 (Parent's Bill of Rights)

뉴욕시 교육청은 <학부모 권리와 의무>라는 규정을 제정하여 학부모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책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 학부모-학교 협약 (Home-School Compact)

학부모-학교 협약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된 제도로서, 학부모, 전체 교직원 및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책임과 학부모-학교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수단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를 규정한 서면 합의문이다. 이 협약은 학부모와 학교 간 공동의 책무성을 규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학부모 면담 시 대화를 이끄는 도구로 활용된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의 의무와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부모, 교사, 학생(고등학교) 대표자들로 구성된 팀에서 협약을 개발하며, 이 협약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부모 참여 목표(지표) 수립 및 평가

메릴랜드주에서는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그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 학부모 참여에 관한 주정부의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을 평가하게 된다.

○ 제도적 지원

- 전담부서의 설치

주 정부 또는 지역 교육청은 학부모 참여(학부모-학교-지역사회 파트너십)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학부모 참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 각종 자료 제작 및 배포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제작해 학부모 및 학교(교사)에 배포하고 있다. 위스콘신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효과적인 파트너십 실천활동 (Effective Partnership Practices)』

- 『학부모가 학교(교사)에 바라는 것 (What Parents Want School Staff Know : The “3 R's” : Respect, Relationships, Rules)』

- 『효과적인 학부모 참여 전략 (Effective Strategies to Engage All Families)』

- 학부모 센터 설치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부모 정보자원센터(PIRC) 외에도 주 또는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운영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보스턴시 교육청은 3개의 학부모지원센터(Family Resource Center)를 운영하고 있으며, 샌디에고 교육청 역시 학부모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학부모 센터(Harold J. Ballard Parent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샌디에고 교

육청은 또한 단위 학교에 학부모 센터(Family/Parent Centers)를 설치할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 학부모 참여 전문가 배치

여러 지역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참여 전문가(parent coordinator, parent academic liaison 등)를 단위 학교 또는 교육청 단위에 배치하여 각 학교 및 지역의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는 뉴욕시, 보스톤시, 샌디에고 등이 있다.

- 학부모 조직 구성 및 운영

교육정책 결정에 있어 학부모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 정부나 지역(교육청)은 학부모 대표자들로 구성된 학부모 협의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 위스콘신주 : 학부모 자문단 (Parent Leadership Corps)
- 메릴랜드주 : 학부모 자문위원회 (Maryland's Parent Advisory Council, M-PAC)
- 뉴욕시 : 지역 학부모대표자 협의회(President's Council, PC), 학부모 자문위원회, 교육감 교육정책 자문단 (Panel for Education Policy)

(5) 민간단체의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 National PTA : 학부모-학교 파트너십 표준 및 평가 지침

〈National PTA〉는 각 학교의 학부모 참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National Standards for Family-School Partnerships), 설문지(Family Survey) 및 평가 지침(Assessment Guide)을 제공하고 있다. 학부모 참여에 관한 연구 결과

를 기반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제작한 학부모 참여 지침은 초기에는 “학교가 학부모를 참여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⁸⁾.

또한 National PTA는 각 학교에서 파트너십 표준에 따른 프로그램, 실천활동 및 정책의 실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평가 지침을 개발하였다. 이 평가 지침은 위에서 제시된 세부 평가지표에 따라 각각의 목표 달성 여부를 3단계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계별 우수 활동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변화는 궁극적으로 각 학교, 각 학교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 평가 지침은 학교 수준에서의 실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활동들이 제대로 실시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청의 정책, 자원, 전문 연수, 지원이 필수적이다.

○ Project Appleseed : “학부모 참여의 날” 행사 개최

교육운동단체인 <Project Appleseed (The National Campaign for Public School Improvement)>는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공립학교에서의 자원봉사를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학부모 참여의 날 (National Parent Involvement Day)”을 만들어 학부모 참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봉사활동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행사는 매년 11월 셋째 목요일 개최되며, 2011년 11월 17일에는 17회를 맞게 된다. 테네시주에서는 주차원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 National Network of Partnership Schools (NNPS)

The Johns Hopkins 대학의 Epstein박사가 이끌고 있는 이 기관은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실천적 연구는 물론 교육청, 교원, 학부모 대상의 교육 및

18)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침의 제목도 “National Standards for Parent/Family Involvement Programs”에서 “National Standards for Family-School Partnerships”으로 바꾸었다.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기관에서는 단위 학교, 지역교육청, 지역사회 단위의 모범 사례를 수집해 매년 소개하고 있다.

라. 영국의 학부모 정책

(1) 21세기 학부모 정책 : 학부모와의 파트너십 강화

○ 『2007년 아동 백서¹⁹⁾』

2007년 영국의 아동학교가족부²⁰⁾는 향후 10년의 전략적 계획을 담은 아동백서를 발간하였다. 이 백서는 5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정부는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는다. 학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한다. 따라서 정부는 학부모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²¹⁾”는 것으로, 21세기 영국의 학부모 정책은 아동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학부모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아동백서에 담긴 학부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 향후 3년간 3천4백만 파운드를 투자해 각 지역교육청에 두 명의 자녀양육 전문가(expert parenting adviser)를 배치한다.
- 각 학교에 배치하는 학부모 지원 전문가(Parent Support Adviser)를 확대한다.
- 학부모를 위해 유아기부터 초등학교까지의 아동발달에 관한 개인별 기록부(personal progress record)를 개발한다.
- 학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자문을 위한 새로운 학부모 자문단(Parents

19) 『The Children's Plan : Building brighter futures』, 2007.

20) 최근 교육부로 명칭 변경

21) "Government does not bring up children — parents do — so government needs to do more to back parents and families."

Panel, 40명)을 구성해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²²⁾

- 학부모 교육을 위해 향후 3년간 3천만 파운드를 투자한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학부모 지원활동이 실행될 수 있도록 아동학교가족부는 각 학교로 하여금 학부모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법제화를 추진한다.

- 자녀가 중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중등학교 교직원이 학부모를 접촉한다.
- 학부모는 자녀가 입학하기 전에 새로운 학교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 각 학생에게 담당 교사를 지정한다. 담당 교사는 학생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학부모를 접촉하는 주요 창구의 역할을 한다.
- 학부모에게 자녀의 출석, 행동, 학습 진전에 관해 정기적으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 학부모회를 통해 학교 내에서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 학부모의 불만은 즉각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처리한다.

○ 『2009년 교육백서²³⁾』

이 백서는 2007년 발간된 아동백서를 기반으로 제작된 교육 개혁 청사진으로서, 학교와 다양한 아동 서비스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 및 학부모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교육품질 보증서(Pupil Guarantee &

22) 이 자문단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총 7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해, 학부모 참여,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학교안내서, 성적표, 안전한 인터넷 사용, 집단따돌림 등 자녀양육 및 학교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참고로 2009년 1월 개최된 학부모 자문단(Parents Panel) 회의에서는 정부의 학부모 참여정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권고사항이 제시되었다. ① 학부모 참여에 대한 학교의 의무를 명확하게 할 것, ②학부모 참여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할 것, ③학부모 참여를 위한 예산을 학교에 배정할 것. 『Parents Panel: Summary Reports of Meetings Held from January 2009 to March 2010』, Research Report DFE-RR022, Department for Education, 2010.

23) 『Your child, your schools, our future : building a 21st century schools system』, 2009.

Parent Guarantee)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보증서는 향후 법제화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교육 개혁을 이끌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학부모 보증서에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아이들이 그들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에서나 성인이 되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또한 자녀의 학습과 발달에 있어 온전한 파트너로서 학부모들이 학교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 :

모든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그리고 자녀를 대신해 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기회, 정보 및 지원을 제공받게 될 것이다.

모든 학부모는 자녀의 학업을 위한 학부모와 학교의 권리와 의무를 서술한 학부모-학교 협약서(Home School Agreement)를 갖게 될 것이다. 학교는 학부모가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협약을 강제할 힘을 갖게 된다.

모든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과 발달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회, 정보 및 지원을 제공받게 될 것이다.

모든 학부모는 양육에 관한 지원과 조언을 포함한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학교는 학부모지원 전문가(Parent Support Advisor)와 같은 제도를 통해 학부모를 지원한다.

(2) 제도적 지원

○ 학부모지원 전문가 제도

학부모지원 전문가 제도는 2005년 교육부 보고서(『Supporting for Parents: the Best Start for Children』)에서 처음 제안되어, 2년간(2006.9 - 2008.8)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시범사업을 위해 4천만 파운드를 투자했으며, 1,167개 학교에 717명의 학부모지원 전문가를 배치하였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3개 모델이 적용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혼합 모델을 운영하였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학부모 및 관리자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학생들의 출석을 향상과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제시하면서 전국적인 확대실시를 권고하였다. 학부모 전문가의 구체적인 역할과 시범사업 평가 결과는 부록 참조.

- 모델 1 : 학교당 1명의 전문가 (35%)
- 모델 2 : 1명의 전문가가 몇 개의 학교를 담당 (51%)
- 모델 3 : 학교당 1명의 전문가를 배치, 특히 중도탈락 또는 중도탈락 위험 학생을 지원 (14%)

○ 학부모 양육 지원 프로그램

영국 정부에서는 아동들의 행동, 정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학부모 교육 사업(Parenting Early Intervention Programme)을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8-13세 아동을 가진 취약계층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행동 문제에 대처하는 양육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006-8년에는 Parenting Early Intervention Pathfinder(PEIP)라는 이름으로 760만 파운드를 투자해 18개 교육청에서 효과가 입증된 3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①Incredible Years, ②Triple P, ③Strengthening Families, Strengthening Communities)을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Wave 1). 2008-9년에는 Parenting Early Intervention Programme라는 이름으로 23개 교육청을 추가해 운영하였으며(Wave 2), 2009-10년에는 모든 교육청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Wave 3). 2008년부터는 기존의 3개 프로그램에 두 개의 새로운 프로그램(Families and Schools Together, Strengthening Families Programme 10-14)을 추가, 총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차 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보고서 및 2차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부모교육 사업은 아동들의 행동 문제를 현저히 감소시켰으며, 부모들의 양육행동 변

화와 정신건강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에 참가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교육 경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마. 해외 사례 시사점

(1) 학부모 참여에 대한 관점의 변화

○ 학부모 참여는 교육개혁의 핵심 영역

21세기 선진국들의 교육 정책은 학부모 참여를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많은 연구들을 통해 학부모와의 협력관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자발적인 학부모 참여가 민주적인 학교 운영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전략의 필요성

특히 최근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개혁의 방향은 학부모 참여 정책을 다른 교육개혁 과제와 분리시키기 보다는, 학부모 참여가 모든 교육개혁 영역 안에 통합, 조정되어야만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학부모 참여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분명한 초점이 없이, 비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반성으로부터 도출되었다. 향후 학부모 참여 정책은 전반적인 학교개선계획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교원 연수, 학부모 리더십 훈련, 교실 교육과 학습, 지역사회 협력, 지속적인 개선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과학적인 평가 결과의 활용 등 학부모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 학부모-학교의 책임 공유

과거 학부모 참여 정책에 대한 논의는 학부모의 자발성이 많이 강조되었으며, 따라서 “학부모 참여(parent engagement 또는 involvement)”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학교와 교육청 및 학부모의 책임과 역할이 함께 강조되는 “학교-학부모 파트너십”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즉 학부모 참여가 학부모 또는 학교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학교가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 책임지고, 함께 협력해 성취해야 할 목표 또는 과제로 설정된다.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정부 모두가 협력해서 함께 키우는 것이다(참여협육).

○ 학부모 참여 정책의 지속가능성 강조

과거에는 학부모 참여 정책이 시범사업을 통한 일회성 프로그램의 시행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부모 참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적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즉 법률이나 조례 제정을 통해 학부모 참여를 위한 정부, 지역교육청 및 단위 학교의 역할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정책 시행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의 배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단위 학교 및 지역교육청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새로운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효과성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육청 및 학교의 변화 의지를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 목표(평가지표) 설정과 그 달성도를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제시하고 있다.

○ 학부모 참여 정책 목표의 다양성

학부모 참여 정책의 주요 목표는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

르다. 예를 들면, 미국과 영국은 학업성취도 향상이나 중도탈락 예방과 같은 성공적인 학교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프랑스나 덴마크의 학부모 정책은 학부모의 권리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소비자로서 학부모의 선택권 강화로 인식되기도 하고, 학부모 참여가 부족한 교육재정을 보완하는 자원 동원의 관점에서 강조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부모 참여 정책의 목표를 학부모, 교사, 학교장, 지역교육청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학부모 참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학부모 참여 개념의 확대

이 외에도 과거에는 학부모 참여가 자녀의 학령기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학부모 참여가 자녀의 유아기부터 초기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부모(parent)”에만 국한하지 않고 조손가정 등 학부모 외에 보호자를 포함하는 “가정(family)”이라는 용어로 개념을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학부모 참여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기반한, 그리고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단계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2) 학부모 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강화

선진국들은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부모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다.

○ 교육법 및 조례 제정

미국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그에 따른 각 주의 주법과 조례의 제정, 영국은 일련의 교육백서 발간을 통해 한층 강화된 학부모 정책의 실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되는 정책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비전이 제시되어야 함은 물론 구체적인 수준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의무와 역할이 규정되어야 한다.

○ 학부모 참여 예산의 확보

선진국에서는 학부모 참여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을 통해 각 지역교육청과 단위 학교 수준에서 학부모 참여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 배정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위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서 지속가능한 정책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예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 지역별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강화

미국의 경우 지역교육청의 학부모 참여 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 정보 자원센터를 각 주에 설치하고 있다. 또한 중앙 기관에서는 전국 단위의 평가 연구를 수행할 뿐 아니라, 지역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작은 규모의 학부모 센터를 설치해 단위 학교 및 지역 학부모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리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중앙 센터나 주 단위 센터에서는 대학이나 전문 연구기관과의 컨소시엄(또는 위탁운영)을 통해 학부모 참여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꾀하고 있다.

향후 효과적인 학부모 참여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교육청 단위 학부모지원

센터를 설립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센터에는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학부모 참여 전문가를 배치해 단위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는 전반적인 사업 기획과 관리 역량과 함께 지역 센터 및 단위 학교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학부모 전문가의 배치

미국과 영국에서는 실질적인 학부모 참여가 이루어지는 단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점점 많은 지역에서 학부모 전문가(학부모 코디네이터, 학부모 지원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단위 학교에 전문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확산 속도는 빠르지 않다. 반면 영국의 경우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확대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뉴욕시 사례를 모델로 하여 지난해부터 학부모상담사 파견사업을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 참여 전문가의 배치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부모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보인다.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규모가 큰 학교를 우선대상으로 이 사업의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모가 작은 농산어촌 학교들의 경우 몇 개 학교를 묶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사업 확대 시 <학부모상담사>라는 명칭 사용과 역할 규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단위 학교의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담은 물론 다양한 관련 업무의 수행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부모 참여 전문가> 또는 <학부모 지원 전문가>와 같이 포괄적인 역할 수행을 고려한 명칭의 사용과 함께 상담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관련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부모의 교육 거버넌스 참여 기회의 확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단위 학교는 물론 지역별 학부모 조직(학부모회, 학부모협의회, 학부모자문단 등)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학부모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제한적이라는 평가받고 있다.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단위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교육청의 정책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교육 거버넌스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실효성 있는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위 학교 학부모회의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한 예산 확보 및 기술적 지원(임원 연수 및 매뉴얼 제공 등)이 필요하며, 지역별 학부모 대표자 협의회 및 도 단위 학부모협의회 구성을 통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3) 모범 사례 개발 및 프로그램의 표준화를 통한 사업 확대

영국의 학부모지원 전문가 제도나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보급 사업의 경우 다양한 모델을 적용시킨 체계적인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점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학부모 자원정보센터(PIRC) 및 Johns Hopkins 대학의 National Network of Partnership Schools(NNPS)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우수 모델의 확산 사례 역시 유사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학부모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범사업과 평가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검증된” 표준화된 프로그램과 최우수 모범사례의 확산이 중요하다.

(4) 교육청의 리더십 강조

○ 정책 수립 및 전문성 확보 노력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학부모 정책 수행을 위해 교육청 수준에서 학부모 참여에 관한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정책 문서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 정책을 전담해서 추진할 학부모 정책 부서를 교육청에 설치함은 물론 학부모 참여 전문가를 배치해 정책 수행의 효과성 및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 역시 학부모 참여 정책에 관한 조례 제정 및 학부모 정책 부서의 전문성 제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기술적 지원 : 각종 도구 및 매뉴얼 제작, 연수 프로그램 운영

미국의 주 교육청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학부모와 교직원 대상의 각종 연수 자료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으며, 기타 단위 학교에서의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도구(홈페이지, 매뉴얼, 서식 등)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설립된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자료 및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개발해 지역교육청 및 단위 학교의 학부모 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타 교육청에 보급·확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청간 활발한 연계사업을 주도함으로써 학부모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체계적인 교사 연수

과거에는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교사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교장 및 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장 및 교사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소양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과거 양성과정에서 학부모 참여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던 교사들에게는 구체적인 학부모 참여 전략과 실용적인 상담 기법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연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부모 리더와 교사들의 연합 연수도 효과적이다.

○ 학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

선진국들은 학부모를 참여시키기 위해, 그리고 학부모의 선택을 돕기 위해 학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적시에,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추세에 있다.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자녀에 관한 정보는 물론 학교 및 교육청 단위 책무성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를 고려해야 한다.

○ 빈곤지역 학교 및 학부모에 대한 우선적 지원

미국과 영국의 학부모 참여 정책은 학업성취도가 낮고, 중도탈락률이 높으며, 학부모 참여도가 낮은 빈곤 지역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 내에는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과 지역사회 자원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의 많은 학교들이 있다.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의 실시와 예산 배려와 같은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학부모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 개최

미국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교육청의 정책 비전을 알리기 위해 “학부모 참여의 날” 행사, 학부모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단위 학부모 연합 연수나 학부모 참여 토론회와 같은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많은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

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행사에 대한 사전/사후 홍보를 통해 학부모의 권리, 참여협육의 중요성 등에 대한 학부모 및 교사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있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

선진국에서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 봉사단, 종교기관, 기업 등 지역사회 기관을 학교교육에 참여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자체와 연계된 평생교육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다양한 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Ⅲ. 참여협육의 조건과 정책 방향

1. 참여협육 관련한 실태 분석
2. 참여협육 실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정책 방향

Ⅲ. 참여협육의 조건과 정책방향

1. 참여협육 관련한 실태 분석

가. 학부모 학교 참여 실태 분석

(1) 학부모 학교 참여 유형

○ Wissbrun과 Eckart(1992)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수준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제 1단계는 ‘구경꾼(Spectator)’ 단계이다. 학부모는 학교의 활동에 방관자로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일만 하는 제한된 참여만 한다. 그리고 이들은 편지, 전화 등의 일방적인 의사소통만 취하는 특징이 있다.

제 2단계는 ‘지원(support)’ 단계이다. 지원 단계에서 학부모는 추가적인 시간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로만 자녀를 지원한다. 이들은 교사와의 면담이 있을 때, 학교를 방문하거나, 수업참관, 가정 통신문 응답 등의 비교적 간단한 일을 행하는 경향이 있다.

제 3단계는 ‘관여(engagement)’ 단계이다. 이 단계의 학부모는 학교와 그들 사이에 공동의 관심사가 있음을 지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이전 단계의 학부모보다 더 많은 학교행사에 참여한다.

마지막 단계는 ‘의사결정자(decision making)’ 단계이다. 이 단계의 학부모는 가

정과 학교 사이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학부모는 자녀 교육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과 동시에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고자 한다.

○ Epstein(1992)은 학부모 학교 참여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분류하였다.

- 부모역할(parenting):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고 학년에 맞는 가정환경을 조성하며 학부모의 기본 의무를 이행(아동의 건강과 안전 제공).
- 의사소통(communicate): 학생의 성장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의 효과적 의사소통(학교의 요구와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대해 의사소통).
- 학부모의 학교참여(volunteering): 학부모가 학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지원(자원봉사 참여).
- 가정에서의 학습활동에 대한 학부모 참여(learning at home):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숙제 및 교육과정 관련 활동을 함께 함(숙제를 도와줌).
- 의사결정에 참여(decision making): 학교의 학부모 조직이나 각종 위원회(PTA, PTO,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의사결정.
- 학교를 위해 지역사회 조직과 협력(collaborating) : 학부모가 지역사회프로그램이나 지역의 교육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하고, 지역의 학습자원을 학교 교육에 활용하도록 지원(지역위원으로 참여).

○ Feyfant & Rey(2006)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교육에 대한 가치와 목적이 다르다는 인식하에 학부모들의 참여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 분리모델 : 학교와 가정은 교육에 대한 가치와 기대가 다를 수밖에 없어 대립적인 관계형성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모델은 가정과 학교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배타적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 파트너십 모델 : 학교와 학부모는 자녀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학교는 사회적 지위를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기회가 제공되는 공공의 장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학업성취를 통한 사회이동이 학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관계도 자녀(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업성취를 위하여 서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사용자 참여모델 : 학부모는 민주주의사회의 시민으로서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모델이다. 따라서 학부모는 위의 두 번째 모델에서 더 나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넘어 학교운영주체로서 바람직한 학교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학교 공동체에 대한 학부모들의 공헌은 궁극적으로 자녀의 만족스러운 학교생활로 이어진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 선택모델 : 학교는 초경쟁적인 시장에 들어갔으며, 학부모는 소비자로서 자신들의 자녀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고 보는 모델이다. 1980년대 이후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신자유주의 학교교육모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Price-Mitchell & Grijalva(2009)는 학교와 자녀에 대한 집중 정도와 관여 방식에 따라 학부모를 지원자, 동반자, 아웃사이더, 멘토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유형의 학부모들이 자녀학업성공과 학교공동체에 미치는 공헌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학부모 학교 참여 모델

↑ 높음 학교공동체 공헌도 낮음 ↓	<지원자> - 고전적인 학부모 지원자 - 학부모 운영위원 - 학교재정지원 - 학교지원에 집중	<동반자> - 전면적 참여 학부모 - 의사소통자, 문제해결자 - 적극적인 전략가 - 학교와 자녀 모두에게 관심
	<아웃사이더 혹은 반발적 학부모> - 학교를 비난하거나 학교와 거리를 두는 유형 - 학교와 자녀 모두에게 관심이 없음	<멘토> - 자녀학습에 관심 - 자녀교육 동기화 - 자녀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유형
	← 낮음	→ 높음

자녀학업성공 공헌도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교사)와의 소통, 학교의 재정 및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봉사)을 넘어 학교운영에의 참여로 발전하고 있다. 학교(교사)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학교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나아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 하지만 이러한 학부모 학교 참여 모델은 여전히 학교를 중심에 두고, 학교 교육력 제고라는 목표에 기초하여 논의되는 한계를 지닌다. 지식정보화와 네트워크사회, 개방·공유·참여가 강조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ing Society), 자율성을 지닌 주체들의 소통과 협력에 의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강조되는 미래 사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학교 교육력 제고라는 집단적 목표가 ‘개인의 성장’과 연계되어야 하고, 또한

그 목표와 더불어 성장하는 개인들의 보다 전면적인 소통과 관계맺기를 지향해야 한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자녀의 성장을 위한 학교 및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통한 사회적 성장의 사례는 일부 대안학교와 혁신학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촌 지역에 위치한 조현초등학교는 학교-학부모의 소통, 학부모 학교 참여를 기반으로 학부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학부모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자격취득반을 운영하였고(2010년 독서지도사 자격증 14명 취득), 주변의 생태환경을 활용한 문화예술체험학습장을 구상하기도 했다.²⁴⁾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는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도시에 위치한 이우중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은 학교 참여의 경험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잡수세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중국집 ‘동천동 옛날 손짜장’에서는 흥겨운 점심자리가 마련됐다. 20여명의 어른들이 중국요리를 즐겼다. 한 할머니는 만두를 집더니 음식 나르는 일로 바쁜 심명화씨(51) 입에 덩석 넣어준다. 이내 한바탕 웃음이 터진다. 동천동 지역봉사활동 모임인 ‘다다선선’ 회원들이 지역 내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마련한 정기 외식 자리다.

다다선선은 주민 30여명으로 지난해 6월 결성됐다.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벤트도 종종 열지만 무엇보다 결연을 맺은 저소득층 노인 20여 가구, 조손가정 학생 8가구를 돌보는 일에 더 신경을 쓴다. 회원들은 2주일에 한 번 반찬을 만들어 어르신들 집을 찾는다. 말벗이 돼주고, 며느리가 되는 날이다. TV가 없는 할머니를 위해 온 동네를 다 뒤져 중고 TV를 마련해주고, 비닐하우스 집이 허술해보이면 지역 내 축구동아리 ‘이우FC’의 힘을 빌려 집을 짓고 수리도 한다.

다다선선 회원 심씨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아파트 앞집과 터놓고 지내기도 어렵게 된 지가 오래”라며 “처음엔 어르신들과 서먹서먹했는데 이젠 가족처럼 가깝게 지낸다”고 말했다. 뒤로는 광고산, 옆으로 동막천이 흐르는 동천동은 걸으면 수도권의 여느 도시와 다르지 않다. 높게 솟은 아파트 단지, 북적이는 자동차와 어지럽게 달린 간판, 외곽의 비닐하우스 집... 전형적인 수도권 도시의 모습이다.

24) 이중현, 『학교가 달라졌다』, 우리교육, 2011년. 205~296쪽

그러나 속살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다른 동네와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 지역 주민들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외롭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학생들을 후원하고 함께 놀아주며 멘토 역할도 한다. 경쟁보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학부모 세미나를 열고, 어린이날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 한바탕 잔치를 연다. 2008년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동천동 구석구석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꾸려나가는 행사와 활동이 줄을 잇는다. 다양한 나눔활동은 물론 문화·건강강좌도 수시로 연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스스로 기획해 마련한다. 방과후교실, 공동구매가 대표적인 행사다. 주민 스스로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연습할 정도로 최근 동천동의 공동체 활동은 진화했다. 동천동 공동체의 중심은 ‘이우생활공동체’다. 흔히 ‘이우 생협(생활협동조합)’으로 불린다. 생협이지만 생활문화공동체라는 점을 더 강조한다.

이우생활공동체 윤정란 이사장(45)은 “대안학교인 이우학교의 생협으로 출발한 생활공동체가 2005년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공동체가 지역으로 확장한 것은 학부모들 사이에 ‘우리만이 아니라 이웃 모두와 생활공동체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자’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지역 주민은 누구나 가구당 3만원을 출자하면 공동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현재 조합원은 500여명.

윤 이사장은 “조합원들이 함께 지역 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기농 과자가게(해피쿠키), 동네사랑방인 찻집이 그 결실이다. 남성들이 만든 축구동아리 ‘이우FC’는 친목모임을 넘어 성남청소년학교 학생들의 멘토로 활동한다. 이우FC 단장인 이세영씨(57)는 “동네 공동체문화 향상에 이바지해보자는 회원들의 의지가 강하다”면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조금씩 보태면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인문학공부 활동으로 잘 알려진 ‘문탁네트워크’는 ‘마을에서 만나는 인문학 공간’이란 이름 아래 주민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수준높은 인문학 공부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지인들과 문탁을 시작한 이희경씨는 “세상을 변화시키자면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면서 “그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 공부이며 이 중 인문학 공부가 최선”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작은도서관’의 중요성을 일깨운 ‘느티나무도서관’, 새로운 개념의 도심 교회인 ‘좋은친구센터’도 공동체 활동의 한 축이다. 동천동 사람들의 공동체 활동이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됐지만 실제 참여자들은 때때로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아직 전체 주민 대비 소수가 참여하는데다 전문활동가도 부족하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는 크다. 12월 무대에 올릴 연극 연습이 동천동 공동체의 미래를 잘 보여준다.

이우생활공동체 조합원들은 이제 단순한 나눔만이 아니라 저소득 계층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한 단계 높아진 공동체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다. 심씨는 “어르신들이 담근 김치를 지역주민들이 사주는 등 지역 내에서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상생이며 공동체 활동의 궁극적인 성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이란 울타리를 뛰어넘어 지역 공동체란 이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동천동. 이웃과 어울리고 손을 잡으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삶의 현장이다.²⁵⁾

(2) 학부모 학교 참여의 장애 요인 분석

○ Darkenwald & Sharan(1986)은 학부모 참여의 장애 요인을 4가지로 보았다.

첫째, 상황적(situational) 요인이다. 직장 근무 시간, 교통 상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사회·심리적(psychological) 요인이다. 학부모는 자신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녀의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참여를 재정적 지원과 연결시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셋째는 정보적(informational) 요인이다. 학교가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알지 못할 때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제한될 수 있다.

넷째는 제도적(institutional) 요인이다. 학교의 장소와 시설이 부적합하거나 일방적인 회의 진행이나, 비민주적인 절차 등의 제도적인 요인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²⁵⁾

○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권리를 제한하는 또 다른 논리는 교육의 ‘전문성’ 논리이다. 즉,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Feyfant & Rey(2006)가 제시한 학부모 학교 참여 유형 중 ‘분리모델’과 연관된다. 이러한 ‘분리모델’은 계몽주의 시대부터 오랜 전통을 형성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학교는 사회 전반의 무지, 빈곤, 추잡함과 구분되는 ‘지식과 문명의 요체’로 이해된다. 따라서 학생들을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25) 경향신문, 2011년 10월 15일자 기사

26) 강소연, 앞의 논문 15~17쪽에서 재인용

잠재된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 역시 학교는 오랫동안 이 모델에 의해 학부모와의 관계를 맺어왔다고 볼 수 있다. 학교는 지식 전수의 거의 유일한 공간이었고, 교사의 지적·도덕적 수준은 학부모의 그것에 비해 훨씬 높았다. 하지만 사회변화에 따라 이 논리는 근거를 상실했다. 학교는 더 이상 지식 전수의 독점적 권위를 상실하였고, 교사의 지적·도덕적 수준이 학부모보다 높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 ‘전문성’의 논리 못지않게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왜곡시키는 논리는 이른바 ‘수요자 중심’의 논리이다. 이는 Feyfant & Rey(2006)가 제시한 학부모 학교 참여 유형 중 ‘선택모델’과 연관된다. 학교 역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공급자(학교와 교사)는 수요자(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 논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학교선택제와 학교정보공시제, 학부모 교원평가 등으로 점차 자리잡고 있다. 외견상으로 볼 때, ‘선택모델’은 학부모의 권리와 학교 교육 참여를 확대하여, 학교 교육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학교의 서열화, 학부모의 이기적 욕망에 의한 학교의 공동체 문화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학교(교사)와 학부모의 소통과 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어렵게 만든다.
- 학부모 학교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기존 학부모 참여의 협소함이 지적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학부모 참여가 ‘육성회’ 등 주로 재정 지원과 연관되어 있었고, 그러다보니 중산층 이상의 학부모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회의를 주간에 진행하는 바, 전업주부 중심으로 학부모회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학부모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 역시 ‘자기 자녀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²⁷⁾

국회 김춘진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회 구성 비율이 높아지고(2009년 65.4% → 2010년 90.8%) 학부모총회 개최횟수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근무시간에 회의가 이루어져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참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표 2> 2011년 각급별 학부모총회 개최 현황²⁸⁾

(단위: 횟수, %)

각급	학교 수	학생 수	학부모 총회 개최 여부			학부모총회 총 개최 횟수			비근무 시간 개최 비율 (A/B)
			개최 학교수	비개최 학교수	개최학교 비율	근무시간 개최	비근무 시간 개최(A)	계(B)	
초	5,877	3,166,906	5,731	137	97.5	6,455	428	6,882	6.2
중	3,125	1,896,270	2,990	144	95.7	3,225	429	3,650	11.8
고	2,292	1,939,492	2,151	138	93.8	2,185	1,152	3,337	34.5
합계	11,294	7,002,668	10,872	419	96.3	11,865	2,009	13,869	14.5

학교운영위원회 또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총회에 비해 비근무시간 개최비율이 훨씬 낮은 상황이다(특히 고등학교).

27) 경기도 교육청 학부모 모니터단 대표로 활동 중인 박용수 씨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딸이 초등학교 5학년 학기 초에 ‘아빠! 아빠는 학교학부모 임원활동 안 해요?’ 라고 나에게 질문을 했고, ‘왜?’ 하고 내가 딸에게 그 이유를 묻자 딸은 ‘우리 반 친구의 아빠가 학부모회 임원을 하는데~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를 무척 예뻐해 주셔서…….’ 라고 말 꼬리를 흐렸습니다. 내 딸은 그것이 무척 부러웠던 것입니다. <…중략…> 그래서 저 또한 딸 학교 체육진흥회 부회장직을 수락하고 그때부터 학교교육에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학부모의 학교 참여활동 대부분이 어머니회 또는 녹색어머니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아버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곳은 그나마 체육진흥회가 있었습니다.”(박용수, ‘학부모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교육정책포럼 현장리포트)

28) 김춘진 의원실 보도자료(2011. 5. 4), 본 연구 관련 제 3차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에서 재인용

<표 3> 2010년도 각급별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횟수, %)

각급	학교 수	학교운영위원회 총 개최 횟수			비근무시간 개최 비율 (A/B)	학운위 평균 개최 횟수
		근무시간 개최	비근무시간 개최(A)	계(B)		
초	5,835	38,048	890	38,817	2.3	6.7
중	3,066	19,749	646	20,417	3.2	6.7
고	2,247	16,619	841	17,507	4.8	7.8
합계	11,148	74,416	2,377	76,741	3.1	6.9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즉 직장인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과 후 또는 주말에 개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9조의2(회의소집) 제3항이 올해 3월 18일 신설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는 이러한 입법취지 등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

-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반면, 학부모회의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관련 근거 법령이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즉,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정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학부모회 현황’(2009)에 따르면, 약 63%의 학교에서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이 분리되었다는 의미이다. 일상적인 학부모들의 만남과 교류, 구체적인 학교 교육활동 지원(교통지도, 급식활동지원 등)이 학부모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의 전문성과 지속성의 부족도 학부모 학교 참여의 한계로 작용한다. 학부모회는 기본적으로 재학생 학부모를 자격으로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지역위원의 자격으로 졸업생 학부모의 참여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는 어렵다. 학교 운영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다.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일반 학부모가 단기간에 학교 운영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충분히 획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더구나 학부모회 임원, 혹은 학교운영위원들의 임기는 대부분 1~2년으로 제한된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 대표들이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는 어렵다.

-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부모 참여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학부모 자녀교육 및 학교 참여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최상근, 2010).²⁹⁾ 이 조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최초의 대규모 학부모 조사로서, 전국 188개교 25,022명의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해, 회수된 20,440명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중앙정부는 물론 경기도 교육청의 학부모 정책 수립 방향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 내용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학부모의 교육관** : 자녀를 교육시키는 주된 목적에 대해서는 “소질이나 적성을 살려 좋은 직장을 갖게 하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48.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성을 길러주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33.5%,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의 가장 큰 책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있다는 응답이 78.8%로 가장

29) 최상근, 「학부모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 조사·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10년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 및 교사에게 있다는 응답이 14.4%, 국가에게 있다는 응답이 6.8%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경우 학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험이 없는 경우 학교 및 교사 또는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학교 교육 강조 항목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는 응답이 86.5%로 가장 많았고, 직업을 갖기 위한 전문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는 응답이 13.5%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회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일수록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직업을 갖기 위한 전문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이는 학부모회 활동 경험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학부모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학교(교사)와의 소통** : 학교가 현재 제공하는 교육정보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학업성취도에 관한 정보가 2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부모 교육 안내가 14.5%, 수업 시간표 및 교육 과정 편성이 12.9%, 학사 일정이 11.9%로 나타났다.

학교가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알림장, 우편물, 가정통신문 등 유인물이 39.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 홈페이지가 22.8%, 전화나 문자메세지(SMS)가 22.7%, 학교알리미사이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학부모서비스’ 등 전국 공통 서비스 망이 13.9%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정보에 대한 만족도 항목에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1.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만족한다”가 23.0%, “만족하지 않는다”가 10.5%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정보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부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학부모회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일수록 참여 경

험이 없는 학부모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부모 학교 참여 경험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사와의 접촉 유형을 질문한 항목에서는 “집단 모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화 또는 통신”이 22.4%, “만난 적 없음”이 20.4%, “면대면 만남”이 12.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부모 교육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경우 경험이 없는 학부모에 비해 “집단 모임”이나 “면대면 만남”의 비율이 높은 반면, 학부모 교육 경험이 없는 학부모는 “전화 또는 통신”을 통한 접촉 비율이 높았다. 특히 학부모 교육 경험이 있는 학부모 가운데 7.1%만이 교사와 “만난 적 없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 교육 경험이 없는 학부모는 무려 26.7%가 교사와 “만난 적 없다”고 응답하였다. 마찬가지로 학부모회 활동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경우 경험이 없는 학부모에 비해 “집단 모임”이나 “면대면 만남”의 비율이 높은 반면, 학부모회 활동 경험이 없는 학부모는 “전화 또는 통신”을 통한 접촉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학부모회 활동 경험이 있는 학부모 가운데 5.2%만이 교사와 “만난 적 없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 교육 경험이 없는 학부모는 26.0%가 교사와 “만난 적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모 학교 참여 경험에 따라 교사와의 접촉 유형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 상담주간 참여 여부에서는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5.2%, 개최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12.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부모 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56.5%가 상담주간에 참여한 반면, 학부모 교육 경험이 없는 학부모는 단지 25.1%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학부모회 활동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57.6%, 경험이 없는 학부모는 27.0%가 상담주간에 참여하였다. 학부모 학교 참여 경험에 따라 상담주간 참여 여부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와의 직접 면담 횟수에서는 1학기 동안 학교 선생님과 면대면 만남이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5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회 있었다는 응답이 29.0%, 2회 있었다는 응답이 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부모 교육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경험이 없는 학부모에 비해 면담 횟수가 많았으며, 특히 면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학부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28.8%였으나, 학부모 교육 경험이 없는 학부모 가운데는 무려 60.8%나 되었다. 또한 학부모회 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서도 커다란 차이가 보여, 학부모회 활동 경험이 있는 학부모 가운데는 26.2%만이 교사와의 직접 면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활동 경험이 없는 학부모는 59.4%가 면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부모 가운데 절반 가량의 학부모가 교사와 직접 면담한 경험이 없으며, 학부모 학교 참여 경험에 따라 교사와의 면담 경험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와의 직접 면담 시간대를 질문한 항목에서는 면담하였던 시간이 평일 일과 중 교사의 수업 없는 시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평일 일과 후 저녁시간이라는 응답이 27.4%, 주말 또는 방학 중이라는 응답이 5.0%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교사 면담 법제화 찬성 여부에서는 학부모와 학교 선생님과 면담을 제도화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61.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7.9%, 반대한다는 응답이 10.6%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 교육이나 학부모회 활동 경험이 있는 학부모일수록 찬성하는 응답률이 높았다.

- **학부모 교육 참여** : 학부모 교육을 받은 경험 항목에서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7.7%,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2.2%로 나타났다. 학부모회 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서는 활동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67.8%가 학부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반면, 학부모회 활동 경험이 없는 학부모 가운데는 단지 19.2%만이 학부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모 교육을 받은 횟수에서는 1회가 5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회가 24.3%, 3회가 8.6%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교육을 받은 기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및 인근 학교라고 응답한 경우가 5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민간기관 및 단체가 18.8%, 교육청이 17.8%, 시군구청이 6.5%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교육의 도움 정도 항목에서는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보통이다”가 35.0%,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3.1%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위해 필요한 학부모 교육 항목에서는 “자녀의 인성 및 예절지도 교육”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와의 대화기법 교육”이 32.6%, “진학 및 진로지도 교육”이 13.3% 순으로 나타났다.

- **학부모회 활동 및 학교운영 참여** : 학부모회 참여 여부에서는 “참여한 적 있다”라고 응답한 학부모가 27.1%에 불과한 반면, “참여한 적 없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무려 72.9%나 되었다.

학부모 참여 활동 내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학생보호 지원(교통안전요원, 등하교 안전지킴이, 학교청결 관리, 급식도우미, 도서관 운영 지원 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부모교육 강좌 참여가 23.4%, 학교행사 지원(소풍, 체육대회 등)이 20.3%, 수업활동 지원(시험감독, 보조교사, 일일교사 등)이 17.6%로 나타났다. 학부모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있어서는 학부모 교육이 31.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바자회(기부금 마련 등)가 28.6%,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활동이 18.4%, 방과후 학습지원이 10.6%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회 참여 활동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본 항목에서는 “보통이다”가 44.5%로 가장 많았고, “도움이 되었다”는 32.5%, “잘 모르겠다”는 15.2%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회 운영을 위한 경비 마련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는 회비 마련은 학부모 회비와 학교 지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 지원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28.5%, 학부모 회비로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17.9%, 회비가 필요없다는 응답이 16.6% 순으로 나타났다. 3분의 2 가량의 학부모는 학부모회 활동을 위해 학교나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회 활동 참여 저해 요인 항목에서는 학부모회 활동 참여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을 “시간이 맞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시간 없음”이 33.8%, “학부모회에 대한 관심 없음”이 6.4%, “학교 출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6.3%, “학교에 대한 정보 부족”이 3.6%, “경제적 여유가 없음”이 3.4%,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3.4%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학교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맞벌이 가정에 대한 시간적 배려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운영 의사결정과정 참여 여부 항목에서는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80.3%,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9.7%로 나타났다.

학교 운영 의사결정과정 참여 방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학교운영 모니터단 참여가 4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운영위원이 44.4%, 학교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가 11.2% 순으로 나타났다.

- 학교 만족도 및 평가 :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장의 지도

성 및 경영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83.1%, 교사의 교과지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87.9%,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86.4%, 진학 및 진로지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74.0%, 학교 시설 및 환경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73.3%로 나타났다. 교사의 교과지도 항목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아쉽게도 이 연구보고서에는 학부모 학교 참여 경험과 학교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없어, 학부모 학교 참여 경험이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알 수 없다.

-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사와의 소통 및 학교 참여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예를 들면, 교사와 직접 면담을 한 경험이 “없다”는 학부모가 무려 50.5%나 되는 반면, 학부모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학부모는 27.1%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학부모 학교 참여도가 낮은 이유는 낮 시간에 모든 행사를 개최하는 학교의 잘못된 관행을 들 수 있다. 실제로 80%가 넘는 학부모들이 학교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시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많은 취업 학부모들이 학교 참여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부모 교육이나 학부모회 활동과 같은 학교 참여 경험이 있는 학부모일수록 교사와의 면대면 만남이 많으며, 소통 빈도도 높았다. 현재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학교 참여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소수”의 학부모와 참여 정도가 “대체적으로 낮은 다수”의 학부모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학부모회 운영을 위한 학교(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모 학교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참여협육 관련 경기도교육청 실태 분석

(1) 경기도교육청의 학부모 참여 지원 사업

-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 정책에 발맞추어 경기도교육청 역시 다양한 학부모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 지원센터,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학부모회 학교참여지원, 학부모상담사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사업 외에 경기교육사랑학부모지원단(경사단)과 학부모정책연구회 등의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 중 경사단은 각 학교의 학부모회 대표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참여 지원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는 경사단의 배경, 목적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³⁰⁾

30) 경기도교육청(학생학부모지원과), 「2011년 경기교육사랑 학부모지원단 운영 계획」

1. 배경

- 학교현장 중심의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단위 학교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필요
- 학부모의 실질적인 학교교육 참여 보장 필요
-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 경감 필요
- 관(官)주도의 정책추진 불식, 민간 주도의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부모 리더의 육성

2. 목적

-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학부모와 교원의 행복한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 학부모 학교참여를 통한 학교현장 이해 및 교육의 질 제고
- 학부모와 학교의 교육현안 문제 해결로 학교경영 체제 확립
- 학교와 학부모의 유기적인 네트워킹으로 다양한 교육문제 극복

3. 필요성

- 기존의 학부모 활동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 학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적극적인 학교교육참여 활성화
- 학교 당면 문제를 학부모와 함께 이해와 협력을 통한 개선 방안 모색
- 학교와 학부모와의 파트너십에 의한 학교혁신

4. 기본방향

- 도교육청 단위 경기교육사랑 학부모지원단 구성(80명)으로 학부모 리더 육성
- 지역교육청별 단위학교(초·중·고) 학부모대표 각 1명씩 구성으로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 단위학교 학급별 학부모대표 1명씩 구성으로 학부모현장의 소리청취를 통한 학교참여 활성화
- 단위학교 학부모회 대표 1명은 학부모총회 시 적법한 절차로 선정
- 도단위 경사단 활동은 지역단위 경사단의 자문위원 및 컨설팅 위원으로 활동

또한 각 지역교육지원청별 초·중·고 학부모대표 1인(전체 75명)과 유치원(3명), 특수 학교(2명) 등 총 8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경사단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역할

- ▶ 경기학부모 교육정책 자문위원 및 인력풀 활용
- ▶ 경기도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지원 및 회계관련 컨설팅
- ▶ 지역간 학부모대표를 위한 교육정보 제공
- ▶ 지역교육청별 학부모대표 컨설팅 및 교육
- ▶ 단위학교별 학부모 현장의 소리 청취로 학부모교육정책 의견 반영
- ▶ 경기교육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 역할 수행
- ▶ 학부모의 현장의 소리를 수렴한 교육감과의 간담회
- ▶ 학부모 지원 사업 정책 개발 Think Tank로써 역할

○ 본 연구과정에서 면담에 참여했던 학부모들은 경사단 활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사단 연수에 참여하면서, 학부모 정책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학부모 활동의 중요성과 자부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경사단은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여전히 그 참여의 내용이 ‘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일상적인 활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즉, 경사단이 목적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2) 기존 참여협육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

○ 학부모 참여 지원 사업 간의 중복 및 연계성 부족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학부모 참여지원 사업은 다양한 사업 간의 중복과 연계성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경사단의 역할은 교과부가 추진하는 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 사업 등과 중복된다. 교과부의 ‘학부모정책 추진 방향’(2009. 11. 9)과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교육사랑 학부모 지원단 운영 계획’(2011. 3)에 기초하여, 사업의 목적과 조직의 역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경사단, 정책모니터단, 학부모지원센터의 역할 비교

경사단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	학부모지원센터
① 경기학부모 교육정책 자문위원 및 인력풀 활용 ② 경기도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지원 및 회계관련 컨설팅 ③ 지역 간 학부모대표를 위한 교육정보 제공 ④ 지역교육청별 학부모대표 컨설팅 및 교육 ⑤ 단위학교별 학부모 현장의 소리 청취로 학부모교육정책 의견 반영 ⑥ 경기교육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 역할 수행 ⑦ 학부모의 현장의 소리를 수렴한 교육감과의 간담회 ⑧ 학부모 지원사업 정책 개발 Think Tank로써 역할 ※ 번호는 인용자가 붙임	- 정부의 교육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창의적이고 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온라인상으로는 교육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및 정기적인 설문참여, 주요 교육정책 이행사항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되고, - 오프라인상으로는 시도별 모임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교육청 및 교과부에 제출하게 됨	- 학부모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시도교육청별로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등을 지원하고, 학교참여 방법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하게 됨

경사단의 역할 중 ①, ⑤, ⑥, ⑦, ⑧은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의 활동과 중복되고, ②, ③, ④는 학부모지원센터의 목적과 겹친다. 여기에 교육감 자문기구인 ‘참여협육 TFT’, ‘경기교육 자치협의회’ 등의 활동이 더해지면, 조직 위상과 사업의 중복은 더욱 확대된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 참여지원사업(학부모지원

센터,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 학부모상담사, 학부모콜센터 등)과 경기도교육청의 자체 사업(경기도교육사랑학부모지원단, 학부모정책연구회 등)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미흡

경기도교육청의 학부모 참여지원 사업은 자체 사업인 ‘경사단’에 치중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점 사업인 학부모지원센터 사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 김장중 센터장은 경기도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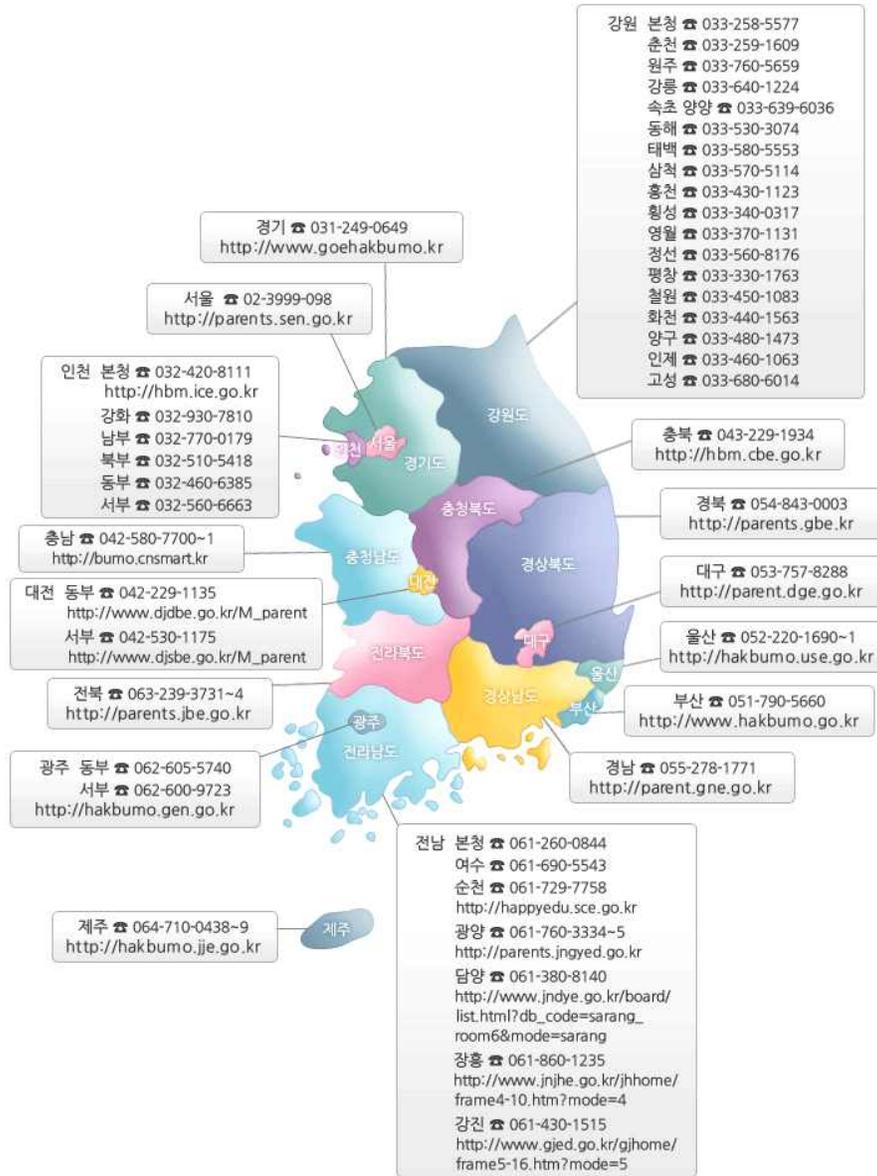
-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등 학부모 역량강화에 주력함
- 세계 최대 교육자치구 규모(학교/학부모수)에 비해 센터 조직 미약
- 교육청과 학부모지원센터간의 역할과 기능 정립 미비
- 거점센터가 경기도의 특성(원거리, 대도시/농촌/과 잘 부합되지 않음)
 - * 예)북부센터(포천)에서 고양/파주까지 거리
- 교육지원청이 배제되어 지원체계 단절 및 현장밀착형 서비스가 제한
 - * 지역 및 단위학교와 업무 연계성과 학부모 서비스 역량이 저하
- 직접적인 학부모 서비스 제공 기능 미약(상담, 교육, 학교참여 지원)
-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활용 저조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미흡

학교 교육관련 학부모들의 문의사항에 응답하고, 다양한 학부모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학교·교사와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학부모 콜센터’ 역시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나타난 각 시도교육청의 학부모콜센터 운영 상황은 다음과 같다.³²⁾

31) 김장중, 「경기도학부모지원센터 발전 방안 및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구상」, 본 연구 관련 제 2차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32)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allparents.go.kr/counsel/counsel_02.jsp

<그림 1> 각 시도교육청 학부모 콜센터 운영 현황³³⁾



33)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www.parents.go.kr/counsel/counsel_02.jsp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학부모 참여지원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계성 부족은 자칫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학부모 학교참여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조직 전망 부재

학부모 학교 참여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부모 학교 참여의 전문성 축적,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가(학부모회 대표, 학교운영위원 등)의 양성과 조직화가 요구된다. 또한 학부모 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학교와의 연계, 혹은 지역 주민의 학교 참여·지원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 소양과 열정을 갖춘 활동 역량이 요구된다. 향후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학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 역량의 양성과 조직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학교 참여를 사회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운동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개인의 이해관계, 혹은 당사자주의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자기 집 근처에 들어서는 유해한 시설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하지만, 그 활동을 통해 보다 건강한 환경과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환경운동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개인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된다.

학부모 학교 참여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기 자녀를 위한 보다 좋은 교육환경과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학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을 깨닫고 자녀 뿐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때는 이미 ‘학부모’로서가 아니라 ‘건전한 시민’으로서 학교와 교육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된다.

현재 여러 학부모운동단체, 혹은 지역사회교육단체에는 이처럼 ‘학부모’로서 학교와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꾸준한 실천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 ‘활동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활동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조직하고 학부모회와 연계시켜 학부모 학교 참여의 전문성이 축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해 배출된 활동가들이 자연스럽게 지역 차원의 활동가 조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경사단과 정책모니터단, 학부모강사요원 등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활동가로서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다. 그 분들을 지속적으로 경기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건전한 경기 시민’이자 ‘학부모 활동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조직과 활동의 전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이 밖에도 이번 연구과정에서 워크숍 및 면담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 당국(특히 교장)의 인식 부족
: “여전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부모회를 학교 교육의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학교 운영을 보조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의중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과도한 부담에 의한 활동 기피
: “각종 회의, 행사 참석 등의 부담이 크고, 관행적인 금전 각출도 여전하다.”
-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지원시스템 부족
: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이 없는 한 학부모회 관련 학교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 또한 학부모회 운영에 요구되는 행정적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전문성 부족
 - : “학부모가 매년 바뀌는 조건에서 경험이 축적될 수 없고,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 당국의 보조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지역 내 타 학교와의 공조체제 부족
 - : “학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 차원의 교육 문제 해결이 어렵다.”
-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정보에 대한 공유 부족
 - : “학교운영위원회 결과가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다.”

2. 참여협육 실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정책 방향

가. 학부모 학교 참여 및 지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

(1) 학부모 학교 참여에 대한 인식의 전환

- 기존의 학부모 학교 참여와 관련한 낡은 인식과 사업 관행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이 요구된다. 다수의 학부모가 학교 교육의 보조자로서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의 주체로서 의사결정과 교육과정운영에 참여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학부모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표 5〉 학부모 학교 참여에 대한 인식의 전환

기존 학부모 학교 참여	학부모 학교 참여의 변화상
소수 학부모 참여	다수 학부모 참여
자녀의 학습 성공	자녀의 학습 성공 뿐 아니라 학교 및 지역공동체 발전 기여
학부모 의무 강조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실현
학교 운영 관련 의사 결정 제한	학교 운영 관련 의사 결정 참여
학교 교육의 보조자	학교 교육의 주체
학교 교육력 제고 목표	학교 교육력 제고 및 학교 참여를 통한 학부모의 성장

○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교사)의 학부모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학부모 스스로 자기 자녀 중심의 학교 참여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의 성장을 책임지는 공동주체로서 학교에 참여하고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적 시민으로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2) 학부모 지원에 대한 인식의 확장

○ 기존의 학부모 지원은 주로 학부모 역할 능력에 대한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학부모로서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녀지도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의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구분	과정(프로그램명)	기간(시간)	주관 기관
서울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희망 연수	4회(90분 단위)	시교육청
전북	에듀칼리지(학부모대학)	월 2~3회(3시간씩)	도교육청, 지원청
서울	학부모 진학설명회	3, 4시간(수시, 정시)	교육연구정보원
서울	자녀교육 학부모 한마당	20개 강좌(각 2시간)	교육연수원
부산	학부모 가르치미 양성과정 연수	30회(60시간)	중앙학부모교육원
부산	자녀상담 전문성 향상 연수	4회(16시간)	중앙학부모교육원
부산	미술치료 과정	4회(12시간)	중앙학부모교육원
대구	독서와 글쓰기 지도 과정	8회(32시간)	학부모교육센터
대구	학부모 북시터 교육	8회(24시간)	중앙도서관
경기	학부모 자녀교육 아카데미	12회(24시간) * 학교순회(2시간)	평생교육학습관

○ 그런데 이러한 연수 중심의 학부모 지원은 주로 ‘자발적 의지를 가진’ 학부모에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을 고려하여 저녁시간과 주말을 이용한 학부모 프로그램들이 확대되고 있지만, 조손가정·다문화가정·위기가정의 학부모 참여는 매우 제한적인 게 현실이다. 위기 가정의 학부모에 대해 교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일탈과 성적부진, 성격장애 학생들을 상담하다보면, 대부분 경제적 이유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한 가정의 위기 상황과 그 부모들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 학생들을 온전하게 성장시키는 것은 결국 그 가정과 부모님들의 삶의 조건을 온전하게 되돌려 놓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들은 직접 만나기도 어렵고, 설사 만난다고 해도 학교와 교사가 그 분들을 돕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학부모님일수록 학교에 대한 미안함과 원망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분들의 ‘위기’는 결국 경제적 조건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의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입니다.”(초등학교 교사)

“우리학교는 급식 지원 대상자가 전교생의 1/3에 가깝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안들(왕따, 폭력 등)은 대부분 그 학생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학습에서 심각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여 가해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나랑 상관없어요. 그냥 경찰에 넘기세요’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하는 분이었는데, 새벽에 귀가하고 오후에 출근하다보니 아이를 만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중학교 교사)

‘위기 학생’, ‘위기 가정’ 뿐 아니라, ‘위기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 불안, 그리고 사회양극화의 확대는 이러한 ‘위기 가정’과 ‘위기 학부모’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닉 데이비스(Nick Davies)가 말하는 “가난이 학교를 무너뜨리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빈곤이 미치는 가장 나쁜 영향은 가난한 사람들의 정서를 파괴시키는 데 있다. 부모들은 너무 지쳤거나 침체되어 있고, 많은 어린 자녀들을 키우느라 늘 긴장 상태에 있으며, 이처럼 강박한 삶과 싸우느라 엄청난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이에 따라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성장과정에서 빼돌어지기 시작한다. 예비데일 그레인지 학교(영국의 빈곤 지역 학교-인용자) 학생 가운데 45%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상태이며, 많은 아이들이 정서 장애, 행동 장애로 곤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12%는 중증학습장애(지능지수 50 이하, 매우 짧은 집중력, 과잉행동장애, 수업 방해 행동, 주위를 끝기 위한 돌출 행동, 난독증, 임상적 우울증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를 갖고 있다.³⁴⁾

이러한 ‘위기 가정’과 ‘위기 학부모’에 대한 지원이 없이는 ‘위기 학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위기 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교실 붕괴’ 현상, 나아가 학교 교육의 위기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학부모 지원은 ‘위기 가정’과 ‘위기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중요한 사업 영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물론 그 사업은 학교와 교사의 노력만으로 수행할 수 없다. 심리 상담사, 사회 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의 역량이 결합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지역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즉, 지자체와 교육청(학교), 상담 및 복지 관련 전문가, 헌신적인 자원봉사조직 등이 연계된 ‘종합적인 돌봄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돌봄 시스템의 구축은 최근 논의가 활발한 ‘지역 교육 거버넌스’의 핵심적 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나. 학부모의 민주적 학교 참여를 위한 제도 정비

(1) 제도 정비의 방향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래 전부터 학부모회의 민주적 구성 및 운영, 학부모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34) 닉 데이비스 지음, 이병곤 옮김, 『위기의 학교』, 우리교육, 2007년, 39~40쪽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에 학부모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체 학부모를 대표하는 학부모회가 학부모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학부모회 대표가 학교운영의 의사결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회에서는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모든 학부모들이 자신의 의견을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학교운영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부모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참여
- 학부모 의견을 상시적으로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체계 마련

학교교육계획은 학년 시작 전(2월경)에 마련되므로, 학부모회에서는 학교교육계획에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먼저 학부모 대상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³⁵⁾

하지만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근거 법령이 미흡한 조건에서는 과거의 관행(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분리)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대립하기도 하고, 학부모회 대표와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운영 참여의 주도권을 다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육과학기술부는 공모사업을 통해 일부 학교의 학부모회를 지원하고, 학부모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국회 김춘진 의원실에서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인 학생회·교사회 및 학부모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공식조직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의 참여를 강화하여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자치역량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2010. 3. 22)

개정안은 기존의 제17조(학생자치활동)을 보완하고, 제20조의2(교사회) 및 제30조의8(학부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35)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학부모 학교 참여 길라잡이」, 29쪽

〈표 6〉 개정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17條(學生自治活動) 學生의 自治活動은 勸獎·보호되며,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學則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17조(학생자치활동) ① 학교에 학생의 자치조직으로 학생회를 두며,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된다.</p> <p>② 학생회대표는 학칙의 개정이나 학생 복지 등에 관한 의견을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p> <p>③ 학생회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 그 회의에 참석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p> <p>제20조의2(교사회)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 등에 관하여 학교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학교의 장 자문에 따를 수 있도록 학교에 교사회를 둔다.</p> <p>② 교사회는 제19조에 따른 교사로 구성한다.</p> <p>③ 교사회대표는 제19조에 따른 교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사회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p>

<신 설>

④ 교사회대표는 제31조에 따른 학교 운영위원회의 교원대표가 된다.

⑤ 그 밖에 교사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8(학부모회) ①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학교의 장과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문에 따르기 위하여 학교에 학부모회를 둔다.

② 학부모회대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제3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회대표는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가 된다.

④ 그 밖에 학부모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신에 일부 시·도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및 대표성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⁶⁾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학부모회, 혹은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학부모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2) 단위학교를 뛰어넘은 지역 학부모 조직의 구성과 운영

○ 단위학교의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지역 공통의 교육 문제에 대한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학부모 조직이 요구된다. 또한 단위학교에 대한 참여와 지원의 범위를 넘어, 지역 차원의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차원의 교육 현안에 학부모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도 지역 학부모 조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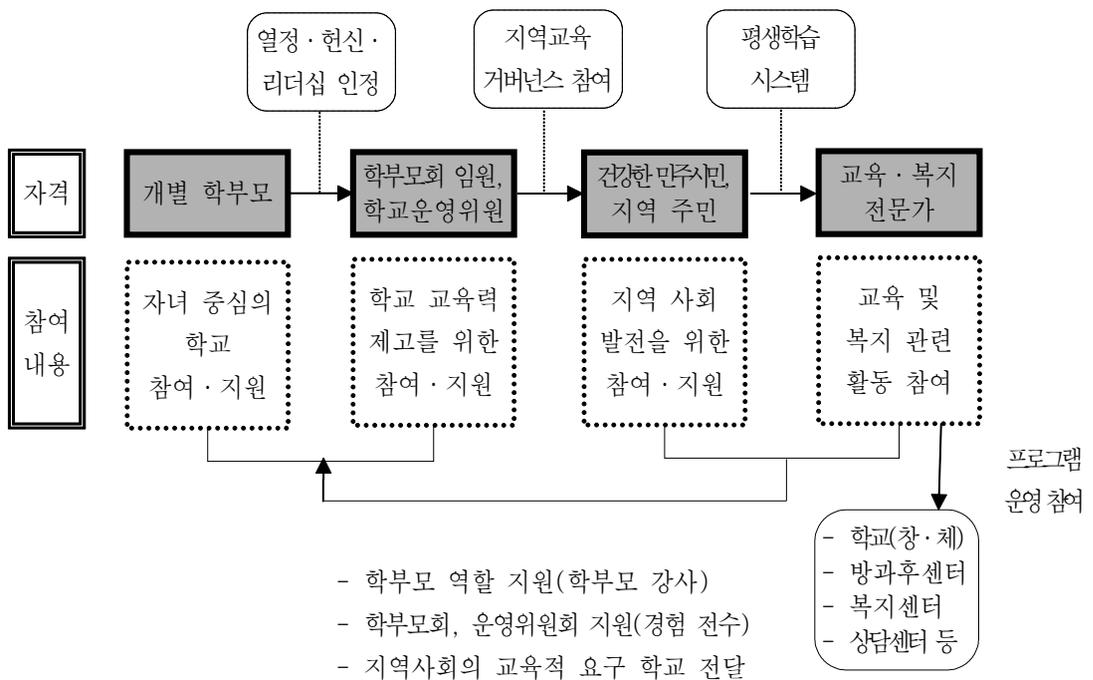
○ 단위학교의 학부모 참여가 해당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면, 지역 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학부모 참여는 지역 전체의 학교 교육력 제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목표로 한다.³⁷⁾ 지역 학부모 조직은 지역 교육 거버넌스의 집단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 졸업 이후에도 거버넌스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활동(학부모 강사요원, 정책모니터링, 코디네이터, 자원활동가 등)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별 학부모가 한 명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혹은 지역 활동가

36) 최근 전북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교육청은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교자치 조례제정을 통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연합뉴스 2011년 9월 8일자 기사 참조)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의 학교 참여 확대, 학교자치실현과 관련된 시·도교육청의 조례 제정 움직임은 확대될 전망이다.

37) 지역차원의 교육 거버넌스가 요구되는 이유는 학교 교육력이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좋은 학교’는 지역민의 정주의식을 높이고,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공동체의 가능성을 만들기도 한다. 이른바 ‘혁신학교 효과’로 알려진 경기도 일부 지역의 인구 증가(특히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 학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의 형성 등은 바로 그러한 ‘학교 효과’를 잘 나타내고 있다.

로 성장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때로 그 과정에서 평생학습 시스템과 연계되어, 교육, 상담, 복지와 관련한 전문성을 획득하는 경우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될 수 있다.

<그림 2> 학부모 교육 참여 및 성장 과정



○ 지역 교육 거버넌스는 학교(교육청)와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팀, 학부모 조직, 교육 및 복지 전문가(기관), 대학 등이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학교 교육력 제고 및 교육 복지 활성화를 위한 의제를 선정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 교육 거버넌스의 구축 효과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표 7〉 지역 교육 거버넌스 구축 효과

사업 분야	현재의 상황	지역 교육 거버넌스 구축 효과
지자체 교육 예산 편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하드웨어 및 전시성 행사 중심 지원(교육적 효과에 대한 고려 부족) - 학교장의 정치력(?)에 의한 선별적 예산 지원, 혹은 학력향상을 위한 방과후 운영비 등 획일적인 지원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예산 편성 - 교육예산 집행의 교육적 효과 제고 - 실질적인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 집행
지역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학생 선택권 제한 - 봉사활동, 진로교육, 각종 체험활동 등의 내실화·전문화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에 기초한 학점교환제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생 선택권 확대 - 지역 차원의 교육활동(봉사활동, 진로 교육 등)의 기획 및 운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화
저소득 위기 가정의 학생과 학부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방과후 지원, 지역아동센터, wee센터, 청소년센터, 교육복지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함. - 위기 가정 학부모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학생에 대한 종합적 돌봄시스템 구축(학교, 지자체, 교육복지 기관 연계) - 저소득 지원의 내용에 학부모 역할 지원 포함
학부모 교육 및 평생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 학교별로 유사한 학부모 교육이 진행됨(자녀와의 소통, 독서 지도, 입학사정관제 등) - 교육청(학교)의 학부모 교육과 지자체의 평생교육이 유사한 경우가 많음. - 학부모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한 학부모 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통합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 제고 - 다양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위 학교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 활동, 교육정책 모니터단 활동, 학부모 상담사 활동 등 활동 범위와 수준에 따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혁신학교 및 우수 교사 유치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 학교 구성원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결정됨 - 순환전보에 의한 교사 이동, 지역 사회에 대한 교원의 책무성 및 학교 혁신의 의지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차원의 혁신학교추진위 구성 및 운영(혁신학교 지정 요구 및 지원) - 지역 차원의 우수교사 유치노력(보조 교사 지원, 교직원 자녀 보육시설 지원, 교사 해외 연수 등)

○ 현재의 경기교육사랑학부모지원단(경사단)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경사단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학부모회 대표와 학교운영위원회간의 공식적인 연계가 없는 경우, 학교의 일상적인 운영 과정에 참여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이는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둘째, 일상적 자체 활동이 부족하고 여전히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에 수동적으로 참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든 일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근 간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경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지역교육지원청의 장학사나 일반직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나 정책 추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식으로 지역 학부모 조직이나 지역사회 활동 경험이 있는 상근 간사를 채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새로운 인력 충원에 따른 예산 편성, 기타 사무공간의 확보 등의 문제가 따른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사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인 학부모 학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

셋째, 학부모 활동가들의 양성과 조직화, 혹은 지역 교육거버넌스 구축 등과 관련된 중장기적 전망이 부족하다. 경사단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자녀의 재학 기간으로 자신의 활동 전망을 제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사단에 참여하는 학부모들 중에서 열정과 리더십을 인정받는 분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지역의 교육·복지 관련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교과부 정책 사업(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정책모니터단 등)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경사단’의 재편, 혹은 재구성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교과부 정책과의 연계, 핵심 사업의 창조적 적용

-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학부모 참여·지원 관련 사업(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 정책모니터단, 학부모상담사 등)과 경기도교육청의 자체 사업(경기교육사랑학부모 지원단, 학부모정책연구회)등의 통합과 재조직화가 요구된다. 교과부의 학부모 참여·지원 사업이 학부모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부모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청의 학부모참여·지원관련 사업과 조직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 교과부의 정책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고려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보다 창조적인 적용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예컨대 교과부가 추진하는 학부모지원센터의 명칭을 창조적으로 변용하여, 학부모참여지원센터로 개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교육청에 의한 학부모의 지원 외에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 참여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과부가 추진하는 학부모 상담사 사업을 통해, 지역별 학부모회 조직의 상근 인력을 확보하고 학부모 리더(활동가)로서 양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 재정립

- 현재는 학부모 참여·지원사업이 대부분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학부모지원팀에서 기획되고 추진된다. 경기도교육청의 학부모지원팀에서는 각종 교과부의 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경사단의 조직과 운영을 담당하며, 교육감 자문위원회(참여협육 TFT, 교육자치협의회 등)와 소통하는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부모지원팀 구성의 측면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사무관, 주무관 외에 2명의 장학사가 배치되었다. 학교 현장과의 소통 확대와 정책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

직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에도 장학사가 1명 배치되었지만, 담당 장학사의 업무가 ‘다문화 교육 지원’으로 학부모참여·지원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표 8〉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학부모지원팀 구성 현황

교육청	조직 편제	인력 구성
서울시	미래인재교육과 산하 학부모지원팀 운영	사무관 1, 주무관 5, 학부모 상담사 2
경기도	학생학부모지원과 산하 학부모지원팀 운영	사무관 1, 장학사 2, 주무관 4, 학부모상담사 1
인천시	학교정책과 산하 학부모정책팀 운영	사무관 1, 장학사 1, 주무관 3

또한 학부모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측면에서는, 경기도가 중앙집중적인데 비해 서울시는 지역밀착형을 지향하고 있다. 서울시에 비해 지역의 범위가 넓고, 지역별 특성이 두드러진 경기도가 오히려 지역밀착형 학부모참여·지원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표 9〉 경기도학부모지원센터 구성과 운영

구분	인원	기능
본청 학부모지원센터 (교육국 학생학부모지원과 학부모지원담당)	사무관1, 장학사2, 주무관4, 학부모 상담사 1	-학부모 사업 총괄·기획 -학부모 연수/프로그램 운영 -학부모회/학운위 운영지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총괄 -정보제공/홈페이지 운영
지역거점 학부모 지원센터	북부센터(포천)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	연구사1, 학부모상담사1 연구사 1, 주무관 1, 학부모상담사 1
	남부센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그림 3> 서울학부모지원센터 구성³⁸⁾



○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지역밀착형 학부모 참여·지원사업을 전개하기 어렵고,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고유한 정책개발, 학교 구성원(교사, 학부모)의 인식 전환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성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우, 학부모 참여·지원사업 관련하여 수동적인 태도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역할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지원팀 : 경기학부모참여지원센터 운영, 지역센터 운영 지원, 정책 개발 및 평가, 연수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 지역교육지원청 : 지역학부모 조직 구성 및 운영(지역학부모지원센터)
단위 학교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지원
학부모 상담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38) 서울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parents.sen.go.kr/web/10161/site/contents/psc/c0/page3.jsp>

IV. 참여협육 실현을 위한 실행전략

1. 조례의 제·개정을 통한 참여협육의 제도 개선
2. (가칭)경기도학부모협의회 구성과 운영
3. (가칭)경기도학부모참여지원센터 구성과 운영
4. 학부모 관련 정책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Ⅳ. 참여협육 실현을 위한 실행전략

1. 조례의 제·개정을 통한 참여협육의 제도 개선

가. 학부모회 및 학교자치 조례 제정

(1) 학부모회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55호, 2011. 6. 7 시행)에서는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에 대한 선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선출된 학부모위원이 어떻게 일상적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하고,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을 조직적으로 실행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

를 통해 학교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학부모회가 구성·운영되고 학부모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학부모회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많은 학교에서는 학부모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학부모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가를 ‘권장’하고 있다.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에 학부모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체 학부모를 대표하는 학부모회가 학부모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학부모회 대표가 학교운영의 의사결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회에서는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모든 학부모들이 자신의 의견을 쉽게 예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³⁹⁾

-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조할 뿐, 그 ‘가장 좋은 방법’을 제도화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보다는 개인적 입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학교 운영 참가를 둘러싸고 학부모회 대표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간의 의견 대립이 발생하거나 주도권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 학교 참여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학부모들의 의견을 왜곡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들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수렴되고 학교운영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첫째, 일상적인 학부모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학부모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여, 일상적으로 학부

39)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학부모 학교 참여 길라잡이」, 29쪽

모들의 의견을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이하 학부모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 학부모회 조례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모든 경기도립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운영 의무화
(사립학교의 경우 권장)
- 학부모회 개최 시간 및 장소의 탄력적 운영(일과 후 혹은 주말 개최 등) 방안
- 학급-학년-학교 학부모회로 이어지는 민주적 조직 구성과 운영 원리
- 학교 운영 관련한 학부모회 의견 수렴 절차 및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제시 방안
- 학부모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참가 방안
- 학부모회에 대한 학교의 지원 방안
 - * 학부모회 관련 학교 예산 편성
 - * 학부모회 활동 관련 학교시설사용
 - * 학부모회 활동에 대한 행정 지원 (공문 작성, 문자메시지 발송 등)
 - *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전용 공간(카페) 개설 (카페 관리 권한 학부모회 위임)
 - * 학부모회 정기 총회와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및 교육과정 평가회 연계

(2) 학교 자치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 학부모회 조례 제정 뿐 아니라, 「학교 자치 조례」(이하 자치 조례)의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 자치 조례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교육청의 Top-down 식 지침의 축소 혹은 철폐 방침을 제시하고,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즉, 오랫동안 교육청(교육감)이 행사했던 권한을 과감하게 단위학교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위학교 자율화 확대의 전제로서, 단위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운영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민주적 학교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그 핵심으로서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학교 참여 확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흔히 학교 자율화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School-Based Management : SBM)는 미국에서 학교 정책 결정에 대한 학교 구성원(교사, 학부모, 지역 사회 등)의 권한이 확대되었던 1990년대의 분권화시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의 기본 철학은 (교육청에 대한) 일선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 내에서의) 참여적 의사결정의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즉, 권한의 분권화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청(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권한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다.⁴⁰⁾

그런데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는 한국에 도입되면서, ‘학교장 책임경영제’로 불리며, ‘학교장의 권력 강화와 무책임 경영’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⁴¹⁾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 이후 학교장의 전횡과 독단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진정한 단위학교 자율화 혹은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에 위임할 교육청(교육감)의 권한에 대한 규정 못지않게, 단위 학교 내부에서의 권한 위임 혹은 분권화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한 것이다.

- 학교 자치 조례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학교 자율화에 배치되는 교육청의 불필요한 지침 철폐 및 축소 원칙 제시
- 교육청(교육감)의 권한 위임 사항 제시
-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의 구성과 운영 방안 제시

40) 이수광 외, 함께여는교육연구소, 「경기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191쪽

41) 엄기형, 「단위학교 거버넌스 재구축 가능성 탐색」, 경기미래교육 집담회 자료집

-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기준 제시
- 학교 내 학교장 권한 위임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기준 제시
- 학교 운영에 관련한 구성원의 의견 제시 절차 및 토론 방안 제시

나.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

(1)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참여협육의 실현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 확대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712호, 2011.03.18. 시행)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9, 2011.3.18>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삭제<2005.1.29>

③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통신제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3.18>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

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1.3.18>

○ 학부모회 조례 제정에 따른 학부모회 설치 의무화를 전제하고, 학칙의 제·개정 과정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조건 등을 고려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다.

-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간 및 장소의 탄력적 운영(일과 후 혹은 주말 개최 등) 방안 제시
-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 설치 확대 방안 제시
- 학생 관련 사안(학칙 제·개정 등)에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가 및 의견 진술 방안 제시

(2)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방향⁴²⁾

○ 현행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09. 3. 9 개정)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현행)
[경기도조례 제3859호, 2009. 3. 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범위) ①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42)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경기도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2011. 10. 13). 본 연구진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이 부분을 작성했다. 하지만 연구가 종결되기 이전에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향후 조례 개정 과정에서 고려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② 분교장은 본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지역위원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위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갖추어 놓아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볼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실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전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8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추진하는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수당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 제3859호, 2009.3.6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조례 시행전에 제안된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안된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은 이 조례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4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조례 등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등에서 종전의 「경기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최초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및 구성) 최초로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 전체 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공포하며, 최초 학교운영위원회는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2011. 9)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을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범위) ① 경기도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 ③ 분교장은 본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④ 「초·중등 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운영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은 해당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⑥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당해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구성하되,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50
- 2. 지역위원·교원위원 : 각각 100분의 20 내지 40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학교실정에 따라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위원을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 중 체육관 등 학부모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의 범위내에서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도당·당원·당기구에 의한 협의회 임원 및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출마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제4항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8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특정 서클”을 “특정 동아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로 한다.

제13조 중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 회의”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학부모, 교직원”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당해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⑦ 기타 규정된 사항 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⑤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를 제18조의2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위원연수)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 ~ ③ (생략)

④ 학부모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회 규정(이하“운영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은 해당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당해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 학교의 경우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2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구성하되,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50
2. 지역위원·교원위원 : 각각 100분의 20 내지 40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학교실정에 따라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신 설>

<신 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②(생략)

<신 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지역위원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생략)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 ③ (생략)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부모전체 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위원을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 중 체육관 등 학부모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의 범위내에서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사도당당원당기구에 의한 협의회 임원 및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출마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 6. (생략)

<신설>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삭제>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

-----,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심의사항) ① (생 략)

1.(생 략)

2.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4. ~ 5.(생 략)

② ~ ③ (생 략)

<신 설>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심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특정 동아리 -----

<삭 제>

4. ~ 5.(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서류제출 요구)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제13조(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 -----

<신 설>

제15조의2(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신 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전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⑦ 기타 규정된 사항 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 연수)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p><u><신 설></u></p> <p>제18조(연수경비 등) (생략)</p> <p>제19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8조의2(연수경비 등) (현행 제18조와 같음)</p> <p><u><삭 제></u></p>
---	---

○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2011. 9)’에 대한 연구진의 의견

- 제2조2(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

- 개정안에는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로 학부모위원 30~50%, 지역위원과 교원위원은 각각 20~40%로 규정하고 있다.
- 학교 운영의 실질적 주체인 학부모와 교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학교운영위

원회 조례 개정안(2011. 10. 11 의결됨)에서도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로 규정하고 있는 바, 경기도 역시 비슷한 비율의 구성이 바람직하다.

- 제15조2(의견수렴 등) 관련 의견

- 개정안에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 중에서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과정 편성, 교사 임용 및 배치 등이야말로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교 교칙 제·개정, 학사 일정 심의 등과 같이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또한 ‘들을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보다는 ‘들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따른 구분(예컨대 중등학교만 적용)을 할 수 있다. 서울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안에서도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11조③)고 규정하고 있다.
-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절차에 대해서도 명기할 필요가 있다. 학생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학생 대표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학생 대표에 대한 회의 참석 요청이 없이 학생 관련한 사항을 의결했을 때(그 회의 결과가 공고되었을 때), 학생 대표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 16조(소위원회) 관련 의견

- 개정안에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제16조①)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그 역할과 의결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자칫 형식적인 소위원회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진은 학교급식소위원회 외에 학교인권소위원회와 교육과정소위원회가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인권소위원회에서는 학생 인권 및 교권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직접적으로는 학교 규칙의 제·개정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일상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교육과정소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학교교육과정 운영에의 학부모의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소위원회를 통해 학교 구성원간의 민주적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아닌)다수 학부모들이 자연스럽게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관련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안

- 지속적인 국가 교육과정 개정(2009, 2011, 2014년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소통과 합의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 따라서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학생·학부모에게 설명하고,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워크숍, 설문조사 등) 학교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절차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 기타 제도 개선 방안

(1) 학교 홈페이지 운영 개선

- 지식정보화와 네트워크 사회에서 인터넷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학교 홈페이지는 학교의 홍보 수단이자 학교공동체 내부의 의사소통과 협력의 도구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웹(web)은 사람들의 생각을 서로 이어주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웹은 협업과 집단적인 학습을 가능케 한다.”⁴³⁾는 원리는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다양한 생활패턴을 가진 학부모들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cyber space)을 통해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소통과 협력을 조직할 수 있고, 이러한 가상공간에서의 소통 경험은 오프라인 소통의 확대로 연결된다. 다시 말해, 학부모회의 일상적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과 활성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 그런데 여전히 대부분의 학교 홈페이지는 공지사항과 홍보물을 탑재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특히 학부모들의 학교 홈페이지 접속과 이용은 매우 저조한 게 현실이다. 인터넷을 통한 학부모들의 소통이 비교적 활발한 경우에도, 다음의 사례에서 보듯이 각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S 초등학교 : 학교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포털사이트(Daum)의 카페를 활용하고 있다. 카페 회원 수는 1300여명으로 전교생의 두 배가 넘는다. 학부모(엄마, 아빠) 외에 교사, 인근 주민(예비 학부모)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43) 돈 탭스코트·앤서니 윌리엄스 지음, 김현정 옮김, 『매크로 위키노믹스』 57쪽, 21세기 북스, 2011년.

150~200명이 접속한다. 카페는 학교 소식 및 공지사항,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소식, 학교 교육과정 운영 관련 안내 및 토론, 학년별 학부모 게시판 등 30여개의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페를 통해 학부모들은 다양한 학교 소식을 풍부하게 전달받을 수 있고,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의견이 토론을 통해 학교 운영에 반영되기도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봉사조직이 만들어진다.

S 초등학교의 학부모 카페는 학교 개교 이전부터 S 초교 학구 내의 주민들(S 초교 입학과 전입 예정 학부모)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러다보니 학교 홈페이지 개설 이전부터 카페가 운영되었고, 개교 후에도 자연스럽게 학부모들은 Daum 카페를 통해 소통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학부모들은 학교 홈페이지와 Daum 카페를 번갈아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 그러다보면 학부모들의 직접적인 의견이 제시되는 Daum 카페만 접속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외면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타 주체(학생, 교사 등)와의 일상적인 소통과 협력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 H 고등학교 :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학부모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어, 학교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소통되고 있다. 그런데 이 게시판은 개방형으로, H고 학부모가 아닌 사람들도 자유롭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경우, 학교 외부인들(H 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진 시민, 학부모)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정작 H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깊이 있는 소통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의 문제점이나 토론 주제를 게시판에 작성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것이고, 때로는 로그인 정보가 필요없는 익명의 조건을 활용하여 무책임하게 불만을 토로하는 게시판이 될 수도 있다

○ E 중고등학교는 학교 공식홈페이지에 학부모 카페가 개설되어 있다. 학부모 카페는 전체 공지사항과 자유게시판 외에 학년별 학부모 게시판,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학부모회 임원회의 게시판, 학부모회 각 분과의 게시판(급식위원회, 도서관위원회 등)과 학부모 동아리(축구, 등산, 독서동아리 등)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고, 교사·학생과의 소통을 위한 게시판이 있다. 예컨대 ‘학생과의 대화’ 게시판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카페의 게시판과 연계되어 있다.(학생과 학부모 모두 게시판에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교과목의 수업 및 평가계획서,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 등이 탑재되고, 기타 NEIS의 학부모 서비스가 링크되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 익명게시판이 설치되어, 학교 운영에 관련한 학부모들의 불만·의견 사항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 카페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가입되어 있고, 외부인은 접속이 불가능한 폐쇄적인 커뮤니티로 운영된다. 카페를 통한 학교(교사)와 학부모들의 일상적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 인터넷을 통한 학부모의 소통과 학교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방을 개설하거나 학부모 카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방 혹은 학부모 카페는 학년별·혹은 학급별 게시판을 설치하고, 다양한 자율적 위원회(급식위원회, 도서관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등)들의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교사)에 대한 질문과 요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시판을 설치하고, 그것을 교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학부모방, 혹은 학부모 카페는 학교 구성원(교사와 학부모)들의 폐쇄적 커뮤니티로 운영되어야 하며, 메뉴 변경과 회원 가입 승인 등 관리 권한을 학부모회에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

(2) 참여협육 관련 학교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 교육청의 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취지와 목표에 대한 상세한 안내(교육과 연수 포함)와 매뉴얼의 보급, 그리고 컨설팅과 평가를 통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모 학교 참여, 나아가 참여협육의 실현을 위해서도 동일한 노력이 요구된다.

- 학부모 학교 참여 관련한 연수와 매뉴얼의 개발과 더불어 학교 평가 지표에 참여협육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 학교 참여 관련한 평가 지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학부모회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
 - * 학부모회 참가 학부모 비율
 - * 학급-학년-전체 학부모회 등 민주적 구성과 운영
 - 학부모회 활성화
 - * 회의 빈도 및 참석률
 - * 학부모회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
 - * 학교 운영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 및 전달
 - * 학부모 학교 지원 활동
 -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 * 학부모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가
 - * 회의 빈도 및 참석률
 - * 소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 학부모 학교 참여 외에 모든 학교 구성원간의 민주적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현실에 적합한 ‘소통지수’를 개발·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학교 소

통지수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다.

-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 의사결정 수준
- 학교 구성원 간 소통의 '질'에 대한 만족도
- 학교 구성원 간 학교 비전에 대한 공유 및 협력 수준
- 소통 확대에 의한 학교 운영시스템의 변화 정도

2. (가칭)경기도학부모협의회 구성과 운영

가. (가칭)경기도학부모협의회의 위상과 필요성

(1) 경기도 학부모를 대표하는 조직의 필요성

- 단위 학교에서 학부모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학교 운영에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듯이,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부모의 의견을 교육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학부모 대표 조직이 요구된다. 단위 학교의 학부모회 활동이 다수가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대표를 구성하듯이, 경기도 학부모 조직 역시 경기도 지역 학부모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학부모회 대표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하는 경험을 통해 학부모들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학부모 리더(활동가)로 성장하듯이,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 조직을 통해 경기 교육 정책을 풍부하게 이해하고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학부모 리더들을 양성할 수 있다. 즉, 단위 학교의 학부모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교육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도 있고, 후배 학부모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위 학교의 학부모회 못지않게, 단위학교 학부모회 대표들로 구성되는 교육청 단위의 학부모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2) (가칭)경기도학부모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 현재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 조직인 경기교육사랑학부모지원단(경사단)은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지원팀의 주관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조직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편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이제 운영 초기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조직의 재구성을 논의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 경사단의 활동을 계승하고, 보다 체계적인 학부모 지원과 교육 참여를 위해서는 경기도 조례에 기초한 조직의 설치·운영이 요구된다. 이를 (가칭)경기도학부모협의회, 혹은 (가칭)경기도교육사랑학부모협의회(이하 모두 ‘학부모협의회’로 약칭함) 등으로 부를 수 있다.

학부모협의회는 조례에 의한 조직이라는 것 외에, (가칭)경기도학부모참여지원센터의 산하 핵심조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도 경사단과 차이를 지닌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지원팀의 주관이 아니라 자체 운영체계를 지향한다는 점, 학부모들의 교육 봉사 활동 중심에서 교육 참여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다르다.

〈표 10〉 ‘경사단’ 과 ‘학부모협의회’ 의 차이점

구 분	‘경사단’	‘학부모협의회’
참가 자격	- 학부모회 대표	- 학교운영위원회 참가 학부모회 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인준 학부모 대표)
운영 근거	- 교육청 정책 사업	- 경기도 조례에 의한 운영
사업 주관	- 교육청 학부모지원팀 주관 - 자체 상근 인력 없음	- 학부모참여·지원센터 주관 - 자체 상근 인력 배치
주요 활동	- 단위학교 학부모회 지원 - 교육 관련 봉사 활동	- 단위학교 학부모회 지원 - 교육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 - 교육청 정책 참여

나. (가칭)경기도학부모협의회의 구성 및 제도화

(1) ‘학부모협의회’ 구성 원칙

- ‘학부모협의회’는 기존의 ‘경사단’ 활동을 계승하는 조직이므로, 기존 ‘경사단’의 조직 구성 원칙에 의해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다. ‘경사단’은 단위학교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한 대표(각 1명)으로 지역교육청 경사단을 구성한다.⁴⁴⁾

○ 경기교육사랑 학부모 지원단 구성

- 구성 : 단위 학교별(초·중·고) 학부모대표 각1명 구성

- 학부모 지원단 지원 신청서(붙임1) 취합하여 지역교육청 보관

□ 기준 :

- 학부모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활동 할 수 있는 학부모
- 단기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부모
- 학부모회 활동에 적극적이고 참여도가 높은 학부모
- 컴퓨터 기능(문서작성)이 가능한 학부모
-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교육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
- 학부모회 활동에 적극적이고 참여도가 높은 학부모
- 의무적 강제성이 없이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

□ 역할

- ▶ 단위 학교별 학부모회 학교참여에 대한 컨설팅
- ▶ 활동분야에 대한 학부모 대표 연수 및 교육지원
- ▶ 학부모 지원 사업 정책 홍보 및 학부모의견 모니터링
- ▶ 학부모 학교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사례 공유
- ▶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로 교원의 업무경감 및 사교육비 경감방안 모색
- ▶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함양 및 주체적 역할로 동참의지 고취
- ▶ 학부모 봉사활동 모임 간 대화의 장 마련 및 학부모회 활동 성과보고회
- ▶ 학부모 상주실 운영 관리 및 상담활동
- ▶ 학력격차해소 방안마련(기초학습 부진 학생 학습지도를 우선 지원)

44)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경기교육사랑 학부모지원단 운영 계획’(2010. 7)

또한 지역교육지원청별 초·중·고 학부모대표 각 1명씩 선정(25개 교육지원청 * 3명 = 전체 75명), 도교육청 경사단을 조직·운영하고 있다.

- 이러한 경사단의 조직 구성 원칙을 계승하되, 보다 많은 학부모 활동의 경험을 갖춘 회원의 구성을 위해 참가 자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부모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등) 및 학교운영위원 활동 경력 1년(혹은 2년) 이상의 학부모로 참가 자격을 제시할 수 있다(학부모 관련 활동 경력에는 이전 학교의 경력이 포함된다. 예컨대 중학교 1학년 학부모의 경우, 초등학교 학부모회 참가 경력도 포함된다)
- 또한 소정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경사단’ 연수는 주말을 이용해 진행되어야 하며, 단지 단위학교의 학부모 참여와 지원 외에 국가 교육 정책과 지역교육의 문제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교한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2) ‘학부모협의회’ 관련 조례 제정

- 기존 ‘경사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부모협의회’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칭)‘경기도학부모협의회(혹은 ‘경기교육사랑학부모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조례 제정안에는 ‘학부모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조직 구성과 운영, 예산 편성과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학부모협의회’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학부모협의회’만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칭)‘경

기도학부모참여지원센터'(이하 '학부모센터')와 통합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 '학부모센터'의 중심적인 단위조직으로서의 '학부모협의회'의 위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학부모 참여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규정한다는 데 장점이 있다. 반면에 전자의 경우, 중앙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혼란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⁴⁵⁾ 물론 중앙정부 정책의 변화와 무관하게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센터'의 필요성과 의미가 공유된다면, 그 혼란을 감당할 수 있겠다.

3. (가칭)경기도학부모참여지원센터 구성과 운영

가. (가칭)경기도학부모참여지원센터의 위상과 필요성

(1)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 참여·지원 정책의 반영

- 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 참여·지원정책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학부모 학교 참여·지원 관련한 거의 모든 사업이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즉, 학부모 참여·지원 사업의 예산·정책·조직 등이 학부모지원센터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45) 현재 전국학부모지원센터(<http://www.parents.go.kr>)는 관계 법령이 없는 조건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 권력의 교체에 따라 운영의 지속가능성이 가변적인 것이다. 반면,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위탁 운영 중인 평생학습진흥원(<http://www.nile.or.kr>)은 평생교육법 제 19조 제1항("국가는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표 11〉 전국 및 시·도학부모지원센터 주요 기능



○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다양한 학부모 관련 사업이 진행되면서 학부모지원센터로의 집중도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보고서 III장 참조). ‘경기교육사랑학부모지원단’(경사단)과 학부모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첩되어 있고, 또한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이 교육청 학부모지원팀의 주관 아래 독자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과 연계하여, 학부모지원센터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2) 지역교육공동체를 위한 지역 교육 거버넌스 구축 지향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의 단순 집행을 뛰어넘어, 미래 경기교육 혁신의 비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지원센터를 지역교육공동체를 위한 지역 교육 거버넌스 구축과 연계하여 사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교육동체란 일차적으로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즉 평생학습체제의 필요성에 기초한다.

〈표 12〉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⁴⁶⁾

구분	기존의 교육체제	새로운 교육체제
교육의 성격	폐쇄적 교육 체제	개방적 교육 체제
교육의 개념	학교 교육	평생 교육
교육 대상	학생	모든 국민
교육 장소	학교	모든 지역 사회
교육 방법	획일적 집단 수업	개별화 수업, 원격 교육
교육 내용	전통적 교과 내용	다원적 교육 내용
교육 운영 주체	교육 생산자 중심	교육 소비자 중심
교육 통제	획일적, 위계적 통제	수평적, 자율적 통제

46) 양병찬, ‘학교-지역 연계를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창조’, 본 연구관련 제 2차 전문가 세미나 자료집

- 학부모는 곧 지역 주민이고, 학부모 대상의 교육 혹은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은 결국 지역 주민 대상의 교육 혹은 지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 대상의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학부모의 자녀 이해, 혹은 학부모 학교 참여와 관련된 주제로 국한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녀의 성공적인 학습 성취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학습 태도가 가장 중요하듯이,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 교육, 나아가 사회변화에 따른 직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실제 교육청과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각 지자체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되는 지역 주민 대상 프로그램은 상당 부분 내용이 일치한다. 예컨대 안양시평생학습센터의 평생학습 강좌를 보면, 대부분 자녀 교육 관련한 주제들이다. 그만큼 자녀 교육 지원에 대한 교육 수요가 많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동일한 대상, 동일한 내용의 강좌를 지방자치단체(평생학습센터)와 교육청(학부모 교육)에서 중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예산 낭비 요소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과 평생학습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13〉 안양시평생학습센터 2011년 강좌⁴⁷⁾

분류	강좌명
시민 참여	행복드림 아버지학교 '좋은 아버지로서의 리모델링'
	예비부부 및 신혼기 부부교육 '행복한 부부, 좋은부모되기'
	초등기 부모집단 상담 '우리 아이를 위한 내 안의 얼음 녹이기'
	부부집단상담 '따로 또 같이'
	청소년기 부모교육 '금성 자녀와 통하는 화성 부모'
	중년여성교육 '아름다운 삶의 전환'
문화 예술	댄스스포츠(중급)
	방학특강전통예절교육
	방학특강 탁구(청소년)
	pop 예쁜글씨

47) 안양시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http://learning.anyang.go.kr>) 참조

-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오랜 경구는 ‘지역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내 모든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과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때 프랑스가 “마을이 아이를 가르친다”는 교육개혁 슬로건을 내세운 것이나, 미국의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21C Community Learning Center)’ 사업, 일본의 학사융합(學社融合)·학사협동(學社協同) 등은 모두 이러한 지역교육공동체의 지향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과 학교의 연계는 세계 각국에서 교육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지역사회가 학교와 함께 지역의 교육적 책임을 적절하게 분담하고 아동들의 교육 활동에 관여하는 어른들의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과 학교에서 일상적·계속적·구체적으로 전개되는 다양한 영역을 종합하고 상호의 연계와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교육공동체를 창조하게 된다. 이제 아동과 시민의 생활과 학습은 가정-지역-학교라고 하는 삶의 전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⁴⁸⁾

KERIS는 학습 미디어, 환경, 방법 등 분야별로 그간 축적된 미래교육 R&D 성과를 기반으로 바람직한 미래학교의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는 ‘Future School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중략...> 향후 10~20년 내 미래학교의 모습은 다각도의 체제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며 필요한 학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학습센터(Core Learning Center)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미래학교는 사회와의 소통, 협력에 기반하여 개인의 생애를 디자인하고 발전시켜가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의 학습을 지원하는 중심적인 학습공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 더 이상 고립된 학습 공간이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경험들을 체계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으로 연계해주는 구심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사회와 학교와의 벽을 허물어주는 핵심적인 도구와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중략...>

첫째, 미래학교는 무선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통합 운용하는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학습과 학교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둘째, 미래학교는 개방화된 학교체제에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소통과 보안의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미래학교는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학습 문화에서 학생 주도적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창조해내는 체험 기반의 학교가 될 예정이다. 넷

48) 이영아 외,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한국교육개발원·평생교육진흥원, 2010년, 25쪽

째, 미래학교는 학교 안팎의 전문 자원을 연계한 글로벌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특화된 전문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자연스러운 교육 과정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섯째, 미래학교는 LED, 태양광, 절전형 공조, 친환경 소재 등을 도입하여 자연채광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학습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⁴⁹⁾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사회적 경쟁의 격화에 따른 소득 격차, 그에 따른 위기 가정과 위기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돌봄(Caring)의 확대를 위해서도 기존 학교의 기능의 확대[Extended School]⁵⁰⁾와 지역교육공동체가 요구된다. 위기 학생(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위기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은 결국 해당 학생의 가정과 학부모 지원과 연계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된다. 위기 가정과 학부모 지원은 단 위 학교의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육청(학교), 지자체, 교육 및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 교육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지역교육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연구 보고서 III 장 참조)

○ 이처럼, 경기도학부모지원센터를 평생학습시스템과 연계하고, 나아가 지역교육공동체를 위한 지역교육 거버넌스 구축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의 혁신 방향을 담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9) 행정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추진단 교육시설기획과 보도자료, '20년 후의 스마트한 미래학교를 미리 체험한다.'(2011년 6월 29일) 강조는 인용자

50) 이러한 학교 기능의 확대는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정책이다. 영국의 경우, 2005년 9월 'Extended School : Access to opportunities and service for all'이란 백서를 통해 학교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아침식사부터 저녁 방과 후까지 다양한 돌봄과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아동이 빈곤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까지 제시하고 있다.(최봉섭, 'Extended School, 학교 역할의 개편', "교육개발" 154호) 'Extended School'에서는 기존의 학교 기능 외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 Quality Childcare (양질의 보육) : 오전 8시~오후 6시
- Parenting Support (부모 역할 지원)
- Community Access - Adult Learning / Family Learning (지역사회와 연계 - 성인평생학습 / 가족학습)
- Swift and easy referral - Health and social care (빠르고 신속한 연계 지원, 초기 진단 및 전문적 치료 지원)
- Varied Menu of activities including Study Support (학습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나. (가칭)경기도학부모참여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안

(1) 경기도학부모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형태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김장중 센터장은 경기도학부모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형태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⁵¹⁾.

- 직속기관형 : 도교육청 산하기관으로 교육청이 직접 운영
예)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 공공법인형 : 도교육청이 출연하여 법인(센터)을 설립하고 운영
- 외부위탁형 : 위탁운영기관을 공모하여 센터 업무를 위임
* 교육청이 센터 설립 또는 지정된 기관 자체 설립

세 가지 방안에 의한 기관 형태별 특성과 조직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14〉 학부모지원센터 설립 형태별 특성

구분	직속기관형	공공법인형	외부위탁형
위상과 특성	-교육청 산하기관 -교육청과 일체적 관계	-교육청 소속 공익법인 -협력 보완적 관계 유지	-독립된 별도 기관 -자율적 운영 보장
조직구조와 운영 체계	-공무원으로 구성 * 필요시 개방직 운영 -교육청 직접 관리감독	-법인소속 별도 인력 -상당한 감독권 행사	-자율적 인력 구성 -성과평가와 관리방식
추진 절차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 법인 설립	-위탁운영 계약 체결

51) 김장중, 본 연구 관련 제 2차 전문가 세미나 자료집

각 설립 형태는 기관별 장단점을 지닌다.

<표 15> 학부모지원센터 설립 형태별 장단점 비교

구분	공공성	능률성	전문성	경제성	자율성	변화 대응성	안정성	책무성	친화성
직속기관형	○	×	×	×	×	×	○	○	×
공공법인형	△	○	○	△	△	△	○	△	△
외부위탁형	×	○	○	○	○	○	×	×	○

- 직속기관형 : 공공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책무성 확보는 가장 좋으나, 인력(정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경직성과 비능률성의 가능성이 높으며, 학부모친화적 서비스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
- 외부위탁형 : 능률적 운영과 전문성 발휘가 가능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학부모친화적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이나, 안정성이 떨어지고 책무성 확보가 어려우며 재정절감과 이윤추구로 인한 공공성 훼손이 우려됨.
- 공공법인형 : 능률성과 전문성이 발휘되는 가운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며, 경직성과 책무성 및 공공성, 친화성 문제 등 다른 형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 경기도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청이 출연하는 공공법인 형태로 설립·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러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공공법인 설립을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직속기관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의 독립성(혹은 자체 운영시스템)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2) (가칭)경기도학부모참여지원센터의 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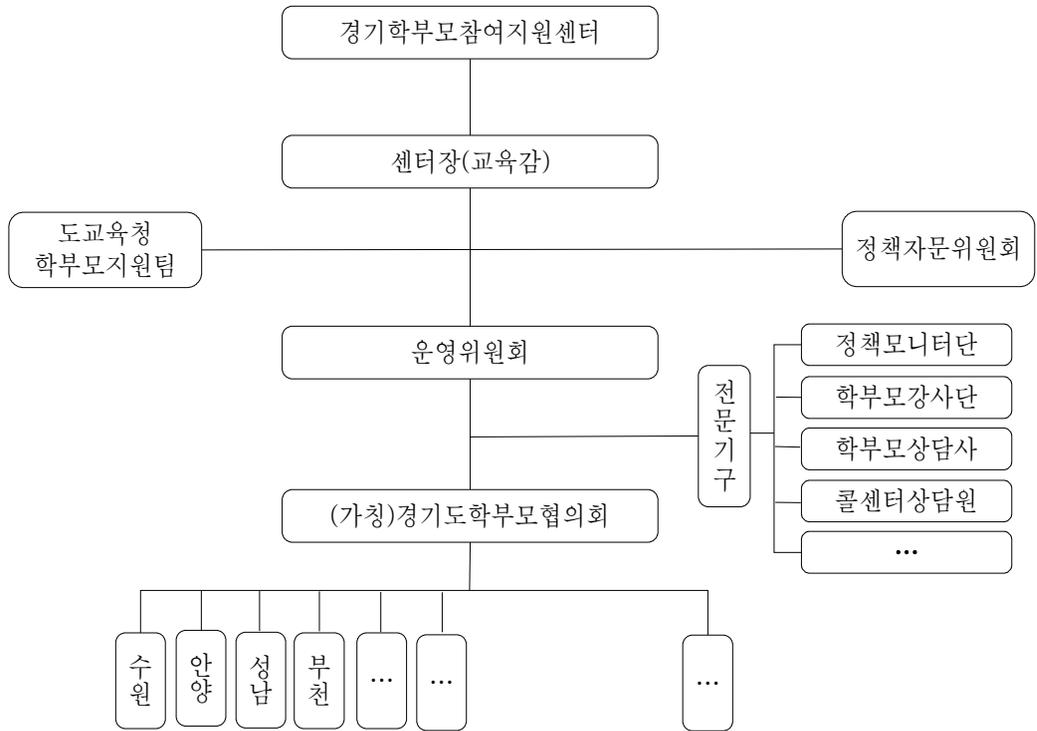
- 기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지원센터’ 사업을 ‘학부모참여지원센터’로 개칭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부모 학교 참여와 교육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 학부모지원센터 사업을 창조적으로 적용한 학부모 학교 참여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표 16> 학부모지원센터와 학부모참여지원센터의 구분

구분	학부모지원센터(현행)	학부모참여지원센터(개편안)
설립 근거	- 교과부 사업	- 교과부 사업의 창조적 적용
운영 주체	- 경기도도교육청 학부모지원팀 주관	- 자체 조직 운영 시스템 구축(상근 인력 확보) - 장기적으로 공익법인 형태 지향
조직 구성	- 본청 및 남·북부 센터	- 도 센터 및 지역별 센터
사업 목표	- 학부모 학교 참여·지원 사업 - 학부모 교육 - 교육 정책 모니터링 등	- 기존 학부모지원센터 사업 - 학부모 조직 및 학부모 리더(활동가) 양성 및 조직 - 지역교육공동체 및 지역교육거버넌스 구축 참여

- (가칭)경기도학부모참여지원센터의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상할 수 있다.

<그림 4> (가칭)경기도학부모참여지원센터 조직 구성(안)



- 센터장 : 교육감, 혹은 교육감 추천과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출
- 운영위원회 : 최고 의결기구로서, 센터 전반의 사업에 대해 의결함
 - * 경기도학부모협의회(혹은 경기교육사랑학부모협의회) 대표 (60% 이상)
 - * 상담사, 모니터단, 강사단 등 전문기구의 대표 (30% 이내)
 - * 기타 운영위원회가 선출한 약간 명의 선출직 운영위원(10% 이내)
- 학생학부모지원과 : 정책 개발 및 행정 지원 담당
- 정책자문위원회 : 교육감이 설치한 학부모 관련 자문위원회 대표로 구성
정책 제안 기능(운영위원회 출석 및 발언권)
- 전문기구

* 교과부 정책 관련 기구 (정책모니터단, 학부모 상담사 등)

* 경기도 교육청의 자체 설립 기구 가능

* 비학부모 참여 가능(각 분야 전문가, 학부모운동가 등)

* 전문기구의 설치와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함

※ 학부모협의회, 정책자문위, 전문기구 참가자는 중복 가능함.

- 상근 역량 확보 : 2~3인의 학부모 활동 전문가 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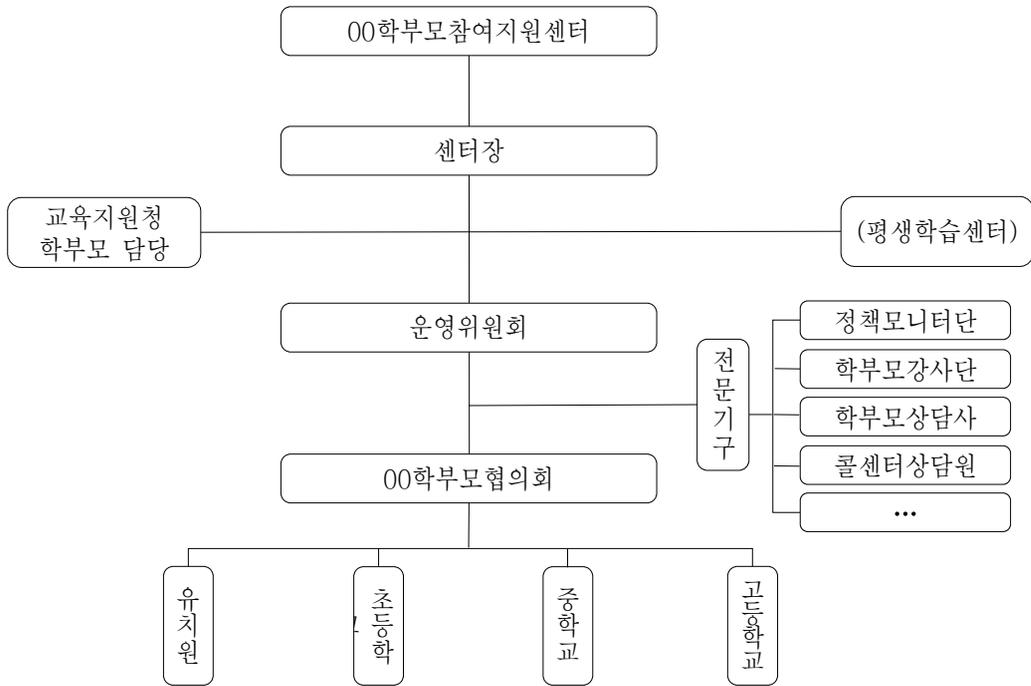
* 1안 : 교과부의 ‘학부모 상담사’ 지원 활용

* 2안 : 별도의 상근 역량 채용

○ 지역밀착형 학부모 참여·지원과 지역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교육지원청별로 학부모참여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교육지원청의 학부모참여지원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상할 수 있다⁵²⁾.

52) 이러한 조직 구상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이미 현재 지역교육지원청에는 다양한 학생·학부모 지원팀들이 운영 중이고 각 센터에는 비정규직(계약직) 직원이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양산과 유사 업무의 중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즉, 위센터, 학생생활인권센터, 방과후지원센터 등 기존 센터들을 통합해 ‘학생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유사 업무의 연계성 강화, 공간과 예산 사용의 효율성 증대 등의 장점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학부모지원센터의 독립성과 독자적 발전 가능성(학부모 지원 뿐 아니라 지역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지향하고 중장기적으로 공익법인 설립을 모색하는)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조건에 따라 학부모참여지원센터와 학생학부모지원센터 중 선택하되, 장기적으로는 학부모참여지원센터의 단일한 형태로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림 5> 지역교육지원청 경기도학부모참여지원센터 조직 구성(안)



- 센터장 : 교육장, 혹은 교육장 추천과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출
- 25개 시군 교육청별 구성, 기존의 민원실 활용(혹은 위센터·방과후센터 등과 공동 사용, 지역의 평생학습센터 공간 활용)
- 운영위원회 및 전문기구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학부모참여지원센터 원용
 - ※ 전문기구 참가자는 현실적으로 중복 가능성이 높다.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부모 강사단을 풍부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상근 인력 배치(사무국장 역할) : 학부모 상담사, 혹은 별도의 인력 채용
-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인 지자체의 경우, 학부모참여지원센터와 지자체의 평생학습센터와의 통합 운영 모색(지역 내 평생학습센터를 학부모참여지원센터로 활용할 수도 있음)

4. 학부모 관련 정책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가. 정책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필요성

(1)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의 창조적 재구성

- ‘경기교육이 한국 교육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경기도교육청은 자신의 위상에 걸맞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생산·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 2대 민선교육감 선거에서 ‘참여협육’을 6대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 체제에서는 기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 참여·지원 정책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여 실제적인 참여협육의 교육 모델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교과부 정책의 창조적·혁신적 재구성은 다음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학교(교사)와 학부모, 지역 사회의 연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 교육 참여 확대를 통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 미래교육 트렌드에 적합한 지역교육공동체를 위한 인적·재정적·조직적 구상

(2) 현장의 조건과 요구에 기반한 정책 개발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참여협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Top-down 방식의 정책의 나열보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실제 단위 학교에서 참여협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장공모제, 학교 평가, 혁신학교 지정 등의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즉, 교장공모

제의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 학교 공동체의 학교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⁵³⁾, 학교 평가에 학교(교사)와 학부모와의 소통 및 학교 거버넌스 구축을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혁신학교의 지정과 평가에서도 참여협육의 실현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해야 한다.

- 교과부의 지속적인 교사-학부모 소통 확대(담임교사 면담 등) 정책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정책 실현도는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을 통한 교육적 성장의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연간 1회, 혹은 학기당 1회씩의 ‘의무적인’ 면담이 학생의 교육적 성장에 필요한 정보 공유와 필요한 협력체제의 구축으로 연결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각종 연수와 모임에서 교사들(특히 젊은 교사들)이 호소하는 학교생활의 고통은 ‘학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이다. 또한 학부모들 역시 교사와의 소통에 대해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간의 소통에 필요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요구된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 정책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조건

(1)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지원팀의 역할 변화

53)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정치적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시민(주권자)이 된다.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학습과 성장의 기회가 된다. 복수의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학교경영계획서를 비교·분석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생생한 학습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교장 선출 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학교교육의 주체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장공모제는 학부모와 지역 사회를 학교운영의 주체로 재조직하는 계기가 된다.”(이광호 외, 『학교를 바꾸다』, 우리교육, 2010년, 28~29쪽) 교장공모제는 단순히 교원인사의 획일성 극복이라는 측면 외에 학부모 학교운영 참여, 학교 거버넌스 구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한 교장공모제의 시행이 요구된다.

- 현재와 같이 학부모 참여·지원 사업 관련 모든 사업의 기획·진행을 경기도교육청 학부모학부모지원팀에서 도맡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가칭)경기도학부모협의회 (혹은 경기교육사랑학부모협의회)와 (가칭)경기도학부모참여지원센터에서 자체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각종 학부모 연수, 교육청 정책 참여, 학부모 학교 참여, 학부모 봉사·지원 활동 등을 조직하도록 해야 한다.
- 기존의 학부모지원팀은 정책개발, 매뉴얼 제작,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에 집중하여, 학부모협의회와 학부모참여지원센터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신의 위상을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학부모 참여·지원 사업 관련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행정적 지원은 여전히 학부모지원팀의 역할로 남는다.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참여지원센터가 공익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학부모지원팀은 교육청과 학부모지원센터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축소하게 될 것이다.

(2) 전문성을 갖춘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도교육청의 학부모지원팀은 교육청의 인사구조(순환 시스템)에서 학부모 학교 참여·지원 관련한 전문성 축적의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학부모 학교 참여·지원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나아가 지역교육공동체 혹은 지역교육 거버넌스 구축 관련한 전문성과 실천적 역량을 갖춘 인사들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교육감 자문기구로, 전문적인 정책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다. 정책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방향

(1) 정책 연구의 방향

- 경기도교육청의 미래 교육 혁신과 관련하여 다음의 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참여협육에 기초한 미래 학교의 모형 및 실행 방안
(미래형 학교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참여협육의 실현을 위한 타 정책과의 연계 방안
(교장공모제, 학교평가 등과 연계한 참여협육 실현 방안)
 - 학부모협의회, 학부모지원센터 발전 방안
 - 지역교육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 교육청 학부모지원팀에서는 매년 2~3개의 집중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연구 결과는 즉시 교육청의 정책과 예산 편성에 반영되어야 한다.

(2)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방향

- 학부모와의 소통과 협력 확대, 교육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종 교사 연수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교사 대상 연수에 포함될 주제와 내용을 대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

구 분	연수 주제와 내용	형 식
전 교사 대상	- 미래 사회 변화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필요성 - 민주적 거버넌스와 리더십	원격직무연수, 혹은 자율연수
신규 및 1정 연수	- 학부모 학교 참여의 의미 - 학부모와의 소통과 협력 확대 방안	교육청 자격 연수(직무연수)
교감자격연수	-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 학부모 학교 참여 확대 방안	
교장자격연수	- 지역교육공동체의 의미와 구축 방안 - 지역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 교사 뿐 아니라 학부모 대상 연수 프로그램도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 대상 연수 프로그램은 기초과정(모든 학부모 대상), 리더과정(학부모회 임원, 학교운영위원), 전문가과정(학부모 상담사, 정책모니터단, 강사요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초과정의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과정은 단위학교별로 개최하고,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무적 참가를 권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표 18〉 학부모 대상 기초과정 연수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

구 분	연수 주제와 내용	연수 주관 / 강사 지원
자녀 이해	- 자녀 발달 특성에 관한 이해 - 자녀와의 대화법 - 효과적인 부모 역할(학습지원활동 포함) - 자녀의 창의성, 인성, 감성 훈련	학부모참여지원센터
국가 및 교육청 정책 이해	- 국가 교육정책의 이해 - 교육청 정책의 이해 - 학부모 학교 참여 방법	
학교 교육과정 이해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이해 - 학교 교육과정 참여 방법(공개수업 참관, 학부모교사 참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등)	단위학교 학부모회
교사와의 소통과 협력	- 교사와의 소통 방법 - 교사 면담의 원칙과 학부모의 자세	학부모참여지원센터

○ 기초과정 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더과정 연수는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교육지원청별 연수는 학부모참여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지역의 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더과정의 대략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학부모 대상 리더과정 연수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

구 분	연수 주제와 내용	연수 주관
부모-자녀 관계 향상 및 자녀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이해를 위한 성격 검사와 활용 -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법 - 문제상황(인터넷 중독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법 - 학부모의 자기 계발 	학부모참여지원센터 / 평생학습센터
학부모 학교 참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학교 참여의 의미와 필요성 - 학부모회 활동 방향 -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학부모 참여 -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가 방안 - 학교와 학부모회가 함께 만드는 돌봄 시스템 	
자녀 학습 및 진로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교과별 학습지도 전략 - 논술 및 독서 지도 전략 -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 사교육 절감하기 - 상급학교 진학 지도(입학사정관제 등) - 미래사회의 이해와 직업 탐색 - 학습부진 및 장애의 이해 	
학부모 시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사회의 이해와 참여 - 지역 사회 교육과 복지 문제 이해 - 지역학습자원의 이해와 활용 - 다문화 사회의 이해 - 자원봉사 활동의 이해와 참여 - 평생학습의 이해와 참여 	

- 학부모참여지원센터, 학부모정책모니터단, 학부모강사단, 학부모상담사, 학부모 콜센터 등에서 활동할 학부모를 양성하는 전문가과정 연수 프로그램은 활동 범주에 적합하게 기획·운영되어야 한다. 전문가과정에서는 이론 학습 외에 각 영역에 필요한 실무 능력(상담 기법, 프리젠테이션 기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가과정은 경기도학부모참여지원센터에서 진행해야 한다. 이상의 기초-리더-전문가 과정의 학부모 연수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0> 학부모 대상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방안

구 분	연수 중점	연수 장소	연구 주관	비고
기초 과정	- 학부모로서 지녀야할 기본적인 지식과 태도 -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	단위 학교	단위 학교 (지역학부모센터 지원)	모든 학부모 이수 권장
리더 과정	- 학부모 학교 참여에 대한 이해 및 실천 방안 -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참가 방안	지역교육청, 혹은 평생학습센터	지역학부모센터	학부모회 임원, 학교 운영위원 참가 권장
전문가 과정	- 학부모 활동가로서의 전문성 신장 - 풍부한 이론 외 실무능력 신장	도교육청, 혹은 산하 기관	경기도 학부모센터	

- 학부모별 연수 참가 경험을 기록하는 (가칭)‘학부모 평생학습계좌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각 학부모가 이수한 연수 프로그램을 기록, 관리하여 학부모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과정 이수자에 한해 리더과정 참가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리더과정 참가 경력(연수 이수증 등)을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과정에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혹은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에게 리더과정 참가를 권장해야 한다.

학부모 평생학습계좌제는 학부모 연수의 중복 이수율의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도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시절에 기초과정을 이수했다면, 자녀의 중학교 입학 시에는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한 연수만 참가해도 된다.

이러한 학부모 평생학습계좌제는 지자체의 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평생학습센터의 다양한 인문학 강좌, 직업 교육 등과 연계하고, 평생학습지도사 등의 조언을 받아 학부모(지역 주민) 스스로 자신의 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 일반적인 학부모 대상 단계별(기초-리더-전문가과정) 연수 프로그램 외에 이른바 위기 가정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위기 가정 학부모란 저소득·다문화·조손가정 등 정상적인 학생의 돌봄과 성장지원이 어려운 가정의 학부모를 의미한다. 이 경우, 대부분 자녀 교육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학부모 교육이나 학부모회 활동에 참여가 어렵고, (자녀의 학습부진과 일탈행위 등으로 인한)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미안함과 원망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기의 원인이 경제적·심리적 원인과 밀접히 연관된 만큼, 직업교육과 심리치유 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구안해야 한다.
- 지역교육공동체, 혹은 지역 교육 거버넌스에서는 위기 가정 학부모를 위한 다양하고 정교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교육에 학부모 역할 훈련 포함
 -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프로그램 운영(자녀 교육 지도 방안, 학부모 역할 훈련 등)
 - 지역 차원의 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영

○ 단위학교에서도 위기 가정 학부모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학부모회의 인식 전환이다. 학부모회가 주요 활동 중 한 영역으로, 위기 학생과 위기 가정 학부모 지원을 설정해야 한다.

인천에 위치한 한 중학교의 학부모 저녁모임(Parent's Night) 운영 사례는 위기 가정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참고 자료> B 중학교 학부모 저녁 모임 운영 사례⁵⁴⁾

- 학교 현황(일반적 특징)
 - 맞벌이, 한부모 가정이 많은 공단 근처의 학교
 - 중식지원대상 학생 1/3 이상

- 학부모 저녁 모임 계획 수립
 - 교사 7명, 학부모 8명(주로 학부모회 임원)으로 기획팀 구성
 - “평소에 학교에 자주 못 나오셨던,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하도록 한다”, “평소 학교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한다”는 행사 목적을 수립함

- 행사 준비 과정
 - 정기적인 기획팀 회의 (행사 준비 전반의 논의 및 실행)
 - 교사 연수 (학부모 소통의 의미와 학부모의 밤 행사의 취지 설명)
 - 학부모 연락 및 참가 권유 (학부모회 임원들이 직접 전화를 통해 권유함)

- 행사 진행
 - 6:30~7:00 : 학부모 맞이 (교문에서 현관까지 학교장 등 배웅)
 - 7:00~8:00 : 교실에서 급식 체험, 담임 교사와의 대화
 - 8:00~9:30 : 공동체 놀이(마음 열기)
/ 과일차 만들기 (과일차는 각 반 교실에 편지와 함께 배치)
 - 촛불의식과 캠프파이어 : 학교장 인사말, 학생 공연 등

- 행사의 성과
 - 학부모 200여명 참석, 대부분 학교를 처음 방문하는 학부모였음
 - “학교의 환대와 교사와의 허물없는 대화, 학부모간의 소통을 통해 학교에 대한 새로운 느낌을 받았고, 과일차 만들기를 통해 자신이 학교와 자녀를 위해 무언가를 기여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참가 학부모)
 -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특히 그동안 소원했던 학부모님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 우리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함을 느꼈다. 교사들도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걸 새롭게 배우게 되었다”(교사)

54) 함께여는교육연구소, 「학부모 저녁 모임 길라잡이」, 2008년, 98~114쪽 참조

(3) 참여협육 관련한 다양한 매뉴얼 제작·보급

○ 교사-학부모 소통을 위한 매뉴얼

- 학부모 학교 참여의 1차적인 모습은 학교(교사)와의 소통이다. 특히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교과교사나 학급 담임교사와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교사)와 가정(학부모)의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녀의 성장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축적되어야(즉, 교사와의 성공적인 ‘교육적 소통’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학부모는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에 참여하게 된다.
-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중년의 학부모와 젊은 미혼 교사와의 사회적 단절감은 양자의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우리 사회 전반의 세대 간 인식차가 학교 현장에도 적용된다. 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을 다닌 젊은 교사들은 그 이전 세대와 문화·정서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닌다. 특히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후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높은 경쟁을 뚫고 교직에 입문한 교사들의 경우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도 다른 특성(도시 중산층 출신 교사의 증가, 개인주의적 경향의 확대 등)을 지닌다. 이러한 조건은 교사-학부모의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학교와 교사에 대한 사회적 권위의 붕괴도 교사-학부모의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중산층 학부모들은 이미 학교의 교사보다는 사교육(학원, 과외 등)의 강사들과 자녀의 학습과 관련한 상담을 많이 하는 게 현실이다.

학교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자녀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거나, 상호협력적 관계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교사들은 교사양성과정과 각종 연수에서 학부모와의 소통법에 대한 교육을 거의 받지 않는다. 설사 학부모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해도, 그것의 일반적 의미와 몇 가지 사례를 듣는 수준에 그친다. 학부모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사들의 생활패턴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교사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다.
-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와의 불평등한 관계를 하소연하기도 한다.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평가권을 갖고 있는 교사에게 학부모가 대등한 위치에서 소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학부모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 외에 구체적인 소통의 절차와 형식을 안내하는 매뉴얼의 제작·보급이 요구된다. 아직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례나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매뉴얼의 제작을 위해서는 해외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교사-학부모 소통 관련한 매뉴얼 해외 사례

□ 미국의 PTC(Parent-Teacher Conference) 안내 자료 중 <학부모용 가이드>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이자 제일 중요한 교사이다. 부모와 자녀의 학교가 서로 공유하는 것은 양쪽 모두 학생(자녀)이 잘 배우고 행동하기를 바란다. 부모와 교사가 대화할 때 둘은 학생의 재능과 결핍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나눠야한다. 교사나 부모는 학생을 어떤 식으로 도울지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될 수도 있다.

PTC는 자녀의 교사에게 말문을 여는 적당한 방식이다. 이 팀에서는 모든 주체, 그중에서

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도록 PTC의 최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 부모가 기대하는 것

- **양방향 대화.** 좋은 대화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PTC도 서로 간에 말하고 듣기를 잘할 때 효과가 극대화한다. 모임에서 당신은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알게 된다. 동시에 교사는 학생이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는 자리이다. 교사에게 자녀의 재주, 흥미, 꿈 따위를 말할 때 교사는 그 학생을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 **학습을 강조하기.** 바람직한 PTC는 학생이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춘다. 모임에서는 더 잘할 방법에 대하여도 의논한다. 논의를 위해서 학생의 숙제, 평가, 통신문등을 회의 전에 들여다보라.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해 가지고 가도록 한다!
- **기회와 도전.** 부모와 마찬가지로 교사도 학생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부모는 자녀의 성장 과정과 앞으로 개선될 범위에 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듣고 싶어 할 것이다. 미리 자녀의 강점과 과제를 생각하고 모임에 임하라. 부모와 교사가 자녀의 도전 과제를 도와줄 방법에 관한 질문을 준비한다.

· 모임 전 체크리스트

- 만날 시간을 잡는다. 정해진 시간에 갈 수 없으면 다른 시간을 잡아달라고 교사에게 부탁하라.
- 자녀의 학습, 성적, 생활기록을 검토한다.
- 자녀와 학교생활을 이야기하라.
- 그밖에 가족이나 방과 후 선생님, 멘토 등과 자녀의 강점과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얘기를 나눠라.
- 모임에서 말할 질문지를 만들어라.
-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고 싶은 내용(혹은 부분)을 생각하여 교사와 의논하라.

· 교사에게 말해야 하는 것

- **과정.**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자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우리 아이가 평균정도는 합니까? 학급의 나머지 학생들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우리 아이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향상될 수 있을까요?
- **숙제와 평가.** 아이가 한 과제물 사례를 보여 달라고 한다. 교사가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줬는지 묻는다.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견.** 자녀에 대한 부모의 생각과 감정 등을 공유하도록 한다. 자녀가 무엇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지 교사에게 밝혀가. 자녀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지 설명하라.

- 가정에서 학습 지원하기. 집에서 자녀의 학습을 어떻게 도울까를 물어보라.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있는지를 교사에게 물어보라.
 - 학교에서의 학습 지원. 학교에서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에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 학생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복돋우고 도와줄 것인지 물어본다.(이하 생략)
- ☞ 물론 교사용 매뉴얼도 존재한다.

□ 스웨덴의 개인발달계획(Individual Developpe Plan)을 통한 교사-학부모의 소통과 협력

스웨덴 학교에서는 매 학년도 초반에, ‘개인 발달 계획(Individual Development Plan)’을 세우기 위한 교사, 학생, 학부모 3자 대화를 하는 제도가 있다. 정례적인 교사-학생-학부모의 대화를 통해 ‘개인 발달 계획’이라는 개인별 학습(학교생활) 목표를 세우는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립한 것이다. 대화를 통해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3자가 함께 서명하여 꼭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매년 8월 20일 경에 새 학기가 시작되고 2개월 정도가 지난 10월 말이나 11월 초 쯤에 담임교사들은 면담 시간을 정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낸다. 면담 개최를 알리면서 담임은 학생과 학부모가 면담에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이 담긴 유인물을 보내어 의미 있는 면담이 되도록 한다. 이 3자 대화는 의례적인 면담이 아니라,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 주도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교생활의 동기와 목적의식을 갖고 스스로 노력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적인 과정이다.

즉, 3자 대화의 목적은 학생에게는 자신의 학습이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부족함이나 약점이 무엇인지 깨달아 한 학년 동안 특별히 노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부족함이나 발달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부모로서 자녀의 노력을 어떻게 돕고 지원할 것인지를 약속하도록 하는 것이고, 교사에게는 부모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학습이나 생활면에서 학생이 잘 하고 있는 것 또는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담임으로서 개별적인 지도나 조언을 어떻게 할지를 약속하게 하는 것이다.

개인 발달 계획이라고 해서 그 어떤 거창하고도 세부적인 학습 프로젝트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교생활이나 학습 과정에서 잘 하고 있는 점은 함께 격려하고, 특별히 부족한 점이나 고쳐야 할 문제점 등을 일깨워, 좀 더 목적의식을 갖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화의 장이자, 단기적인 목표 또는 도전 과제를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새 학년 초반에 세운 ‘개인 발달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도중에도 한 번 정도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면담이 있을 수 있고, 봄 학기 후반 학년말 경에는 ‘개인 발달 계획’에서 설정했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평가를 하도록 하여

기록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도 기록한다.

이 3자 대화를 통한 ‘개인 발달 계획’ 수립 제도는 교사와 학부모가 지원하고 지지하는 가운데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및 발달이 촉진되도록 하는 교육적인 과정이자,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특히, 학생이 공부하는 방식이나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학습 면에서 특별히 부족한 과목이나 영역에 대한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된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의 학생인 경우, 자기 문제를 스스로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부모가 반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다.

□ 일본의 교사 매뉴얼 사례

- ‘信頼される 教師の 保護者會 マニュアル’(신뢰받는 교사의 보호자회 매뉴얼, 2010년)

위 제목과 유사한 단행본들이 일본에는 다양하게 출간되어 있다. 매뉴얼은 학교급별, 학년별, 상황별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위 책 중 초등학교 5학년 담임용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다.

- 학부모와의 최초의 만남 (꼭 전해야 하는 다섯 가지)
 - 교육과정 안내(읽기, 쓰기, 셈하기 중심)
 - 5학년에서 처음 배우는 내용 (기능 교과 설명)
 - 5학년의 빅이벤트 - 숙박학습(캠프)에 대한 안내
 - 고학년으로서의 역할 안내
 - 학부모가 알아야 할 가정학습 규칙 안내
- 행사 장면을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 VTR이나 사진을 활용한 행사 상황 전달
 - 각종 행사의 비하인드 스토리(학부모들이 보지 못한)의 전달
 - 학습발표회의 생생한 묘사
 - 사회과 견학 학습은 구체적인 것은 영상으로 전달
- 학부모와의 자녀 양육 고민 상담(사례 제시 및 대처법)
 - 교사는 학생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칭찬한다.
 - 집에서의 학생 생활에 대한 대화 기법
 - ‘공부하는 두뇌’로 키우는 가족의 협력을 끌어내는 방법
 -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 사춘기 반항, 컴퓨터 및 게임 중독 관련한 상담 기법

○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

- 학부모회 활동 관련한 매뉴얼과 우수사례집이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교육청에서 다수 제작·보급되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그러한 자료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쇄 형태의 자료집 외에 동영상, PPT, 플래시 형태로 제작하여, 각 학교의 홈페이지 혹은 학부모 커뮤니티에 링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학부모 학교 참여·지원 정책을 반영한 자료집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 경기도교육청에서 새롭게 제작·보급하는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에는 기존 자료의 내용 외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새롭게 규정
 - 단위학교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관계, (가칭)경기도학부모협의회와 경기도학부모참여지원센터의 위상과 사업에 대한 안내
 - 개별적 학교 참가에서 학부모 리더로서의 역할 변화, 지역 교육 거버넌스 참가의 의미에 대한 안내

V. 요약과 결론

1. 미래 경기교육 혁신을 위한 참여협육
2. 참여협육 실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정책방향
2. 참여협육 실현을 위한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

V. 요약과 결론

1. 미래 경기교육 혁신을 위한 참여협육

가. 참여협육의 의미와 필요성

(1) 참여협육의 의미

- ‘참여협육(參與協育)’은 2010년 제 2대 민선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6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등장한 신조어(新造語)이다. 참여협육은 기존의 학부모 교육 참여와 학교 거버넌스(governance, 협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학교(교사)와 가정(학부모), 지역 사회의 공통의 역할과 책임을 천명하는 말이기도 하다.
- 이는 지식정보화와 네트워크사회, 소통과 협력, 집단지성의 시대로 요약되는 사회변화에 따른 학교운영구조의 혁신을 지향하는 것으로, 학부모 교육 참여를 통해 학교의 투명성과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국의 교육혁신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자연법상의 권리로 제시되었다. 즉,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는 너무 당연한 권리가

자 의무라는 것이다. 또한 Epstein(2009)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참가가 학생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학교 전체의 교육력 제고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 이처럼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매우 필요한 것이다.

○ 하지만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상근(2010)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교사와의 소통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예컨대 학부모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전체의 27.1%에 불과하고, 교사와 한 번도 직접 면담을 한 경험이 없는 학부모가 절반이 넘는다.

○ Darkenwald & Sharan(1986)은 학부모 학교 참여의 장애 원인으로 상황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정보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을 꼽았다. 이 4가지 요인은 한국의 학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요인 외에도 ‘전문성’의 논리 또한 학부모 학교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교육은 전문가(학교와 교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는 프로슈머, 프로슈어, 위키피디아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학교(교사)의 ‘전문성’의 논리에 대항하여, 일부 학부모들은 ‘수요자 중심주의’를 내세운다. 즉 학교와 교사는 공급자로서, 수요자(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와 비전문가,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학교(교사)와 가정(학부모),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이 미래 학교 혁신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 현행법상 학교 거버넌스의 실체는 학교운영위원회이다. 또한 학부모들은 학부모

회를 통해 개인적 차원이 아닌 집단적·민주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회에 다수의 학부모가 참여해야 하고,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도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나. 참여협육의 필요성

(1) 학부모 학교 참여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 Walker & Hoover-Dempsey(2008)는 학부모 학교 참여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로 인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격려와 숙제 지원, 수업에 대한 관심 등으로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수업에 대한 강한 내적 동기가 높아지고 학업에 있어 자기조절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 또한 Epstein(2009)에 따르면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업동기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결과를 미친다고 한다. 부모의 직업,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학생의 사회적 기술과 학교에서의 적응, 등록률, 졸업률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해외 연구자들의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통한 학생의 학업성취향상과 학교 교육력 제고의 사례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학부모 학교 참여는 학교혁신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2) 미래지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 미래의 학교는 기존의 관료적·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난 민주적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또한 학습과 돌봄의 결합, 학교와 학교 밖의 연계, 지역교육공동체의 실현 등을 지향한다. 즉, 기존의 ‘교과서 지식 전수’의 기능 외에 다양한 학습과 체험, 돌봄이 이루어지는 학교기능의 확대[Extended School]가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기능의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만이 아니라, 학부모·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여야 한다.

- 이러한 미래학교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교사보다 훨씬 많은 학부모들의 전문역량과 사회적 경험을 학교 교육으로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체험활동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고, 학교와 교사의 역량만으로 불가능한 위기 가정의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할 수 있고, 나아가 평생학습시대에 요구되는 지역교육공동체와 지역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서도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부모는 곧 지역 주민이기 때문이다.

2. 참여협육 실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정책 방향

가. 참여협육 관련 경기도교육청 정책 및 사업 현황

- 이명박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학부모지원과를 새롭게 설치하고 다양한 학부모 참여·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학교교육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 공개하고, 학교평가에 학부모를 참여시키고 있다. 또한 학부모정책모니터단, 학부모 강사단, 학부모 상담사, 학부모 상담원 등 다양한 분야의 학부모들을 학교 교육과 학부모 지원에 참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해 그러한 모든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관계법규의 마련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추진되기 보다는, 산발적으로, 때로 즉흥적으로 추진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과부의 정책을 받아서 수행하는 시·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부모 참여·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제시한 ‘참여협육’의 정신에 입각하여, 교과부의 학부모 참여·지원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자체 사업으로는 경기교육사랑학부모지원단(경사단)을 꼽을 수 있다. 경사단은 기존의 교육청 주도의 학부모 참여·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위학교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학부모대표들이 참가하여 운영되는 조직을 지향한다. 경사단을 통해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학부모리더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학부모참여·지원사업은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참여협육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과 사업을 평가하여, 참여협육의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때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교과부 정책과 연계하고 나아가 그것을 종합,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교과부의 ‘산발적인’ 사업 추진 내용을 종합하고, 그것을 미래 경기교육 혁신의 방향과 일치시켜야 한다. 교과부는 학부모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부모참여·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 역시 학부모지원센터를 재편하여, 실제적인 학부모 참여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경사단의 재편과도 연관된다.
- 교과부의 학부모 학교참여·지원사업은 단위학교 범위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미래의 평생학습사회에서는 지역교육공동체를 지향해야 하고, 또한 지역 차원의 위기가정 학생·학부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를 뛰어넘는 지역교육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학부모참여·지원사업은 바로 이러한 미래 경기교육 혁신 방향과 연계되어야 한다.
- 학부모 교육 참여를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교육청 학부모지원팀의 주관이 아니라, 학부모 조직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 교육 참여가 단지 학교 교육력의 제고 뿐 아니라, 참여하는 학부모들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개별 학부모로서 학교에 참여했던 경험이 단위학교 운영에의 참여로 연결되고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학부모들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의 교육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참여협육 관련 제도 개선

- 현행법상 학교 거버넌스의 실체는 학교운영위원회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려면, 다수의 학부모가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회 활동이 활성화되고,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기구인데 반해 학부모회는 법적 규정이 없는 비공식적 기구로서의 한계를 지닌다.
- 학부모회 제도화(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각종 자료에서 ‘학부모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 참가를 통한 학부모 학교 참여’를 반복적으로 ‘권장’할 뿐 실제 학부모회 제도화에는 소극적이다. 따라서 경기도 조례를 통해 학부모회를 제도화하고, 학부모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가를 뒷받침해야 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의 개정을 통해, 다양한 학부모들의 학교운영 참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의 제·개정 외에 학교자치조례의 제정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자치조례는 단위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불필요한 지침의 축소, 교육감 권한의 과감한 위임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그렇게 단위학교에 위임된 권한이 학교장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서의 권한 위임,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권한과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참여·지원 사업 관련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도교육청 학부모지원팀에서는 정책개발과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실제 학부모 지원 사업은 지역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실제 학부모참여·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과부의 학부모지원센터 사업을 확대·적용하여 (가칭)‘학부모참여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 (가칭)‘경기도학부모협의회’ 구성과 운영

- 기존 경사단의 성과를 계승하고, 보다 전면적인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경사단을 (가칭)‘경기도학부모협의회’(혹은 ‘경기교육사랑학부모협의회’)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학부모협의회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 설립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칭)학부모참여지원센터의 핵심조직으로 참여해야 한다.
- 경기도학부모협의회는 선출과 구성, 운영의 목적 측면에서 현재의 경사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기존의 경사단이 도교육청 학부모지원팀의 주관 아래 운영되었던 것에 반해, 경기도학부모협의회는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며 실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상근인력이 지역별로 배치된다는 차이를 지닌다. 또한 학부모회 조례 개정에 의해 단위학교 운영위원회와 연계된 학부모대표들이 참가한다는 차이도 존재한다.

라. (가칭)‘경기도학부모참여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교과부의 학부모지원센터 사업을 (가칭)‘경기도학부모참여지원센터’로 재편하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학부모정책모니터단, 학부모 강사단, 학부모 상담사 등 학부모 관련한 사업들을 통합시키고, 경기도학부모협의회 조직을 핵심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

- 현재의 경기도학부모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중앙집중형 조직을 극복하고, 지역밀착형 센터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지원청별로 학부모참여지원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실제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 상근인력(학부모 상담사, 혹은 학부모 전문가)을 채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경기도학부모참여지원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공공법인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학부모지원센터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지역 교육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한다.

마. 미래 경기교육 혁신과 연계된 정책 개발

- 미래 경기교육의 혁신 방향과 연계된 학부모참여·지원사업, 혹은 참여협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연구와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도교육청 학부모지원팀의 역할을 조정(정책 연구와 연수 프로그램 개발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참여협육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참여협육에 기초한 미래 학교의 모형 및 실행 방안
(미래형 학교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참여협육의 실현을 위한 타 정책과의 연계 방안
(교장공모제, 학교평가 등과 연계한 참여협육 실현 방안)
 - 학부모협의회, 학부모지원센터 발전 방안
 - 지역교육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바.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참여협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의 인식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 즉, 교사와 학부모들이 상호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교원임용과 승진과정에는 이러한 학부모와의 소통, 학부모 학교 참여와 관련한 연수가 전무하거나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교원임용단계부터, 1정 자격 연수, 교정 및 교감 자격 연수에 참여협육 관련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야 한다.
- 학부모 역시 학교(교사)와의 소통, 학교교육 참여를 위해서는 연수가 필요하다. 학부모 연수는 최초의 자녀 입학 때부터, 자녀의 학년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학부모들이 이수해야 하는 연수와 학부모리더(학부모회 임원, 학교운영위원)들이 이수하는 연수, 그리고 학부모활동가(정책모니터단, 학부모 강사단, 학부모 상담사 등)에게 요구되는 전문연수가 단계별로 개발되어야 한다.
- 학부모들의 체계적인 연수 이수를 권장하고, 효과적인 학부모 연수의 진행을 위해 ‘학부모평생학습계좌제’를 지자체의 평생학습센터와 함께 운영할 수도 있다. 이는 평생학습센터의 많은 프로그램이 학부모 역할 훈련으로 주제로 진행되어, 학교(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부모 연수와 중복된다는 현실적 근거에 의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평생학습시대에 적합한 성인학습체계를 지역교육공동체가 형성해간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위기 가정(저소득·조손가정·다문화가정 등)의 증가에 따른 위기 가정의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요구되는데, 이러한 위기 가정의 학생과 학부모 지원을 지역 교육 거버넌스의 핵심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사-학부모의 소통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사와 학부모 모두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따라서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매뉴얼의 개발·보급이 요구된다.

3. 참여협육 실현을 위한 연도별(2012~2014년) 사업 추진 계획

사업 구분		연도			주요 내용
대영역	세부 영역	'12	'13	'14	
제도 개선	학부모회 조례 제정				학부모회 조례 제정 완료
	단위학교 학부모회 조직 구성				2013년까지 모든 학교 구성 완료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				
	학교자치조례 제정				2012~13년, 연구 및 의견 수렴
	학교평가 요소 반영				정책연구 결과 반영
	도-지역 역할 구분				도-정책 중심, 지역-학부모참여·지원
학부모협의회	학부모리더교육				학부모회 임원, 학교운영위 연수 체계화
	학부모협의회 관련 조례 제정				(가칭)경기도학부모협의회 조례 제정
	학부모협의회 구성				조례에 따른 조직 구성 완료
학부모 참여지원센터	도센터 재편				현재의 학부모지원센터 재편
	상근인력 채용 및 연수				30여명의 상근역량 채용 및 연수
	지역센터 구성 완료				기존 학부모조직 통합, 상근역량 배치
정책 연구	참여협육관련 학교평가지표 개발				2013년부터 각종 심사 및 평가에 반영
	학교 소통 지수 개발				2014년부터 각종 심사 및 평가에 반영
	학부모협의회 발전 방안				
	학부모참여지원센터 발전 방안				
	지역 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지역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평생학습, 지역복지시스템 등)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사용 연수 프로그램 개발				2012년, 교장 및 교감 자격연수 2013년, 신규임용 및 1정 연수 대상
	학부모 연수 리더과정 개발				
	학부모 연수 전문가 과정 개발				
	학부모 연수 기초과정 개발				
	학부모평생학습계좌제 시범사업				교육혁신지구 중에서 시범사업 시행
	교사-학부모 소통 매뉴얼 개발				2012년, 교사용 매뉴얼 개발 2013년, 학부모용 매뉴얼 개발

〈부록 1〉 OECD 학부모 정책 비교

〈표 21〉 Opportunities for parents to exercise voice at the school level within the public school sector (2008)

Most OECD countries report that parents have a range of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ng in the governance of public schools(70%) or in associations that advise public schools (90%). Most (90%) also report that regulations provide for a formal process by which parents can file complaints, and 60% report the existence of a designated ombudsman or agency for receiving complaints and appeals. Informally, parents may also complain or appeal decisions made by public schools.

	Yes	No, although they might exist	No
	Schools have a governing board in which parents can take part	Parent associations exist that can advise or influence decision making	Regulations provide a formal process that parents can use to file complaints
	There exists a designated ombudsman or agency that receives complaints		
Austria			
Belgium (Fl.)			
Belgium (Fr.)			
Czech Republic			
England			
Estonia			
France			
Greece			
Iceland			
Luxembourg			
Netherlands			
New Zealand			
Portugal			
Slovenia			
Hungary			
Israel			
Norway			
Poland			
Sweden			
Chile			
Denmark			
Germany			
Ireland			
Italy			
Korea			
Slovak Republic			
Spain			
Finland			
Switzerland			
United States			
Scotland			
Brazil			
Mexico			
Japan			
OECD percent (Yes)	70	90	90
			60

Countries are ranked in descending order of the opportunities for parents to exercise voice at the school level within the public school sector.

〈表 22〉 Requirement for schools to have a governing board in which parents can take part (2008)

	Primary			Lower secondary		
	Public schools	Government-dependent private schools	Independent private schools	Public schools	Government-dependent private schools	Independent private schools
	(1)	(2)	(3)	(4)	(5)	(6)
Austria	■	■	△	■	■	△
Belgium (Fl.)	■	■	a	■	■	a
Belgium (Fr.)	▲	▲	a	▲	▲	a
Chile	■	■	△	■	■	△
Czech Republic	■	■	a	■	■	a
Denmark	■	■	■	■	■	■
England	■	■	△	■	■	△
Finland	△	△	a	△	△	a
France	■	△	△	■	△	△
Germany	■	■	m	■	■	m
Greece	■	a	■	■	a	■
Hungary	△	m	a	△	m	a
Iceland	■	■	■	■	■	■
Ireland	■	a	△	■	a	△
Italy	■	a	■	■	a	■
Japan	△	a	△	△	a	△
Korea	■	a	■	■	■	a
Luxembourg	▲	■	■	■	■	■
Mexico	?	a	?	?	a	?
Netherlands	▲	▲	m	▲	▲	m
New Zealand	■	■	m	■	■	m
Norway	△	■	△	△	■	△
Poland	△	△	△	△	△	△
Portugal	■	△	△	■	△	△
Scotland	■	▲	△	■	▲	△
Slovak Republic	■	▲	a	■	▲	a
Spain	■	■	△	■	■	△
Sweden	△	△	a	△	△	a
Switzerland	△	△	m	△	△	m
United States	△	a	△	△	a	△
Brazil	△	a	△	△	a	△
Estonia	■	a	■	■	a	■
Israel	△	△	△	△	△	△
Slovenia	■	△	△	■	△	△

Note: Federal states or countries with highly decentralised school systems may experience regulatory differences between states, provinces or regions. Please refer to Annex 3 for additional information.

- : Yes, and some parent representation is required.
- ▲ : Yes, but parent representation is optional.
- △ : No, boards are not required, although they may exist.
- ? : No such boards exist.

< 丑 23 > Existence and role of parent associations (2008)

	Existence of parent associations for education				Levels at which parent associations exist														Formal and informal roles of parent associations			
					Public schools				Government-dependent private schools				Independent private schools				Home-schoolin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the government is obliged to consult them on major policy decisions	government	parents' most relevant developments in education
Austria	Yes	Yes	No	No	Yes	Yes	No	Yes	Yes	Yes	No	Yes	a	a	a	a	a	a	a	m	Yes	m
Belgium (Fl.)	Yes	Yes	a	No	No	Yes	No	Yes	No	Yes	No	Yes	a	a	a	a	a	a	a	Yes	No	No
Belgium (Fr.)	Yes	Yes	a	No	No	Yes	No	Yes	No	Yes	No	Yes	a	a	a	a	a	a	a	No	Yes	No
Chile	Yes	Yes	Yes	No	No	No	Yes	No	No	No	No	No	No	No	No	No	a	a	a	m	m	m
Czech Republic	Yes	Yes	a	Yes	Yes	Yes	Yes	Yes	Yes	No	Yes	Yes	a	a	a	a	Yes	No	No	No	Yes	No
Denmark	Yes	Yes	No	No	Yes	No	Yes	Yes	No	No	No	Yes	a	a	a	a	a	a	a	Yes	Yes	No
England	Yes	Yes	Yes	Yes	No	No	No	Yes	No	No	No	Yes	Yes	No	No	Yes	Yes	No	Yes	No	No	Yes
Finland	Yes	Yes	a	Yes	Yes	No	Yes	Yes	Yes	No	Yes	Yes	a	a	a	a	Yes	No	No	No	Yes	Yes
Franc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o	Yes	Yes	No
Germany	Yes	Yes	m	a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m	m	m	m	a	a	a	No	Yes	Yes
Greece	Yes	a	Yes	a	Yes	Yes	Yes	Yes	a	a	a	a	Yes	Yes	Yes	Yes	a	a	a	No	Yes	Yes
Hungary	Yes	Yes	a	No	Yes	No	No	Yes	Yes	No	No	Yes	a	a	a	a	a	a	a	Yes	Yes	No
Iceland	Yes	Yes	Yes	Yes	Yes	No	No	Yes	Yes	No	No	Yes	Yes	No	No	Yes	Yes	No	No	Yes	Yes	Yes
Ireland	Yes	a	Yes	No	Yes	No	No	Yes	a	a	a	a	Yes	No	No	Yes	a	a	a	Yes	Yes	a
Italy	Yes	a	Yes	No	No	Yes	Yes	Yes	a	a	a	a	No	Yes	Yes	Yes	a	a	a	No	Yes	No
Japan	No	a	Yes	a	a	a	a	a	a	a	a	a	Yes	Yes	No	Yes	a	a	a	No	Yes	No
Korea	Yes	Yes	Yes	a	No	No	No	Yes	No	No	No	Yes	No	No	No	Yes	a	a	a	No	No	Yes
Luxembourg	Yes	Yes	Yes	No	Yes	No	No	No	Yes	No	No	No	Yes	No	No	No	a	a	a	No	Yes	Yes
Mexico	Yes	a	Yes	a	Yes	Yes	No	Yes	a	a	a	a	Yes	Yes	No	Yes	a	a	a	No	Yes	Yes
Netherlands	Yes	Yes	m	Yes	Yes	No	No	Yes	Yes	No	No	Yes	m	m	m	m	Yes	No	No	No	Yes	Yes
New Zealand	Yes	Yes	Yes	No	m	Yes	m	Yes	m	Yes	m	Yes	m	Yes	m	Yes	a	a	a	No	Yes	Yes
Norway	Yes	Yes	Yes	No	Yes	No	No	Yes	Yes	No	No	Yes	Yes	No	No	Yes	a	a	a	Yes	Yes	No
Poland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Portugal	Yes	Yes	Yes	No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a	a	a	Yes	Yes	No
Scotland	No	m	Yes	No	a	a	a	a	m	m	m	m	No	No	No	Yes	a	a	a	m	m	m
Slovak Republic	No	No	a	No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附 24〉 Regulations that provide a formal process which parents can use to file complaints regarding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2008)

	Regulations provide a formal process that parents can use to file complaints			A designated ombudsman or agency receives complaints			Number of times parents made use of the formal complaint process in 2008		
	Public schools	Government-dependent private schools	Independent private schools	Public schools	Government-dependent private schools	Independent private schools	Public schools	Government-dependent private schools	Independent private schools
	(1)	(2)	(3)	(4)	(5)	(6)	(7)	(8)	(9)
Austria	Yes	Yes	No	Yes	Yes	No	750	m	a
Belgium (Fl.)	Yes	Yes	a	Yes	Yes	a	116	x(7)	a
Belgium (Fr.)	Yes	Yes	a	Yes	No	a	m	m	a
Chile	Yes	Yes	Yes	No	No	No	m	m	m
Czech Republic	Yes	Yes	a	Yes	Yes	a	m	m	a
Denmark	Yes	No	No	No	No	No	m	a	a
England	Yes	Yes	Yes	Yes	Yes	No	m	m	m
Finland	Yes	Yes	a	No	No	a	m	m	a
France	Yes	Yes	No	Yes	Yes	No	2 665	303	a
Germany	Yes	Yes	m	No	No	m	m	m	m
Greece	Yes	a	Yes	Yes	a	Yes	m	a	m
Hungary ¹	Yes	Yes	a	Yes	Yes	a	1 589	m	a
Iceland	Yes	Yes	Yes	Yes	Yes	Yes	m	m	m
Ireland	Yes	a	No	No	a	No	a	a	a
Italy	Yes	a	Yes	No	a	No	m	a	m
Japan	No	a	No	No	a	No	a	a	a
Korea	No	No	No	Yes	Yes	Yes	a	a	a
Luxembourg	Yes	Yes	Yes	Yes	No	No	10	m	m
Mexico	No	a	No	No	a	No	a	a	a
Netherlands	Yes	Yes	m	Yes	Yes	m	m	m	m
New Zealand	Yes	Yes	Yes	Yes	Yes	Yes	m	m	m
Norway	Yes	Yes	Yes	Yes	Yes	Yes	2 669	x(7)	x(7)
Poland	Yes	Yes	Yes	Yes	Yes	Yes	m	m	m
Portugal	Yes	Yes	Yes	Yes	Yes	Yes	m	m	m
Scotland	Yes	m	No	No	m	No	m	m	a
Slovak Republic	Yes	Yes	a	Yes	Yes	a	216	m	a
Spain	Yes	Yes	Yes	No	No	No	m	m	m
Sweden	Yes	Yes	a	Yes	Yes	a	850	103	a
Switzerland	Yes	Yes	Yes	No	No	No	m	m	m
United States	Yes	a	a	No	a	No	m	a	a
Brazil	No	a	No	No	a	No	a	a	a
Estonia	Yes	a	Yes	Yes	a	Yes	m	a	m
Israel	Yes	Yes	Yes	Yes	Yes	Yes	m	m	m
Slovenia	Yes	Yes	No	Yes	Yes	No	224	1	a

Note: Federal states or countries with highly decentralised school systems may experience regulatory differences between states, provinces or regions. Please refer to Annex 3 for additional information.

1. Reference year 2007.

〈부록 2〉 미국의 초중등교육법 학부모 참여 해설

1. 개요

미국 초중등교육법(No Child Left Behind Act) Title I, Part A의 학부모 참여(Parental Involvement) 조항들은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를 위한 학교와 학부모 간 책무성의 공유를 강조한다. 여기에는 공립학교의 선택권 확대, 평균 학력수준이 낮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보충 교육 서비스, 지역적 욕구를 반영한 학부모 참여 정책의 수립,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학부모의 역량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1) 학부모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녀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2)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와 보다 효과적으로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3) 학부모들이 학교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새롭게 개정된 Title I, Part A는 소외 학생과 또래간의 학업성취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성공이 학업성취의 관점에서 규정되고 학교가 모든 아이들에게 투자하도록 미국 학교의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에서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前 교육부장관 Paige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말하고 있다. “부모의 도움이 없이 학교는 개선될 수 없다.”

2. 학부모 참여의 의미

학부모 참여(parental involvement)는 항상 초중등교육법 Title I의 중심을 차지

해 왔다. 그러나 미국 초중등교육법 역사에서 처음으로 NCLB에서 구체적인 법률적 정의(statutory definition)를 갖게 되었다. NCLB는 학부모 참여를 학생의 학습과 기타 학교 활동에 관해 학부모가 정기적이고,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의미있는 소통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학부모 참여와 관련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고 있다(Section 9101(32), ESEA).

-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수행한다.
-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있어 완전한(부족함이 없는) 파트너이며, 따라서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자문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1118조(학부모 참여 관련)에 기술된 기타 활동들이 수행된다.

학부모 참여가 이와 같은 법률적 정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주(州)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가 학부모를 참여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활동 및 절차를 실행하는데 있어 일정한 기준을 부과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참고로 미국 초중등교육법에서 학부모(parent)란 친부모와 법적 보호자(아동과 함께 사는 조부모, 계부모, 아동의 복지에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Section 9101(31), ESEA).

3. 학부모 참여 정책의 수립 및 학부모의 역할

NCBL은 주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대해 학부모 참여 정책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교육청의 정책(State plans)은 효과적인 학부모 참여 활동 자료를 수집해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배포하는 일을 지원해야 하며, 학부모 참여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주교육청은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교육청 및 학부모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교육청 역시 학부모 참여에 관한 지역교육청의 기대를 담은 정책을 개발해 문서화해야 한다. 이 정책은 학부모와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학부모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이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교육청의 계획수립에 학부모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 학교들이 효과적인 학부모 참여 활동을 기획, 실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정, 기술적 지원 및 기타 지원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학부모의 역량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 학부모 참여 전략을 기타 학교 프로그램과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할 것인지
- 학부모 참여 정책의 내용과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학부모 참여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례 평가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 * 학부모 참여의 확대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확인
 - * 보다 효과적인 학부모 참여를 위한 전략 수립에 평가 결과를 활용
 - * 필요하면 지역교육청의 학부모 참여 정책을 수정
- 학교의 활동에 학부모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NCBL은 개별 학교 역시 학부모와 공동으로 문서화된 학부모 참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는 학부모 참여 및 전체 학교 프로그램의 기획, 검토, 개선에 있어 조직화되고, 지속적이며, 시의적절하게 학부모를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학교는 학부모와 학교의 변화하는 욕구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각 학교는 문서화된 학부모 참여 정책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별 학교는 학교의 프로그램과 학부모의 참여 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학부모가 편리한 시간에

연례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가능한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전 또는 저녁 시간에 추가적인 회의를 제공해야 한다.

4. 학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소통 의무

주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는 다양한 정보 - 예를 들면, 지역 단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학교 평가, 지역 및 학교 차원에서의 학부모 참여 정책, 교사 자격이나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학부모의 알 권리, 학교설명회 안내,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 를 관련 당사자들(지역교육청, 학교,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어능력이 낮은 학부모에게는 그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정보를 서면 또는 구두로 제공해야 하며, 장애 학부모와 소통을 할 경우에는 일반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주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는 필요한 조치(보조 기구나 서비스)를 취해야 한다.

5. 공동의 책임을 강조

NCLB는 아동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학교와 학부모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학교-학부모 협약(compact)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각 학교는 문서화된 학부모 참여 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학교-학부모 협약을 학부모와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 협약은 학부모, 전 교직원, 학생들이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취하게 될 활동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간 합의를 문서화한 것이다.

학교-학부모 협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 아동들이 주정부의 학업성취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지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에서 양질의 교과과정과 수업을 제공할 학교의 의무
-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의 의무 (예를 들면, 출석관리, 숙제검사, TV 시청관리, 자녀 교실에서의 자원봉사, 자녀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의 적절한 참여, 방과 후 시간의 긍정적인 사용)
- 학부모-교사 간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교사-학부모 면담, 성적표, 자원봉사 및 수업참관 기회 등)

6. 학부모 역량 구축을 위한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책임

(1) 참여를 위한 학부모 역량 구축

각 학교와 지역교육청은 훈련, 정보 제공 및 조정 활동을 통해 학생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학부모-지역사회 파트너십을 지원해야 한다.

(2) 지원과 훈련에 관한 정보의 내용

학교와 지역교육청은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에 있어 학부모가 교육자와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topics)를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학교와 지역교육청은 학부모가 다음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주정부의 교육내용과 학업성취 기준
- 주 및 지역교육청의 학업 평가
- 학부모 참여에 관한 법적 요구 사항

-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자녀의 학업을 관리하고 교육자와 협력하는 방법

(3) 학부모 교육수준 향상에 대한 책임

주교육청은 많은 학부모가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학력을 갖지 못한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는 학부모 대상의 다양한 부모교육(양육, 문자해독 등)과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해야 한다(Section 1111(c)(14), ESEA).

(4) 학부모 지원

학교와 지역교육청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자료와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독서 및 도서관 이용 프로그램
- 언어 교육(reading instruction)의 핵심 요소에 관한 정보
- 자녀의 숙제, 교사와의 소통, 기타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 검색을 위한 인터넷 사용법 훈련 등이 포함된다.

(5) 자녀 교실에서의 자원봉사

자녀교실에서의 자원봉사와 수업참관은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학부모가 공유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며, 또한 학교와 학부모로 하여금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 활동이다.

(6) 학부모 참여 관련 직원 훈련

학교와 교육청은 교직원에게 학부모와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특히 학부모의 지원을 얻어 교사,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교장 및 기타 직원에게 학부모 기여가 갖는 가치와 효용성, 어떻게 학부모를 접촉하고(reach out),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지, 학부모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시하고 조정해야 하는지, 학부모와 학교 간 연계를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교육시켜야 한다. 학교와 학부모는 이러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학부모를 참여시킬 수 있다.

(7) 학부모 참여 극대화 방법

학교는 학부모가 학교 관련 회의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비와 육아비를 포함해 학부모 참여 활동에 관련된 적절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불할 수 있다. 학교와 지역교육청은 또한 다양한 시간대에 학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의 교사 면담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를 위해 교사 또는 다른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사이에 가정에서의 면담(in-home conferences)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는 또한 다른 학부모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법에 대해 학부모에게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8) 학부모의 워크숍 및 회의 참석 수당 지불

관심있는 모든 학부모가 참석할 수 없는 워크숍이나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에게 회의 주제에 대한 정보와 가능하면 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Title I 예산에서 학부모의 회의 참석에 따른 적절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9) 지역 수준에서의 학부모 자원센터나 학부모 참여 활동을 위한 예산의 사용

학부모와 학교는 학부모 자원센터와 같은 지역 수준에서의 학부모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위해 개별 학교 수준에서 예산을 모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10) 학부모 참여 활동의 조정과 실행

학교와 지역교육청은 기타의 학교 프로그램(Head Start, Reading First, Even Start Family Literacy Programs 등)과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통합해

야 한다. 이와 함께 가능하면 학교와 지역교육청은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학부모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기타 활동, 예를 들면 학부모 자원센터를 만드는 일을 실행해야 한다.

(11) 지역사회 참여

교육부는 학교와 지역교육청이 지역사회 조직을 위한 적절한 역할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이러한 조직들은 학생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간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7. 예산 배정

지역교육청은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활동 및 절차를 실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Title I, Part A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학부모 참여 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배분

Title I, Part A 예산이 50만 달러 이상인 지역교육청은 Title I 예산의 1% 이상을 학부모 참여 활동을 위해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배분되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의 95% 이상을 공립학교에 배분해야 한다.

- Title I, Part A 예산이 50만 달러 이하인 지역교육청

학부모 참여 조항은 Title I, Part A 예산이 50만 달러 이하인 지역교육청에도 적용되지만, 예산 확보의 요구는 적용되지 않는다.

- 사립학교 학부모를 위한 예산

지역교육청은 저소득 가정 아동의 비율에 따라 사립학교 학부모의 학부모 참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예산 배분 기준

지역교육청은 학생 비율에 따라 또는 평가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다.

- 예산 배분에 있어 학부모 역할

지역교육청은 학부모 참여 활동을 위한 예산 배분 결정과정에 학부모를 참여시켜야 한다.

- 법적 요구사항 이상의 예산 배정

지역교육청 예산의 1% 이상을 학부모 참여 활동을 위해 확보했을 경우, 95% 이상을 반드시 배분할 필요는 없다.

〈부록 3〉 미국 학부모 정보자원 센터

1. 교부금 신청

(1) 제출

이 법에 의한 교부금 수령을 원하는 각 비영리단체(주 차원의 비영리단체 포함), 또는 해당 단체와 지역교육기관과의 컨소시엄은 장관이 요구하는 시기에, 장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장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신청 조건)

- 학부모의 이사회 참여, 학부모, 전문가, 학생 대표가 포함된 특별자문위원회 설립
- 교육적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기금의 50% 이상을 저소득가정 및 집지역에 사용함
- 센터가 지역 내 학부모들을 돕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할만한 규모, 활동영역, 서비스의 질을 갖추어 운영함
-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활동함
- 초중등 학부모, 특히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우한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훈련,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센터를 설계함
- 지원이 요구되는 효과적인 훈련, 정보 및 후원 활동을 수행할만한 능력과 전문성 입증
- 지역교육청,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저소득, 소수인종, 영어능력결핍 아동의 부모인 경우를 집중적으로 지원함
-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30% 이상을 학령 전 아동 부모의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함

- 학생 및 학교의 학업성취에 대한 주 및 지역의 기준과 척도를 이해하는 문제 등에서 학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함
- 주 및 지역 교육청들과 공동으로 학부모의 욕구 및 서비스제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파악함
- 이 법에 의해 지원받는 프로그램, 폭력예방 프로그램, 영양 프로그램, 주택 프로그램,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성인교육, 직업훈련 등 개선된 학생교육을 후원하는 연방/주/지역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조율함; 그리고 상기에서 언급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아동 및 가정의 접근을 증대시키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기관과 공조하고 상호 파트너십을 증진시킴.

2. 기금사용

일반원칙 - 이 법에 의해 수령한 교부금은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1)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자녀가 주/지역 학업기준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학부모활동을 지원한다.
 -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키는 활동에 참여함. 여기에는 해당 주 교육기관 및 지역 교육기관 내에서 통용되는 책무성 시스템을 이해하고,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주/지역 기준과 비교해 이해하는 것이 포함됨;
 -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위해 후속 지원을 제공함;
 - 교사, 교장, 카운슬러, 행정관리자 및 기타 학교인력과 효과적으로 소통함;
 - 학교-학부모 협약, 학부모참여정책, 학교 계획수립 및 발전의 개발, 시행 및 검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적정수준의 성적향상에 실패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 입안 및 제공에 참여함;

- 주/지역 의사결정에 참여함; 그리고
 - 다른 학부모들을 훈련시킴.
- (2) 국가/주/지역 차원에서 학부모 참여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한다.
 - (3)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적용되는 테크놀로지를 익히고 사용하도록 돕는다.
 - (4) 자녀 교육과, 자녀 및 가족을 돕는 다른 연방/주/지역 서비스 및 프로그램들을 조정하는 학부모 활동을 기획, 실행하고 자금을 지원한다.
 - (5) 활동 촉진을 위해 주 또는 지역의 교육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 (6) 유아 프로그램과 학령아동 프로그램을 조정 및 통합한다.

3. 관리규정

(1) 교부금 갱신을 위한 매칭펀드

이 법에 따라 단체 또는 컨소시엄이 자원을 받은 첫 회계연도 후 매 회계연도 마다 해당 단체 또는 컨소시엄은 해당 회계연도분의 신청서 제출 시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정부분이 현금 또는 현물로 된 비영리 기부를 통해 지원받는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2) 정보 제출

○ 일반원칙

이 법에 따라 원조를 받는 각 단체 또는 컨소시엄은 연 단위로 이 법에 의해 지원받은 학부모정보자원센터에 관한 정보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 정보 및 훈련을 제공받는 학부모 수(소수인종 및 영어능력결핍 학부모 수 포함).
- 이 법에 따라 제공되는 훈련, 정보 및 지원의 유형과 양식.
- 소수인종으로서 영어능력이 제한된 학생의 부모, 읽고 쓰기 능력이 제한된 학부모
- 센터에서 사용되는 학부모참여 정책 및 활동, 그리고 해당 정책 및 관행이 가정-학교 소통, 학생들의 학업성취, 학생 및 학교전체의 학업 성취, 학교의 계획수립, 검토 및 개선 과정에의 학부모참여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
- 지역 교육기관 및 학교가 수행하는 활동이 NCLB에 따라 지원받는 학부모 참여 및 기타 활동과 관련해서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학생 및 학교전체의 학업 성취도 향상 면에서 거둔 효과

○ 배포

장관은 각 단체 또는 컨소시엄이 상기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정보를 의회 및 일반대중에게 보급해야 한다.

○ 기술적 지원

장관은 학부모 훈련, 정보 및 후원 프로그램들과 학부모정보자원센터를 설치 및 발전시키고 조율하기 위해 교부금이나 계약에 의한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부록 4〉 학부모 정보자원센터에 대한 평가

1. 학부모 정보자원센터의 주요 역할

-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정보 제공, 기술적 지원, 학부모 및 교사 훈련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필요로 하지만, 모든 학교와 교육청이 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 정보자원센터(PIRC)의 필요성이 대두됨.
- 성공적, 효과적 학부모 참여를 위한 정책 수립, 프로그램 개발, 실천사업 운영을 위한 리더십 및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
- 학부모-교사-학교장-직원 간 파트너십 강화 (개인적 수준)
- 학부모와 학교 간 관계 형성 및 강화 (집단적 수준)
-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국가, 지역 수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조정, 통합하는 포괄적 접근방법 제공

2. 학부모 참여 전략

- 정보 제공, 배포를 위해 지역/종교 기관과 파트너십 구축
- 학부모, 교사의 학교공동체 구축
- 학부모 친화적인 학교환경 평가를 위한 지원 및 개선안 도출을 위한 자문
- 특수아동 부모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학부모 지도자 훈련
- 교사(관리자 포함) 대상의 파트너십 훈련 및 지원 제공
- 주 단위 학부모 자문위원회 운영

- 학교 단위(소지역 단위) 학부모 센터 설립
- 학부모 참여 전문가 훈련 및 지원 (예. 인디애나주 Title I 초중등학교 parent liaisons)
- 아버지 봉사자 지원
-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화상회의 개최
- 다양한 학부모 모임 개최 (지역사회 기관, 종교기관, 학부모 가정)
- 교사-학부모-학생 대화 촉진
-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학생 봉사자 지원

3. 결론

- 효과적 지원을 위해서는 학부모, 교사의 욕구, 지역사회 자원 파악이 중요
- 접촉이 어려운 학부모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모든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
- 학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함
- 지역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관련 프로그램들의 통합과 조정을 위해 지역사회 타 기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

〈부록 5〉 위스콘신주의 학부모 참여 정책

1. 학부모 참여 정책의 비전

위스콘신주 교육부(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는 학부모와 가정이야말로 아이들의 첫 번째 교사이자, 가장 중요한 교사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및 아이들 자신이 학습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게 된다.

나아가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 모든 아이들은 학부모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원을 받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 문화, 언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부모는 자녀의 성공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 학부모-학교-지역사회 협력과 파트너십은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준다.

2. 학부모 참여 정책의 미션

성공적인 학부모-학교-지역사회 파트너십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이 정기적이고, 쌍방향으로, 의미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책임있는 양육, 양질의 가르침, 돌봄의 공동체가 촉진되고 지지된다.
-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교직원은 학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환영하는(기꺼이 맞이하는) 환경을

제공하며, 이들의 지원을 구한다.

- 학부모는 학교, 지역 및 주 차원에서 자녀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변자 역할 및 의사결정(예산 및 교과과정 포함)에 참여한다.
- 학교의 프로그램, 학부모 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이 활용되며, 지역사회 파트너는 학교가 자신들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데 참여한다.

3. 학부모 참여 정책 수행을 위한 주정부(교육부)의 역할

모든 학령기 아동들이 높은 수준의 수월성을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위스콘신주 교육부는 지역사회, 학부모(학생 포함)가 지식을 갖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과 자원을 제공한다. 즉 위스콘신주 교육부는 미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교직원들이 학부모-학교-지역사회 파트너십과 지역사회 협력을 촉진시키도록 교육시키고, 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 교육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안을 하려는 학부모나 시민들에게 즉각 반응한다.
-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학교환경을 조성하도록 학교장을 격려한다.
- 평생학습을 위한 파트너십과 협력관계를 발전, 유지시키도록 교사(학교장), 학부모, 시민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촉진, 지원한다.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학생들의 학습과 시민교육을 향상시키는데 협력하도록 촉진한다.

〈부록 6〉 캘리포니아주 가정-학교 파트너십법 (주요 내용)

- 일 년에 40시간까지(한 달에 8시간까지) 자녀 학교(보육원)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다.
- 정기 휴가, 개인적 휴가 및 보상시간에서 사용하거나 고용주의 허락을 얻어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통상적인 휴가 사용 방법과 동일하게 사용한다. 고용주가 요구하면 학교에 참여했다는 서류상의 증거를 제시한다.
- 교사의 경우 노사협정에 따르며, 현재로서는 무급 휴가나 개인적 휴가를 사용한다. 대리교사 채용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 2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학부모의 결근(휴가)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 고용주는 휴가 사용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다. 차별 대우를 했을 경우 민사상벌금과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부록 7〉 뉴욕시 학부모 권리와 의무 (Parent's Bill of Rights)

부모님(이 문서에서 지칭하는 학부모는 학생의 부모, 보호자, 또는 학생에게 부모나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그 외의 사람들을 지칭)과 교육 커뮤니티간의 활동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각 아동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전달해주는 파트너로서, 학부모님은 특정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그것은 이 안내문 및 교육감 규정서에 명시되어 있다.

모든 학부모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있다:

○ 자녀를 공립학교에 무상으로 재학하도록 하는 권리

학부모에게는 안전하고 협조적인 학습 환경이 제공되는 공립학교의 무상 교육의 권리가 있다.

학부모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있다.

1. 법에 따라 유치원에서 21세까지 무상으로 공립학교 교육을 받거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도록 할 권리-순서와는 상관없이
2. 장애아인 경우, 평가를 통해 특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따라 3세부터 21세까지 무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할 권리
3. 자녀가 영어학습학생(English Language Learner)인 경우,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중 언어 교육 또는 ESL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권리
4. 자녀가 교육청이 매년 채택하는 학교 일정에 따라 모든 수업 일정을 이수하도록 할 권리
5. 자녀가 실제 또는 외견상의 연령,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성적체성, 성별 표현, 종교, 출신국적, 시민권/이민자 신분상태, 성적 성향, 신체적 및/또는 감정적 상태, 장애 여부, 결혼 여부, 그리고 정치적 신조에 의거한 차별, 부당한 대우나 편견이 없는 안전하고 협조적인 학습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권리
6. 자녀가 교육청의 학생 권리와 의무 조항(Bill of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에 명시된 모든 자격을 부여 받도록 할 권리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뉴욕시 교육청과 산하 학교들은 학부모에게 교육 프로그램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학부모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있다.

1. 교육감 규정 A-663 에 따라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교육청과의 원활한 대화를 위하여 언어적 지원을 요청할 권리
2. 학교, 학군 및 보로의 부모 상담을 요구하는 모든 정책, 계획 및 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학교 시스템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관련 최신 정보, 해당 서비스 자격 요건 및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예: 교통, 급식 서비스, 보건 서비스, 영어학습학생 수업, 치료 교육, 특수 교육 등등)
4. 교육 프로그램, 출석 및 품행과 관련하여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기대치에 대한 문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자녀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 사용될 성적 평가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6. 수업 과목 또는 커리큘럼 지도 등을 (제한되지 않고) 포함하는 자녀의 수업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7. 교육감 규정 A-820 에 따라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기밀유지를 보장받을 권리
8. 학교가 요청을 받은 후 45일 이내로 자녀의 교육기록부를 시찰하고 검토할 권리
9. 요청을 한 후 이상적인 시간 이내에 지정된 교직원으로부터 자녀의 교육기록부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를 가질 권리
10. 교육감 규정 A-820 에 따라 자녀의 교육기록을 외부 기관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리, 또한 상급 학교 및 모병 담당 기관에 연락처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할 권리
11. 자녀의 교육기록부를 자녀가 전학 간 다른 학교로 신속하게 보내지도록 할 권리
12.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 (FERPA: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과 교육감 규정 A-820 에서 동의 없는 공개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의 교육기록부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식별 정보의 공개에 대해 동의할 권리. 한 가지 예외, 즉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는, 합법적인 교육적 관심을 가진 학교 관계자들에게 공개하는 경우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의 행정인으로 고용된 사람, 지도교사, 교사, 또는 지원 직원의 일원을 포함하지만, 그 목록에 반드시 제한되지는 않는다. 학교 관계자는 그가 자신의 전문적인 책임감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기록부를 검토해야 할 경우에 합법적인 교육적 관심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요청이 있을 시에, 학교는 동의 없이 교육기록부를 학생이 추구하고자 입학할 의도가 있는 다른 학교의 관계자에게 공개한다.

13. 학교가 FERPA 의 요구조건에 응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미국 연방 교육부에 항의를 제기할 권리

FERPA 를 담당하는 부서 이름과 주소: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5901

○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련된 모든 의미 있는 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학부모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있다.

1. 자신들의 학교 커뮤니티에서 환영 받고, 존경 받으며 지원받을 권리
2. 모든 학교 직원으로부터 예우 받을 권리, 인종, 피부색, 신념, 종교, 출신국, 성별, 연령, 민족적 배경, 이민/시민 신분, 결혼 상태,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성별 인식, 장애 및 경제력과 상관없이 모든 권리를 부여 받을 권리
3. 정기적인 문서 및 구두로 교사 및 교직원과의 대화에 참여하여 자녀의 학습 진전, 사회성 및 품행상의 개선에 관한 염려와 관심 사항을 상의할 수 있는 권리.
4. 수업일 중 자녀의 학교를 방문할 수 있는 권리
5. 확정된 절차에 맞게 자녀의 담임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을 방문할 수 있는 권리
6. 학년 중 학교에서 자녀의 학습 진전 상황에 대해 토의하고, 적절하다면, 다른 학교 직원들과 만날 기회를 가지기 위해 의미있고 생산적인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7. 정기적으로, 비공식 및 공식적인 성적표를 통해 자녀의 학업 및 품행에 대해 통보 받을 권리
8. 교육감 규정 A-443 및 규율규정에 제시된 대로 자녀가 징계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적합한 징계절차를 요구할 권리
9. 자녀의 학교가 적절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녀를 학교나 수업에서 제외시킨 경우, 교육청의 항의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하거나 호소할 권리
10.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교 리더십 팀에 참가하도록 권유 받고 팀의 업무나 교육과 관련된 된 의사 결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협조 받을 수 있는 권리 (예: 새 회원 오리엔

테이션, 지속적인 전문적 개발)

11. 자녀와 관련된 심의, 회의, 인터뷰 및 기타 회의에 학교 직원이나 행정인의 예비 승인 없이 기존 절차에 따라, 친구, 조연자 또는 통역사를 동반할 수 있는 권리
12. 학부모님이 청각 장애인일 경우, 자녀가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학습 또는 규율에 관한 모든 회의 또는 활동에 참여할 때 사전 서면요청을 하면 수화통역사를 제공받을 권리. 수화통역사 제공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다른 적절한 대체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13. 학교 직원들이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학교 개방 주간, 학교 리더십 팀 모임, 학부모회, CEC 모임 등과 같은 중요한 안내통지문을 학부모님에게 제공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할 권리
14.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회 또는 학부모 교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
15. 자녀의 학교 입학 시 또는 추후에 요청할 경우, “학부모 권리 및 의무 조항”, “학생 권리 및 의무 조항”, 규율규정(Discipline Code) 및 특정한 학교 규정 등의 사본을 제공받을 권리
16. 학교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예: 안전, 영양, C-30 레벨 I)
17. 교육감 및 교육청에서 설립한 학부모 자문 위원회에 참여할 권리
(예: 워크 그룹, 임시 특별 전문 위원회, OFEA-타이틀 I 뉴욕시 학부모 위원회).
18. 법률 및 교육감 규정 D-140, 150 그리고 160 에 의거하여, 커뮤니티 또는 뉴욕시 교육 위원회에 입후보 자격이 있는 경우, 후보로 출마할 권리, 또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학부모협의회나 학부모교사협의회의 회장, 서기, 또는 재무 부장의 직을 맡고 있는 경우, 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
19. 공개회의 법(Open Meeting Law)인 “햇볕 법률”(Sunshine Law)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되는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와 교육정책 패널에서 주최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20. 확정된 절차에 맞게 커뮤니티 및 뉴욕시 교육 위원회 공개 회의 및 교육 정책을 위한 패널에 참여할 권리

○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한 항의 및 이의 제기에 관한 권리

교육감은 아동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항의 및 이의 제기를 확정하는 규정을 공표했다. 이 절차들은 다음의 웹사이트에 있는 교육감 규정에서 설명된다 : <http://schools.nyc.gov/RulesPolicies/ChancellorsRegulations>

학부모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있다.

1. 교육감 규정 A-101 에 따라 거주지에 의거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2. 교육감 규정 A-420 에 따라 단체 체벌에 대해 항의할 권리
3. 교육감 규정 A-443 에 따라 교장이나 교육감의 정학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4. 교육감 규정 A-450 에 따라 원하지 않은 전학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5. 교육감 규정 A-501 에 따라 긴급관련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6. 교육감 규정 A-655 에 따라 학교 리더십 팀 선거에 관한 항의 및 이의 제기할 권리
7. 교육감 규정 A-660 에 따라 학부모회와 회장 위원회 선거, 논쟁, 활동 및 비활동에 관한 항의 및 이의 제기할 권리
8. 교육감 규정 A-701 에 따라 예방접종 면제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9. 교육감 규정 A-710 에 따라 섹션 504 계획의 위탁, 평가, 계발, 그리고/또는 실행에 대한 항의를 제기할 권리
10. 교육감 규정 A-780 에 따라 임시의 거주지에 기거하거나 홈리스인 아동의 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11. 교육감 규정 A-801 에 따라 교통편 제공 자격에 관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12. 교육감 규정 A-810 에 따라 무료 및 절감된 급식을 받을 자격에 관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13.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사항이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자녀의 사생활 보호권에 위배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교육감 규정 A-820 에 따라 수정을 요청할 권리
14. 교육감 규정 A-830 에 대해 차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
15. 교육감 규정 D-110 에 따라 정보법의 자유에 일치하여 교육청에 의해 관리되는 공개 기록을 이용할 권리가 부인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16. 교육감 규정 D-140 에 따라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일원의 지명 및 선택에 대한 항의를 제기할 권리
17. 교육감 규정 D-150 에 따라 뉴욕시 특별교육 위원회의 일원의 지명 및 선택에 대한 항

의를 제기할 권리

18. 교육감 규정 D-160 에 따라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의 일원의 지명 및 선택에 대한 항의를 제기할 권리
19. 낙오 아동 방지법 하의 다음의 행정적인 프로그램(예: 타이틀 I 및 II, 파트 A 및 D, 타이틀 III 및 타이틀 IV, 파트 A)과 위에서 나열된 교육감 규정에서 다루는 절차를 통해 제기될 수 없는 그 이외의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교육청의 항의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할 권리

모든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1. 학습할 준비가 된 상태로 자녀를 학교에 보낼 의무
2. 자녀를 충실히 정시에 학교에 출석시킬 의무
3. 학교 안내문을 통해 자녀의 학교 학습과 진전 상황, 문제점을 인지하고, 자녀에게 학교에 대해 대화하며, 자녀의 숙제와 성적표를 살펴보고, 교직원과의 면담에 참여할 의무
4. 자녀의 교육 진전과 관련해 자녀의 교사 및 교장 선생님과 구두로 또는 문서로 연락을 유지할 의무
5. 자녀의 교육에 관계되는 학교의 모든 규칙과 적용될만한 교육감 규정을 준수할 의무
6. 학교의 연락에 신속히 응답할 의무
7. 자녀와 관련되어 참석을 요청하는 모든 모임 및 회의에 참석할 의무
8. 학교 건물에 정중한 태도로 들어오며, 무례한 행동을 삼가고, 모든 교직원들,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 커뮤니티의 그 외 일원들에게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대해야 하는 의무

학부모들은 또한 다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1. 자녀가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학습 지원적 인 가정환경을 조성할 책임.
2.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습득 및 가치관 확립의 중요성에 대해 가정에서 재교육시킬 책임.
3.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가능할 때마다 자발적으로 시간, 기술, 자원을 제공할 책임.

4. 교육과 관련된 의사 결정 참여권을 부여하는 학교 및 지역 사회 프로그램에 참가할 책임.
5. 학교의 학부모회 또는 학부모-교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원이 될 책임.
6. 해당되는 경우 타이틀 I 학부모 위원회의 적극적인 일원이 될 책임
7. 학교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과제 수행, 출석 및 품행에 대해 자녀에게 확인할 책임
8. 타인의 물건, 안전 및 권리를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위협, 괴롭힘 또는 차별 등의 행동을 삼갈 중요성에 대해 가르칠 책임

〈부록 8〉 보스톤시 학부모 협약

〈학교/교사의 책임〉

양질(high-quality)의 교육과정과 학습지도 제공
지지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 조성
주정부에서 설정한 학력 달성 및 핵심 기술 습득하도록 학생들의 역량 강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존중
학생의 학습 진전에 대해 학부모와 소통

〈학부모의 책임〉

-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자녀의 학습을 지원
- 학교 출석 확인
- 자녀가 학습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
-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
- 정기적으로 교사와 소통

〈학생의 의무〉

- 부모와 교사의 지원을 받음
- 학교에 출석
- 자신, 학교, 타인에 대한 존중
-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한 믿음
- 학업과 행동에 있어 최선을 다함

이 협약은 학부모와 학교 간 지속적인 쌍방향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최소한 학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협약과 학업성취 간 관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학부모-교사 면담 실시
-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업 진전에 대해 자주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보고
- 다양한 방식으로 교직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 제공
- 수업참관 기회 제공

〈부록 9〉 메릴랜드주 학부모 참여 목표(지표) 수립 및 평가

메릴랜드주 교육청에서 발간한 『Strategic Plan Update, 2005』에 따르면, 주교육청은 공립학교 교육과 관련해 5가지 우선순위(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학업성취도 향상(학력신장)
-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사(educators)들의 역량 구축
- 잘 조정되고 이해가 쉬운 교수(instruction), 교과과정 및 평가 체계 구축
- 긍정적인 학교환경 조성
- 학부모의 교육 참여

주교육청은 각 영역별로 하위 목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하위 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와 측정계획 및 달성 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학부모 교육 참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표 1. 2007-8학년도까지 주(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보다 빈번하고 분명하게 소통한다.

성과 측정 및 목표

1-1. 주(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의 소통 노력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비율

주(교육청)은 2006-7학년도에 이 척도에 관한 기준 자료(baseline data)를 수집하고, 향후성과 목표를 설정할 것이다.

1-2. 학교 PTA 회원으로 참여하는 학부모의 수

목표 2. 2007-8년도까지 모든 지역(교육청)은 주(교육청)의 학부모 참여 정책에 맞춰 지역(교육청)의 학부모 참여 정책을 수립한다.

성과 측정 및 목표

2-1. 주(교육청)의 정책에 맞춰 학부모 참여 정책을 수립한 지역(교육청)의 수

목표달성 : 메릴랜드 주교육청은 2001년 학부모 참여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그 이후 24개 모든 지역(교육청)에서 이에 맞춘 정책을 수립하여 목표를 달성하였다.

목표 3. 2007-8년도까지 학교는 학교 및 학생 성취도 향상을 위한 학부모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성과 측정 및 목표

3-1. 학교 및 학생 성취도 향상을 위한 적절한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응답한 학부모의 비율

2006-7학년도에 이 척도에 관한 기준 자료(baseline data)를 수집하고, 향후성과 목표를 설정할 것이다.

〈부록 10〉 학부모 참여 연수 자료 (위스콘신주 사례)

1. 『Effective Partnership Practices』

- 학부모 자문단(Parent Leadership Corps) 제작 자료 (2002)

도전과제 1. 효과적인 쌍방향 소통

도전과제 2. 효과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

도전과제 3. 학부모의 다양성(경제적, 문화적, 지리적, 능력)을 이해

도전과제 4. 충분한 학교 재정 및 투명성 확보, 교사에 대한 지원(예. 교사의 날)

도전과제 5. 시간과 자원이 부족한 학부모 지원

2. 『What Parents Want School Staff Know : The “3 R’s” : Respect, Relationships, Rules』

- 학부모 자문단(Parent Leadership Corps) 제작한 교사 지침 자료

존중(Respect)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학부모와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깊은 관심을 존중해주길 원한다.

-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성공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녀의 첫 번째이자 가장 영향력있는 교사라는 점을 교사들이 알아주길 학부모들은 원한다.
- 모든 학부모는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점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교사들이 인정해주길 학부모들은 원한다. 환경에 관계없이 학부모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의 학습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하고 있다.

관계(Relationships)

학부모들은 교사들과 신뢰 관계를 갖고 싶어한다.

- 학부모들은 교사나 교장과 이야기하거나, 자녀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기 위해 학교에서 환영받는다고 느끼고 싶어한다.
-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습에 대해 질문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도록 교사들이 자신들을 격려해주길 원한다.
-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견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자신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길 원한다. 예를 들면, 어떤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평가조사나 질문지 등을 통해 서면으로 표현하는 것을 편하게 여긴다.
- 학부모들은 학교나 교사들이 자신들에게 요청하는 일들을(예를 들면, 평가조사, 회의참석)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한다. 학부모들은 그들의 참여가 어떤 차이를 가져오며, 자녀의 학습과 어떻게 연계되는 알고 싶어한다.

규칙(Rules)

학부모들은 학교의 규칙과 학교에서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알고 싶어한다.

- 학부모들은 학교에서의 “명령체계(chain of command)” 또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어떤 행위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학부모에게 학교라는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습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돕기 위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특정 행위나 활동을 알고 있을 때(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자녀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있을 때) 아이들은 가장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자녀의 학습에 대해 쉽게 얻을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분명한 정보를 제공해주길 원한다. 학부모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학부모 리더십 훈련을 제공해주길 원한다. 학부모 리더가 학교 위원회에 참석하여 다른 학부모들을 대표하길 학교에서 원한다면, 학교는 학부모 리더들을 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Effective Strategies to Engage All Families』

- 학부모 자문단(Parent Leadership Corps) 제작 자료

각 학교는 신뢰의 수준을 평가한다.

- 학부모 대상의 설문조사 실시한다.
- 학부모가 보다 많이 참여하기 위해 학교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 설문조사 결과를 적시에 학부모에게 알려준다.

학부모를 환영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 다국어로 제작된 학부모 환영의 표시판(현수막, 사인보드 등)을 설치한다.
- 학부모나 방문객을 위한 안내데스크를 설치한다.
- 학교행사(예. Back-To-School Night) 기획에 학부모 및 학생 봉사자를 참여시킨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학부모 면담을 시작한다.

- 미소를 지으며 인사한다.
- 학부모의 의견을 묻는다.
- 각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한다.
- 학부모에게 자녀의 재능과 기호에 대해 질문한다.

학부모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 통역자를 제공한다.
- 타 문화와 역사에 대한 사진과 포스터를 사용한다.
- 학생들을 위한 구두 역사 수업에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초대한다.

각 학교에 학부모센터(family resource center)를 설치한다.

- 학부모센터를 조성하는 일에 학부모를 초대한다.
- 학부모센터에서 일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 지역사회 센터/리더와 연계한다.
- 지역사회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다.
- 학부모를 위한 자원(정보)을 제공한다.

〈부록 11〉 미국의 학부모 전문가 제도 사례

1. 뉴욕시 사례

뉴욕시는 2002년 처음으로 모든 학교에 학부모 코디네이터 배치하였으며,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학부모 참여 전문가(District Family Advocates & Borough Directors)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뉴욕시 교육청의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뉴욕시 교육청은 학부모와 그들의 자녀를 돕기 위해 2002년 처음으로 1,200명의 학부모 코디네이터(Parent Coordinator, PC)라는 새로운 직원을 각 학교에 파견하였다. 이 제도는 학부모에게 학교가 언제나 열려있으며 그들을 환영한다는 것을 알리고, 나아가 학부모 교육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또는 학교에 대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Parent Coordinator를 찾도록 하였다. PC는 학부모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학교가 운영되는 낮 시간 뿐만 아니라 밤 시간대와 주말에도 연락이 가능하며, 또한 학교 교무실을 거치지 않고 연결되는 직통선을 갖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학교 수준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이 제도를 만들었다. PC는 학교에서 일하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들과 달리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교직원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Parent Coordinator는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School Leadership Team)를 지원한다. 일부 PC들은 과거 학부모회 임원 출신이지만, PC라는 자리가 학부모회가 연장된 것은 아니다. PC의 업무는 학부모 집단과 협력해 더 많은 학부모

모들을 학교에 참여시키고, 더 많은 학부모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PC는 지역사회 및 종교기관을 연계해 그들의 지원을 이끌어낸다. 건강관리, 방과후 활동, 멘토링과 같은 넓은 영역에 걸쳐 지역사회의 지원을 연계하려고 한다.

모든 학부모들은 Parent Coordinator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직통 전화번호를 받는다. 학년이 시작되면서 PC는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각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는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PC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제안을 받으려고 한다. Parent Coordinator는 여름동안 뉴욕시 교육청에서 만든 부모학교(Parent Academy)에서 새로운 전문적 자격(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훈련을 받는다.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뉴욕시에서 PC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PC는 각 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직원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모든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Parent Coordinator의 직무 - 직원 모집 공고를 중심으로

PC는 학교장의 감독 하에서 일하는 행정팀의 일부이다. PC는 교장, 교직원, 학교 리더십팀, 학부모 조직, 지역사회 조직 및 학부모 자문위원회와 함께 일하면서 학부모를 학교사회에 참여시키는 일을 한다. 이 자리(PC)는 학부모를 환영하는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다. PC는 학부모와 관련된 학교 및 지역사회 문제와 학부모의 문제를 파악하고 교장과 함께 일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적시에 다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PC의 책무(Duties and Responsibilities)

-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조직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교에서의 학부모 참여를 높인다.

- 학교 정책이나 시설을 포함한 학부모와 학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수행한다.
- 학부모를 자녀교육에 참여시키기 위해 원조활동(outreach)을 수행한다.
- 학부모의 주요 관심사에 관한 정기적인 학부모 회의와 행사를 개최한다.
- 교장과 함께 학부모 회의에 참석한다.
- 학부모 대표 선거와 같은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 조직과 함께 일한다.
- 중앙 학부모 참여 담당부서(OFA)와 학교 간 연락사무를 수행한다.
-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조직과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한다.
- 학부모와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학부모의 밤 및 기타 행사를 조직하고, 학부모를 환영하는 학교 분위기를 만든다.

PC의 최소 선발(자격) 기준

- 4년제 대학 졸업 및 책무와 관련된 2년간의 지역사회 활동 경험; 또는 2년제 대학 졸업 및 책무와 관련된 4년간의 지역사회 활동 경험; 또는
- 고등학교 졸업 및 책무와 관련된 6년간의 지역사회 활동 경험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우대

- 뉴욕시 공립학교 체계에 대한 지식
- 현재 또는 과거 공립학교 학부모
- 워크숍 개최 경험
- 이중언어 구사자(비영어 인구가 많은 지역)
- 우수한 소통, 조직적,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 기술
- 갈등 해결 및 중재 기술
- 교육 및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해 가정 및 학부모와 함께 일한 경험

- Microsoft Office Applications 사용능력(Word, Excel, PowerPoint)
- 이 자리는 학부모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근무시간과 관련해 유연성, 즉 이른 아침시간, 저녁시간 및 주말 근무를 요구한다. 또한 이 자리는 때때로(여름 방학 기간에는) 다른 근무 장소에 배치될 수 있다.

2. 보스톤시 사례

보스톤시 교육청 학부모학생과(Office of Family & Student Engagement)는 학부모 참여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학교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각 학교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1) 학부모-지역사회 코디네이터(Family & Community Outreach Coordinators)

보스톤 교육청은 전체 134개 학교 중 31개 학교에 학부모-지역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풀타임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된 2005년에는 17개 학교에 15명의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였다(2명의 코디네이터가 4개 학교를 담당).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학부모들 간의 관계 및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강화시킨다.
- 학부모의 자녀 지원 능력과 학교의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구축한다.
- 학부모를 환영하는(기꺼이 맞이하는) 학교환경을 조성한다(학교문턱 낮추기).

학부모-지역사회 코디네이터는 학교장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으며, 또한 학부모-지역사회 참여를 담당하는 부교육감의 지휘 하에 있다. 두 개의 학부모-지역사회 참여 훈련 기관 및 월 코디네이터 정례모임(Peer Network)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평가작업에 필요한 문서작성에 책임을 진다.

학부모-지역사회 코디네이터의 책임

- 학교에서 욕구조사(needs assessment) 실시
- 학교 전체의 학부모 참여 활동계획에 맞춰 개인의 업무 계획수립
-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학부모들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며 시의적절한 소통을 유지
- 학교장 및 교직원들과 함께 학부모들이 안전하고, 환영받으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학교와 지역 차원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대변인/연락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을 지원
- 필요할 경우 갈등 해결을 위해 존중받을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중재자 역할 수행
- 학교 학부모회(School Parent Council) 및 학교운영위원회 (School Site Council)의 조직, 강화, 지원
- 지역사회 파트너들과의 관계 구축 및 강화
- 학부모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및 유지
- 지역교육청 담당부서와 학교 간 연락관 역할 수행
- 지역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지속 훈련과 전문성 연수에 참가

- 시범 사업의 평가에 사용될 다양한 활동 기록 유지
- 학교장 또는 부교육감(교육청 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기타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된 의무 수행

자격 조건

- 학사 학위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경력
-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협업 경험
- 뛰어난 대인관계 기술
- 뛰어난 조직화 능력
- 검증된 시간관리 능력
- 뛰어난 문서 작성 및 구두 소통 기술
- 워크숍, 연수를 조직하거나 이끌어본 경험
- 저녁시간 및 주말에 근무 가능
- 보스톤 거주자

우대 조건 : 이중언어가능, 갈등해결, 중재, 협상 기술, 학교에서의 근무 경험

(2) 학교/학부모/지역사회 참여팀(School, Family & Community Engagement Unit)

보스톤시 교육청 소속의 학부모 참여팀은 학교위원회 조직, 학부모를 자녀학습에 참여시키기 위한 활동 계획수립, 학부모-교직원 소통 지원을 위해 모든 학교와 협력한다. 일부 팀원은 영어구사능력이 제한적인 학부모 및 자녀가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학부모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로 구성한다.

〈부록 12〉 National PTA 파트너십 표준안

National PTA는 각 학교의 학부모 참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학부모-학교 파트너십을 위한 국가 표준, National Standards for Family-School Partnerships), 설문지(Family Survey) 및 평가 지침(Assessment Guide)을 제공하고 있다. 학부모 참여에 관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제작한 학부모 참여 지침은 초기에는 “학교가 학부모를 참여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침의 제목도 “National Standards for Parent/Family Involvement Programs”에서 “National Standards for Family-School Partnerships”으로 바꾸었다.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 1 - 모든 학부모를 학교 공동체로 기꺼이 맞아들인다.

(Welcoming All Families into the School Community)

학부모는 학교 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자이다. 학부모는 환대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학부모들끼리, 교직원과, 그리고 자녀들의 교실 활동 및 학습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목표 1 : 환대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들어설 때, 학교가 자신을 초대했다는 느낌을 갖는지, 그리고 학부모가 학교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갖는지를 고려한다.

(평가지표)

- 개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학부모 친화적(학부모가 친숙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한다.

목표 2 : 서로 존중하고, 모두를 포함하는 학교 공동체를 구축한다. 학교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학부모들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존중하며,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고려한다.

(평가지표)

- 모든 학부모를 존중한다.
- 참여를 막는 경제적 장애물을 제거한다.
-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기준 2 - 효과적으로 소통한다. (Communicating Effectively)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해 정기적이고, 쌍방향의, 의미있는 소통에 참여한다.

목표 1 : 학교와 학부모는 정보를 공유한다. 학교는 모든 학부모들이 중요한 문제와 행사에 대해 공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지, 그리고 학부모들이 교사들과 소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는지를 고려한다.

(평가지표)

- 다중(여러 가지) 소통 경로를 활용한다.
-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이슈(문제)와 관심 사항을 조사한다.
- 학부모들이 교장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의 이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 학부모들 사이의 연계를 촉진시킨다.

기준 3 - 학생들의 성공을 지원한다. (Supporting Student Success)

학부모와 교직원은 학생들의 학습과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서로의 지식과 기술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기적인 기회를 갖는다.

목표 1 : 학생들의 진전(progress)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전체가 얼마나 진전을 보이고 있는지를 학부모들이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고려한다.

(평가지표)

- 학생들의 진전에 대해 학부모-교사 소통을 보장한다.
-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학업 표준(academic standards)과 연계시킨다.
- 성취도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시험 결과를 활용한다.
- 학교 전체의 진전(성취 수준)에 대해 공유한다.

목표 2 : 학부모를 참여시킴으로써 학습을 지원한다. 학부모들이 가정과 학교에서의 자녀 학습에 적극적인 참여자인지를 고려한다.

(평가지표)

- 학부모들을 교실 학습에 참여시킨다.
- 가정에서의 학습을 강화시키기 위해 학부모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학습을 촉진한다.

기준 4 - 모든 아이들을 대변한다. (Speaking Up for Every Child)

학부모들이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대변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자신들의 성공을 지원하는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증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목표 1 : 학부모들이 학교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학교와 교육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학교나 교육청의 프로그램, 정책, 활동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는지를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지를 고려한다. 학부모들이 연방법 및 주법, 그리고 지역 조례와 정책에 따른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고려한다.

(평가지표)

- 학교와 교육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해시킨다.
- 연방법 및 주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이해시킨다.
- (학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 알려준다.
-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 2 : 자신과 자녀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학부모들의 자녀의 진전(성장과 발달)을 확인하고,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육 및 취업을 통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고려한다.

(평가지표)

- 효과적인 대변인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 장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순조로운 이행(진학,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의 성취를 위해 공적인 대변 활동(civic advocacy)에 참여하도록 한다.

기준 5 - 권력을 공유한다. (Sharing Power)

학부모와 교직원은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데 있어 동등한 파트너이며, 정책, 실천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서로 알리고, 함께 영향을 미치며, 만들어어나간다.

목표 1 : 의사결정 공유과정에서 학부모의 목소리를 강화시킨다. 모든 학부모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온전한 파트너인지 고려한다.

(평가지표)

-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의견을 제시한다.
- 평등 문제(equity issues)를 다룬다.
- 학부모 리더십을 육성한다.

목표 2 : 학부모들의 사회적, 정치적 연계를 구축한다. 학부모들이 서로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정기적 기회를 제공하는 강력하고 광범위한 조직(학부모회, 학부모 자문단 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의 리더(학교장), 지자체나 교육청의 고위직 관리(public officials), 기업 및 지역사회 리더와 함께 학부모들의 관심사항을 제기하고 있는지 고려한다.

(평가지표)

- 지방 고위직 관리들과 학부모들을 연계시킨다.
- 모든 학부모들을 대표할 효과적인 학부모 참여 조직을 육성한다.

기준 6 -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Collaborating with Community)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확대된 학습기회, 지역사회 서비스 및 공적 참여에 연계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협력한다.

목표 1 : 학교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시킨다. 학부모와 학교의 리더들이 학교를 강화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조직, 기업 및 고등교육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지,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부모-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있는지 고려한다.

(평가지표)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시킨다.
- 지역사회 파트너들의 지원을 조직한다.
- 학교를 지역사회 활동의 중심(hub)으로 전환시킨다.
- 학부모들을 강화시키고, 학생들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조직들과 협력한다.

<부록 13> National Network of Partnership Schools 모범 사례

1. 자원봉사 프로그램

O.N.E. (Our Network for Education)

- 지역 내 21개 학교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서,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 기업 및 지역사회 기관이 자원봉사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과정에 참여
- 웹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봉사자 핸드북, 교사 가이드북, 온라인 지침서 제공
- 연방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파트타임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참여 코디네이터를 고용, 미국평화봉사단 봉사자가 프로그램을 위한 인력 지원

Computer Redeployment Program

- 지역사회 IT 기업과 파트너십
- 기업 전문가의 지도하에 컴퓨터 관련 기술이 뛰어난 학생들이 봉사자로 참여
- 낡거나 고장난 컴퓨터를 수리하여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에게 제공
- 참여 학생들에게는 지역 전문가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는 인턴십 경험 제공

Summer Storytime in the Park

- 자원봉사자들이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책을 읽어주는 행사를 지역사회 봉사기관(VISTA) 주관으로 진행

- 7월 한 달 동안 지역 내 여러 공원에서 매주 2회의 행사를 가짐
- 학부모들은 봉사자들의 책읽어주기 시범을 보고 집에서 따라하도록 함
- 기부행사를 통해 얻은 도서를 행사 끝난 후 아동들에게 무료로 제공
- 학부모들에게는 책읽기 관련 자료를 담은 DVD 제공

Celebrating Our Stars

- 지역사회 학교(교육)를 위한 학부모,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파트너들의 기여(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지역단위 시상식 개최
- 각 학교에서 3명 추천, 지역선발위원회에서 선발
- 지역교육청 학부모참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행사 담당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지속 및 확대에 기여

2. 지역 단위 연합 행사 및 네트워킹

Back to School Blitz

- 학년 초 각 학교에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지역 내 모든 학교의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커다란 “행사”로 개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고 학부모 참여도를 향상시킴
- 지역 내 학교장들과 학부모 코디네이터들이 모여 연합 행사를 기획, 성공적인 협력 리더십
- 행사 조직팀은 지역 행정기관과 지역 교육청의 협력을 이끌어냄
- 양 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대표자 기획회의 개최, 역할 분담
-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행사 홍보

- 30개 이상의 지역사회 기관들이 파트너로 참여(대학, 병원, 걸/보이 스카우트, YMCA, 교회, 학원 등)
- 지역 내 대학의 공간 활용, 지역사회 기업의 기부(학용품 등), 기관 봉사자들의 지원

The Million Father March

- 학년이 시작되는 첫 번째 월요일에 지역 내 24개 학교에서 동시에 아버지(남자 보호자)들이 자녀와 함께 등교하는 행사를 개최해 아버지들의 참여를 촉진
- 학교에서는 아버지들에게 자녀교육 관련 정보, 음료수 등을 제공

MD PIRC Parenting Matters Regional Conferences

- 메릴랜드 학부모지원센터는 대규모 학부모 교육 행사를 2개 지역에서 개최
- 하루 종일 여러 개의 워크숍을 동시에 진행하여, 다양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룸 (학교 이해하기, 숙제 도와주기, 안전한 인터넷 사용 등)
- 영유아 전문가 및 지역 봉사기관의 지원을 받아 별도의 아동 프로그램 진행
- 교통 편의를 위해 버스와 카풀 제공
- 2번의 행사에 478명의 학부모 참석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Symposium

-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 교직원, 지역 교육청 직원 대상의 학부모/지역사회 참여 심포지엄 개최 (350여명의 학부모, 65명의 지역인사 참석)
- 20의 워크숍을 동시에 진행, 참석자는 2개의 워크숍 참석

3. 지역 교육청의 리더십

Superintendent's Parent Roundtable discussions

- 교육장이 지역을 순회하며 매월 1회 학부모 간담회 개최 (2시간)
- 총 8회 간담회 개최, 3,000명 이상의 학부모와 지역주민 참석

Coffee & Conversation with the Superintendent

- 학부모들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교육장이 지역 내 10개 학교를 3회 씩 방문하여 간담회 개최
- 학부모들의 자유로운 대화를 위해 학교장은 참석하지 않고, 교육장이 이메일로 간담회 내용을 학교장에게 전달
- 교육장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를 위해 학부모나 학교장에게 후속 전화를 하기도 함
-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지역사회 지도자와의 간담회 개최로 확대 예정

Glow & Grow

- 지역 내 학교의 파트너십 실행팀(ATP)들이 모여 시상(Glow) 및 연수(Grow) 기회를 가짐
-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공유함으로써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Developing Partnerships for Student Success

- 각 학교에 파트너십 실행팀(ATP)을 구성하도록 하고, 7회의 실행팀 연수 실시

- 초기 연수가 끝나고 2달 후에 발표회 개최
- 향후 6개 지역에서 지역별 학부모 아카데미 개최 예정

Inter-District Coffee Collaboration

- 두 개 지역 교육청의 파트너십 구축
- 지역 교육청 담당자들(학부모 참여 코디네이터)의 월례회의 개최를 통해 경험 공유 및 문제해결 전략 고안

Three Tools for ATP Chairs

- 각 학교에 있는 파트너십 실행팀(ATP, Action Team for Partnership)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 교육청 수준에서 자료 제작
- ATP 회장의 자기평가서, ATP 회장의 직무(역할)기술서, 새로운 리더를 위한 소감과 충고를 담은 ATP 회장의 동영상
- 지역교육청 파트너십 코디네이터는 새로운 ATP 구성원의 충원과 연수에 이 자료를 활용

Chair Binder for Success

- ATP 회장을 위한 매뉴얼 개발, 3개 영역으로 구성
- Documents and Forms : 우수사례집, 평가 설문지
- Job Descriptions and Tools : 연락처, 자기평가서, 업무목록, 역할기술서, 팀조직 방법
- Common Use Forms : 활동기록 및 평가양식 등

〈부록 14〉 영국의 학부모 전문가 제도

1. 학부모지원 전문가의 역할

-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 학부모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학부모들에게 독립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며, 공평한 지원을 제공한다.
- 학부모와 학교 간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한다.
- 학부모의 서류작성을 돕는다.
- 학부모들이 지원 기관(조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학부모들이 학교, 건강, 가정지원, 기타 이용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학부모들을 위한 학습기회를 마련한다.
-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습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견해와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시범사업 평가 결과

『Parent Support Advisor Pilot Evaluation : Final Report (2009)』

- “학부모지원 전문가”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중앙부처(아동학교가족부)와 담당 부서(Training and Development Agency for Schools)간 협조관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 20개 지역교육청에 지원된 4천만 파운드의 기금은 1,167개 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717명의 학부모지원 전문가를 선발, 고용하는데 활용되었다.

- 학부모지원 전문가들은 주로 학부모를 지원(일부는 학생)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개발하였다.
- 학부모지원 전문가들이 학부모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확보는 성공적이었다.
- 80% 이상의 관리자들은 이 제도가 학부모의 자녀 학습 참여 향상, 학부모와 학교 간 관계 향상, 학생들의 출석률 제고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 90% 이상의 학부모들은 학부모지원 전문가들이 다양한 지원 방식을 통해 학부모가 존중받는대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거나,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며, 학부모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학부모들 스스로 자신에 대해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는 점에 매우 높은 평가를 하였다.
- 중등학교에서 장기 결석자의 비율은 거의 4분의 일 정도 감소하였다.
- 이 제도를 통해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지원받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8개 교육청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2만 명 이상의 학부모들이 지원받았으며, 전체적으로는 이보다 몇 배 많은 학부모들에게 지원이 제공되었다고 추산된다.
-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며, 전체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원을 투자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부록 15〉 프랑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프랑스에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는 자녀의 학업성취와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에 대한 일차적이고 개별적인 관심을 넘어 미래시민을 함께 길러내는 공동체적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적 이슈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한 교육주체 간 갈등구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꾸준히 학부모들의 권리를 확장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여기서는 프랑스 학부모 참여의 배경과 실재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프랑스 학부모 참여의 배경

첫째, 학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평생학습시대의 도래로 인해 학교는 더 이상 교육에 대한 독점권을 지닐 수 없게 되었다. 학교를 둘러싼 안팎의 변화와 도전으로 학교를 개방하여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대안으로 학교를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가져가게 되었다. 또한 기존 학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비판은 새롭고 열린 학교문화 창출을 위한 요구를 분출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새로운 교육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의 파트너로서 학교 공동체 구축과 자녀교육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을 얻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 진행된 지방자치와 분권화는 지역과 학교 단위의 교육자치 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학부모가 교육자치의 주요한 주체로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둘째, 1970년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은 자녀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학부모들 사이에 자신들의 지위

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면서, 학부모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특히 교사 중심의 폐쇄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폭되었다.

셋째,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도 연관이 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공교육 대중화가 야기한 학교 인플레이션은 직업선택과 사회적 지위배분에 있어 계층 간 불균형을 가져왔으며, 자녀교육을 학교에 전적으로 일임했던 학부모들은 학교교육 운영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와 적절한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다. 보다 균등한 교육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학부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인식이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의 학부모 참여는 근대 공교육의 발전과 한계에 따라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의 주체적인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공교육의 전면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2. 프랑스 학부모 참여의 실제

가. 프랑스 학부모의 지위와 역할

프랑스는 1970년대 이래로 학부모들의 지위와 역할이 공식화되면서 학교교육에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프랑스 학부모들의 지위와 역할은 크게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의 학부모 지위와 역할은 교육법에 명시된 학부모들의 권리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학부모들의 권리는 크게 자녀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학교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자녀교육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혹은 학부모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할 권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을 포함한 각종 학교활동에 대해 거부할 권리, 필요할 때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고 존중받을

권리 등을 가지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교의 평가를 3개월마다 받아볼 권리가 있고 학교는 이를 각 가정에 성실하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학교운영에 관한 법규는 매년 초 교장에게 학부모들과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 년에 최소한 2번 이상은 교사들과의 회의를 개최하여 학부모가 학교행정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부모가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성적,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면담을 요청하면 학교와 교사는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학교가 독점권을 지니던 기존의 시스템에서 부모들이 의사결정권을 동등하게 지닐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 특히, 1989년에 단행된 일명 조스팽 개혁(Réforme Jospin)은 학부모가 자녀들의 진로결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결정권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한편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석할 의무와 자녀들의 학업성취를 위해 학교와 함께 노력할 의무도 명시함으로써 학교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부모들은 수업 보조자로서 참여하기도 하고 학교행사들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자녀들과 관련된 모든 학교안팎의 활동은 부모들의 동의 혹은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어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결정권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집단적 차원으로서 프랑스 학부모들의 지위와 역할은 전국 규모 학부모 단체들과 학교 운영이사회를 통한 역할을 들 수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학부모단체로는 1950년대에 창설되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 자문연합(FCPE)과 공교육 학부모연합(PEEP)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직업고등학교학부모 단체인 공교육 학부모국가연합(FNAPE)과 학부모 자율 국가연합(UNAAPÉ) 등 다양한 단체들이 있다.

1974년은 처음으로 학부모 대표 선거가 치러진 해로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주체로 들어가게 된 첫해로 기록된다. 프랑스 유·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선거 참가율은 초등학교에서는 50% 내외, 중등학교에서는 30% 내외의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어 일반 학부모들의 학부모 대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가율을 확인할 수 있다.

1977년에는 학교자문회가 신설되었고, 1985년에는 지방자치 선포와 함께 지역 아카데미 운영에도 학부모 자리가 신설되면서 학부모들이 학교의 정식 교섭단체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게 된다. 1986년에는 학부모 대상 학교서비스 확대조치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 단체는 3달에 한번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학교를 학부모들에게 전면 개방하고 학부모들이 교육행정 위원회의 4분의 1을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학부모 대표들이 활발하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근무하는 직장에 공문을 보내면 결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사회적으로, 일상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출된 학부모 대표의 활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매 학년 초에는 다양한 학부모 단체들이 내세우는 학교 운영이사회 후보들이 학부모 직접선거에 의해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 학교, 지역, 국가단위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학부모 대표로서 강력한 의사결정권자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학교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결하는 학교운영 이사회는 프랑스 학부모의 지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학교 운영이사회는 학교재정에서부터 학사운영 방식, 학교 안전, 급식, 교재 채택 등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실질적인 권력기구인데, 지방자치단체 대표 1/3, 교사대표 1/3 학부모와 학생대표 1/3로 구성되며, 매 3분기마다 1회 회의를 개최한다.

학부모 단체들은 학교와의 관계에서 대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일반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북돋우고 학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기

도 한다. 학부모의 권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각 가정 자녀들이 학교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이처럼, 학부모 단체들이 참여 또는 개입하는 영역은 학교규칙과 학교 운영계획 수립, 학교의 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 방과 후 활동, 급식, 학교 위생과 안전에 까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 예산과 운영계획, 내부규칙이나 규정의 의결 등 학교운영상뿐만 아니라 교재선정과 학업도구, 새로운 교육과정을 신설할 때도 학부모들의 의견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교사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수 있으며, 교사들의 파업 시 수업대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관여한다.

한편, 1999년 3월 9일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공적 지원을 위한 부모동반 지원망(REAAP)을 개설하여 학부모들이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명시하였다. 최근 2006년 7월 프랑스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지위와 위치를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가져갈 것을 천명하면서 정보와 모임과 참여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나. 프랑스 학부모 참여의 특징

프랑스 공교육의 장에서 학부모 참여는 자녀들의 만족스러운 학교생활과 성장을 위한 학부모의 자율과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공적영역으로서 지역사회 공동체로서의 학교를 지향하면서 자녀교육 공동체로서의 학교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성장·발전해 왔다. 이처럼 프랑스의 학부모참여는 교육에서의 사적 자유와 공적 가치 혹은 자율성과 공공성이 대척점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으로 공존해야 할 성격의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학교-학부모와의 관계가 늘 호혜적인 것은 아니다. 종종 교육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녀 교육을 둘러싼 상반된 의견으로 인한 대립적인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학부모

들은 자녀들의 낮은 학업성취를 학교시스템과 그 비효율성 탓으로 돌리면서 교수법과 교사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다. 반면,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지나친 학교개입으로 전문성이 침해받는다라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한 관계와 대립적인 상황의 연출에도 불구하고 보다 바람직한 학교문화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두 주체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자녀들의 만족스러운 학교생활과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운영 파트너로서 학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프랑스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는 교육당국과 학교에 의해 독려되기도 하면서, 학부모들 스스로 교육주체로 자리매김시키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3. 프랑스 학부모 참여 모델의 시사점

프랑스 학부모 참여모델은 Feyfant & Rey(2006)의 분류를 적용한다면 두 번째 유형인 파트너십 모델과 세 번째 유형인 사용자 참여모델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Price-Mitchell & Grijalva(2009) 분류에 의하면 주체적 동반자 유형에 가깝다. 프랑스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참여는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지역사회 활동과 실천이라는 의식이 강하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프랑스의 학부모참여는 교육에서의 사적 자유와 공적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역할모델이 될 수 있다. 프랑스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열린 지역사회 공간으로 학교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자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중심축으로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다. 프랑스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는 학생, 교사 등 학교 운영주체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되는 동시에 스스로 성장해감으로써 그 자체로

평생학습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둘째, 학교 행정과 운영에 학부모를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시킬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 다양한 학부모들의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프랑스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을 공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여, 회의일정을 정하는데 학부모들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직장인의 경우 공문을 보내면 결근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랑스의 경우 학교운영과정에서의 갈등과 대립은 서로 다른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을 가진 학교와 가정 사이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불가피한 과정이며 이러한 갈등의 과정을 거쳐 협의하고 조절하면서 자녀들을 위한 더 좋은 교육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학부모와 교사 상호간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학부모 교육이나 교사교육을 통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교사-학부모, 학교-가정이 서로를 성공적인 자녀교육과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구조와 분위기를 만들어야 서로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소연 외(2009), **학부모 정책팀 운영방안 및 정책과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_____ (2010). **학부모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선진화**. 교육과학기술부
- 김양분 외(2006), **한국교육중단연구2005(II)**, 한국교육개발원.
- 김주후 외(2007). **학부모센터'설립 방안 마련을 위한 예비 연구**.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 다이란 래비치(2011). **미국의 공교육 개혁, 그 빛과 그림자**. 서울: 지식의 날개.
- 박인중 외(2011).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분석 및 평생교육 출연기관의 조직 운용 방안**. CR 2011-4. 평생교육진흥원.
- 양승실 외(2000),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경아 외(2010). **지역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CR 2010-40-6. 한국교육개발원·평생교육진흥원.
- 이광호 외(2010), **학교를 바꾸다**, 서울 : 우리교육
- 이수광 외(2010), **미래형 학교교육 운영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 _____ (2011), **경기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 이세용(1997). **아버지의 자녀교육 지원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31, 595-623.
- _____ (1998). **부모의 교육참여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간의 관계**. 한국교육, 25(1), 114-141.
- _____ (2003). **학부모 학교참여가 학교 및 교사 평가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3(2), 185-208.
- 이순형(2003), **학부모 참여에 의한 학교교육 혁신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 이종각(2011), **교육열을 알아야 한국 교육이 보인다**, 서울 : 이담북스
- 최상근 외(2009). **학부모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10). **학부모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분석**. CR2010-51. 한국교육개발원.
- 키타지마 루이(2010), **信頼される 教師の 保護者會 マニュアル**, 동경 : 명치도서
- 평생교육진흥원(2010). **3차년도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TR2010-11.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7). *The Children's Plan : Building brighter futures*. White Paper. DCSF-00675-2009.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8). *The Impact of Parental Involvement on Children's Education*. DCSF-00924-2008.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8). *Parenting Early Intervention Pathfinder Evaluation*. Research Report DCSF-RW054.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9). *Your child, your schools, our future : building a 21st century schools system*. White Paper.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9). *Parent Support Advisor Pilot Evaluation*. Research Report DCSF-RR151.
- Department for Education(2010). *Parents Panel: Summary Reports of Meetings Held from January 2009 to March 2010*. Research Report DFE-RR022.
- Department for Education(2010). *Parenting Early Intervention Programme: 2nd interim report*. Research Report DFE-RR047.
- Epstein, J.(1987). Toward a Theory of Family-School Connections: Teacher Practices and Parent Involvement. in *Social Intervention: Potential and Constraints*, edited by K. Hurrelmann, F. Kaufmann and F. Losel, Berlin: Walter de Gruyter.
- Epstein, J.(2001). *School,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 Preparing Educators and Improving Schools*. Boulder: Westview Press.
- Epstein, J.(2008). Research Meets Policy and Practice : How Are School Districts Addressing NCLB Requirements for Parental Involvement?", in *No Child Left Behind and the Reduction of the Achievement Gap*. eds. Sadovnik et al, 269-279. New York: Routledge.
- Epstein, J. & Associates(2009). *School,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 Your Handbook for Action*. Thousand Oaks: Corwin Press.
- Henderson ㉑(2002), *A New Wave of Evidence: The Impact of School, Family and*

Community Connections on Student Achievement.

Henderson, A. et al.(2007). *Beyond the Bake Sale : The Essential Guide to Family–School Partnerships.* New York: The New Press.

Lareau, A.(1989). *Home Advantage.* Philadelphia: Falmer Press.

Lee, Seyong(1994). *Family–School Connections and Students' Education: Conitinity and Change of Family Involvement From the Middle Grades to High School.* Unpublished Dissertati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Martinez–Cosio, M. & R. M. Iannacone(2007). The Tenuous Role of Institutional Agents : Parent Liaisons as Cultural Brokers. *Educaiton and Urban Society*, 39, 349–369.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2005). *Strategic Plan Update, 2005.*

National Network of Partnership Schools(2009). *Promising Partnership Practices, 2009.*

National Network of Partnership Schools(2010). *Promising Partnership Practices, 2010.*

National PTA. *National Standards for Family–School Partnerships.*

National PTA. *National Standards for Family–School Partnerships Assessment Guide.*

OECD(1997). *Parents as Partners in Schooling.*

OECD(2010). *Education at a Glance 2010.*

U.S. Department of Education(2004). *Parental Involvement: Title I, Part A, Non–Regulatory Guidance.*

U.S. Department of Education(2007). *Engaging Parents in Education : Lessons From Five PIRCs.*

U.S. Department of Education(2010). *Suppoting Families and Communities : Reauthorizing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eiss, H. & N. Stephen(2009). *From Periphery to Center : A New Vision for Family, School, and Community Partnerships.* Harvard Family Research Project.

Weiss, H., M. Lopez, & H. Rosenberg(2010). *Beyond Random Acts : Family, School, and Community Engement as an Integral Part of Education Reform.* Harvard

Family Research Project.